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등 기 특 별 회 계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개관	1
1. 총괄	1
(1) 총수입·총지출	1
(2) 예산안	3
(3) 기금운용계획안	4
2. 일반회계	5
(1) 세입	5
(2) 세출	6
3. 등기특별회계	9
(1) 세입	9
(2) 세출	10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2
(1) 수입	12
(2) 지출	13
5. 국유재산관리기금	15
II. 검토의견	17
1. 총괄	17
(1) 본부 기본경비에 편성된 소속기관 기본경비 분리 편성 필요	17
(2) 용도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비 예산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22
(3) 판결문 등 점역서비스 제공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26

2. 일반회계	29
《세 입》	29
(1) 징계부과금	29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29
(나) 징계부과금 세입 예산안 편성 및 적극적인 수납 노력 필요	29
《세 출》	33
(2) 본부기본경비	33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33
(나) 법원사람들 문학상 포상금 예산 감액 검토 필요	33
(다)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 및 지급인원 정보 예산 각목명세서 명시 필요 ...	37
(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축소 노력 및 예산안 반영 필요	41
(3) 사법업무전산화	46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46
(나) 신규 편성된 AI플랫폼 구축 사업의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47
(다) 신규·증액 편성된 정보보안 강화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51
(라)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감액 검토 필요 ...	53
(4)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57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57
(나) 종합법률정보와 온라인 법고율의 통합 운영 필요성 검토 등	57
(5)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62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62
(나) 일반수용비 증액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	62
(6)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73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73
(나) 스마트 속기기계 예산의 적정성	75

(다) 업무용 헤드셋 예산의 적정성	80
(라) 디지털복합기 예산의 적정성	85
(7) 재판일반경비지원	89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89
(나) 법정통역센터 운영비 증액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	89
(8) 전문재판운영	95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95
(나) WIPO 마스터 클래스 개최 사업 예산에 대한 면밀한 집행계획 마련 ... ㉔	
(9) 법원시설관리 등	10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01
(나) 판사실 설치 사업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 필요	101
(나) 재판연구원실 설치 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	106
3. 동기특별회계	111
《충 팔》	111
(1) 동기특별회계 유효기간 도래에 대응한 준치 여부 검토 필요	111
《세 입》	115
(2) 토지 대여료	115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15
(나) 실제 수납액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115
(3) 면허료 및 수수료	118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18
(나) 대법원이 산출한 기준으로 세입예산 조정 필요	118
(4) 건물매각대	12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21

(나) 유희등기소 매각 수입 확보 방안 검토 필요	121
《세 출》	125
(5) 등기소 신·증축	125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25
(나) 노후등기소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비 조정 필요	125
(6) 등기업무 전산화	128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28
(나) 등기정보시스템 감리비 예산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128
(7)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133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33
(나) 세부사업(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준치에 대한 검토 필요	133
(8)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137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37
(나) 미래등기추진단 운영예산 절감 노력 필요	137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40

《총 괄》	140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현황	140
(2)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개선필요사항	146
(가) 지출구조 체계화 필요	148
(나) 사업관리역량 강화 필요	150
(다) 충실한 수입 관리 및 지출 구조조정 필요	151
《수 입》	152
(3) 변상금	152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52

(나) 소송구조 사업 규모 확대를 고려한 적극적인 수입 편성 필요	153
(4) 민간출연금	158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58
(나) 충분한 출연금 수입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158
《지 출》	162
(5) 민원서비스 개선	162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62
(나) 구체적인 수요 조사와 사업계획 없는 지출계획안 편성 부적절	162
(6) 사법서비스 향상	166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66
(나)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연구비 예산의 조정 필요	166
(다) 감정관리위원의 위촉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지출계획 조정 필요	169
(7) 국선변호료지원	172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72
(나)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검토 필요	172

■ 참고자료

1. 법원 조직도	178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정원	179
3. 전국법원 사건통계	181
4. 성과지표 현황	182

I. 개 관

1. 총 괄

(1) 총수입 · 총지출¹⁾

-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그리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구성됨.
-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은 9,603억 7,500만원으로, 2024년 9,125억 5,900만원 대비 478억 1,600만원(5.2%)이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및 등기특별회계 총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143억 6,100만원, 623억 9,600만원 감소하였으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총수입은 전년 대비 1,245억 7,300만원 증가하였음.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합 계	912,559	960,375	47,816	5.2
□ 예 산	806,653	729,896	△76,757	△9.5
－ 일반회계	486,535	472,174	△14,361	△3.0
－ 등기특별회계	320,118	257,722	△62,396	△19.5
□ 기 금	105,906	230,479	124,573	117.6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05,906	230,479	124,573	117.6

주: 총계 기준

1) 총수입과 총지출은 예산·기금 총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재정수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공채 발행이나 차입 등)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재정총량 지표임.

-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은 2조 3,126억 6,600만원으로 2024년 2조 1,738억 2,000만원 대비 1,388억 4,000만원 (6.4%)이 증가하였음. 등기특별회계 총지출은 전년 대비 62억 1,600만원 이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총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1,133억 8,400만원, 316억 7,200만원 증가하였음.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합 계	2,173,820	2,312,660	138,840	6.4
□ 예 산	2,100,921	2,208,089	107,168	5.1
－ 일반회계	1,864,618	1,978,002	113,384	6.1
－ 등기특별회계	236,303	230,087	△6,216	△2.6
□ 기 금	72,899	104,571	31,672	43.4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72,899	104,571	31,672	43.4

주: 총계 기준

(2) 예산안

-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7,813억 4,400만원으로 2024년 세입예산 9,936억 4,000만원 대비 2,122억 9,600만원(△21.4%)이 감액되었음.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 예 산	993,640	781,344	△212,296	△21.4
－ 일반회계	610,500	502,770	△107,730	△17.7
－ 등기특별회계	383,140	278,574	△104,566	△27.3

주: 총계 기준

-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2조 2,565억 7,600만원으로 2024년 세출예산 2조 2,477억 5,800만원 대비 88억 1,800만원(0.4%)이 증액되었음.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 예 산	2,247,758	2,256,576	8,818	0.4
－ 일반회계	1,864,618	1,978,002	113,384	6.1
－ 등기특별회계	383,140	278,574	△104,566	△27.3

주: 총계 기준

(3) 기금운용계획안

- 2025년도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지출 규모는 3,902억 6,600만원으로 2024년 계획 2,313억 6,900만원 대비 1,588억 9,700만원(68.7%)이 증액되었음.

〈2025년도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31,369	390,266	158,897	68.7
－ 수 입	231,369	390,266	158,897	68.7
－ 지 출	231,369	390,266	158,897	68.7

주: 총계 기준

2. 일반회계

(1) 세 입

-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027억 7,000만원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 6,105억원 대비 1,077억 3,000만원(△17.6%)이 감액되었음.
- 수입항목별로 살펴보면,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은 3,448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4억 9,500만원(△8.4%)이 감액되었으며, ‘등기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산안은 305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3억 6,900만원(△75.3%)이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입항목별)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금액(B-A)	비 율
총 액	610,500	502,770	△107,730	△17.6
관유물 대여료	3,352	4,164	812	24.2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2	50	8	19.0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05	105	—	—
변상금 및 위약금	247	247	—	—
기타경상이전수입	106,337	122,307	15,970	15.0
면허료 및 수수료	376,299	344,804	△31,495	△8.4
잡수입	153	497	344	224.8
등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23,965	30,596	△93,369	△75.3

(2) 세 출

-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9,780억 200만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1조 8,646억 1,800만원 대비 1,133억 8,400만원(6.1%)이 증액되었음.
- 지출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예산안은 1조 3,935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2억 8,800만원(6.3%)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예산안은 901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3,400만원(6.3%)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예산안은 4,943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 6,200만원(5.5%)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출성질별)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금액(B-A)	비 율
총 액	1,864,618	1,978,002	113,384	6.1
인건비	1,311,243	1,393,531	82,288	6.3
기본경비	84,834	90,168	5,334	6.3
사업비	468,541	494,303	25,762	5.5

- 사업별로 살펴보면,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부 인건비, 소속기관 인건비, 사법운영 기본경비 등 14개 단위사업 하에 일반 인건비, 도서관 인건비, 연수원 인건비, 교육원 인건비 등 2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금액(B-A)	비율
합 계	1,864,618	1,978,002	113,384	6.1
본부 인건비	1,288,541	1,370,174	81,633	6.3
일반 인건비	1,288,541	1,370,174	81,633	6.3
소속기관 인건비	22,702	23,357	655	2.9
도서관 인건비	6,712	6,901	189	2.8
연수원 인건비	9,019	9,441	422	4.7
교육원 인건비	6,971	7,015	44	0.6
사법운영 기본경비	84,834	90,168	5,334	6.3
본부 기본경비	80,254	84,964	4,710	5.9
도서관 기본경비	795	832	37	4.7
연수원 기본경비	2,170	2,717	547	25.2
교육원 기본경비	1,615	1,655	40	2.5
사법운영지원	123,963	129,199	5,236	4.2
본부운영지원	109,178	116,911	7,733	7.1
도서관운영지원	2,825	2,668	△157	△5.6
연수원운영지원	8,003	6,179	△1,824	△22.8
교육원운영지원	3,957	3,441	△516	△13.0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14,448	11,479	△2,969	△20.5
가족관계등록사무	14,448	11,479	△2,969	△20.5
사법업무전산화	83,633	102,938	19,305	23.1
사법업무전산화	48,980	72,740	23,760	48.5
전자소송	8,790	0	△8,790	△100.0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13,278	23,000	9,722	73.2
형사전자소송시스템구축	12,585	7,198	△5,387	△42.8
가족등록업무전산화	18,519	17,456	△1,063	△5.7

구 분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금액(B-A)	비율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18,519	17,456	△1,063	△5.7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2,482	6,453	3,971	160.0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2,482	6,453	3,971	160.0
법관 등 전문화 및 국제화	7,586	7,693	107	1.4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7,586	7,693	107	1.4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0,736	12,684	1,948	18.1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0,736	12,684	1,948	18.1
재판청구권 실현	153,106	139,803	△13,303	△8.7
재판절차비용지원	39,063	38,300	△763	△2.0
재판일반경비지원	41,610	46,158	4,548	10.9
사법정책연구개선	2,549	1,945	△604	△23.7
국선변호료지원	69,884	53,400	△16,484	△23.6
사실심총실화	3,309	2,296	△1,013	△30.6
전문재판 운영	3,309	2,296	△1,013	△30.6
법원에비금	280	140	△140	△50.0
법원에비금	280	140	△140	△50.0
법원시설관리 등	50,479	64,162	13,683	27.1
법원시설관리 등	50,479	64,162	13,683	27.1

3. 등기특별회계

(1) 세 입

- 2025년도 대법원 소관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785억 7,400만원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 3,831억 4,000만원 대비 1,045억 6,600만원(△27.3%)이 감액되었음.
- 수입항목별로 살펴보면,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은 2,439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0억 1,200만원(△20.8%)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세계잉여금’ 예산안은 208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1억 7,000만원(△66.9%)이 감액되었음.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입항목별)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금액(B-A)	비 율
총 액	383,140	278,574	△104,566	△27.3
관유물대여료	292	324	32	11.0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55	659	504	325.2
기타경상이전수입	20	20	—	—
면허료 및 수수료	307,988	243,976	△64,012	△20.8
잡수입	7	7	—	—
고정자산매각대	954	1,406	452	47.4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10,702	11,330	628	5.9
전년도 이월금	—	—	—	—
전년도 세계잉여금	63,022	20,852	△42,170	△66.9

(2) 세 출

- 2025년도 대법원 소관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785억 7,400만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3,831억 4,000만원 대비 1,045억 6,600만원(△27.3%)이 감액되었음.
- 지출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예산안은 1,332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1,200만원(4.1%)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예산안은 42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와 동일하며, 사업비 예산안은 925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 2,800만원(△11.0%)이 감액되었음.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출성질별)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금액(B-A)	비 율
총 액	383,140	278,574	△104,566	△27.3
인건비	128,022	133,234	5,212	4.1
기본경비	4,273	4,273	-	-
사업비	104,008	92,580	△11,428	△11.0
회계(기금)간 전출금	146,837	48,487	△98,350	△67.0

- 사업별로 살펴보면, 2025년도 대법원 소관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본부 인건비, 기본경비, 등기업무지원 등 8개 단위사업 하에 등특 인건비, 등특 기본경비, 등기업무운영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금액(B-A)	비율
합 계	383,140	278,574	△104,566	△27.3
본부 인건비	128,022	133,234	5,212	4.1
등특 인건비	128,022	133,234	5,212	4.1
기본경비	4,273	4,273	—	—
등특 기본경비	4,273	4,273	—	—
등기업무지원	28,954	28,246	△708	△2.4
등기업무운영지원	24,561	24,086	△475	△1.9
건강보험부담금	4,393	4,160	△233	△5.3
등기업무전산화	64,819	55,716	△9,103	△14.0
등기업무전산화	41,532	33,388	△8,144	△19.6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1,752	1,286	△466	△26.6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1,535	21,042	△493	△2.3
예비비	200	100	△100	△50.0
예비비	200	100	△100	△50.0
등기소 확충	10,035	8,518	△1,517	△15.1
등기소 신증축	10,035	8,518	△1,517	△15.1
회계 간 전출	123,965	30,596	△93,369	△75.3
일반회계 전출	123,965	30,596	△93,369	△75.3
회계 기금 간 거래	22,872	17,891	△4,981	△21.8
공무원연금기금 부담금	22,872	17,891	△4,981	△21.8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 수 입

- 2025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계획안은 3,902억 6,600만원으로, 2024년 수입계획 2,313억 6,900만원 대비 1,588억 9,700만원(68.7%)이 증액되었음.
- 수입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출연금’ 계획안은 2,299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3억 600만원(117.7%)이 증액되었으며,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계획안은 1,284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1억 8,900만원(36.3%)이 증액되었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입항목별)	2024년도 계획(A)	2025년도 계획안(B)	증 감	
			금액(B-A)	비 율
총 액	231,369	390,266	158,897	68.7
변상금	—	300	300	—
민간출연금	105,636	229,942	124,306	117.7
기타경상이전수입	270	537	267	98.9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94,281	128,470	34,189	36.3
기금예탁원금 회수	30,000	30,000	—	0.0
기금예탁이자수입	1,182	1,017	△165	△14.0

(2) 지 출

- 2025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계획안은 3,902억 6,600만원으로, 2024년 지출계획 2,313억 6,900만원 대비 1,588억 9,700만원(68.7%)이 증액되었음.
- 지출성질별로 살펴보면, 사업비 계획안은 1,045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6억 7,200만원(43.3%)이 증액되었고, 여유자금운용 계획안은 2,556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2억 2,500만원(99.0%)이 증액되었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출성질별)	2024년도 계획(A)	2025년도 계획안(B)	증 감	
			금액(B-A)	비 율
총 액	231,369	390,266	158,897	68.7
사업비	72,899	104,571	31,672	43.4
－ 주요사업비	72,838	104,520	31,682	43.5
－ 기금운영비	61	51	△10	△16.4
여유자금운용	128,470	255,695	127,225	99.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30,000	30,000	－	－

- 사업별로 살펴보면, 2025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계획안은 공탁 업무 전산화,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법제도 개선 및 사법서비스 진흥 등 6개 단위사업 하에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등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계획안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계획(A)	2025년도 계획안(B)	증 감	
			금액(B-A)	비율
합 계	231,369	390,266	158,897	68.7
공탁업무 전산화	2,440	2,416	△24	△1.0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2,440	2,416	△24	△1.0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2,365	—	△2,365	△100.0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2,365	—	△2,365	△100.0
사법제도 개선 및 사법서비스 진흥	68,033	102,104	34,071	50.1
소송구조지원	6,857	6,857	—	—
조정제도지원	12,708	11,432	△1,276	△10.0
법률구조단체사업지원	3,879	3,879	—	—
소년보호 등 지원	6,450	9,207	2,757	42.7
민원서비스개선	24,670	32,237	7,567	30.7
사법서비스향상	13,469	13,894	425	3.2
국선변호료지원	—	24,598	24,598	100.0
기금운영비	61	51	△10	△16.4
기금관리비	61	51	△10	△16.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30,000	30,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30,000	30,000	—	—
여유자금운용	128,470	255,695	127,225	99.0
통화금융기관 예치	128,470	255,695	127,225	99.0

5. 국유재산관리기금

-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2011. 4. 1. 시행)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2011년도까지 대법원 일반회계 예산으로 수행되었던 법원시설 확충사업이 2012년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장관 총괄)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음.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대법원 공용재산취득 사업의 2025년도 지출계획안은 913억 3,800만원으로 2024년도 지출계획 936억 2,000만원 대비 22억 8,200만원(△2.4%)이 감액되었음.

〈국유재산관리기금 중 대법원 공용재산취득 사업 지출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2024년도 계획		2025년도 계획안		구분
사 업 명	금액	사 업 명	금액	
합 계	93,620	합 계	91,338	-
청사시설 취득	28,079	청사시설 취득	20,693	계속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31,100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33,180	계속
전주지법 남원지원 신축	502	전주지법 남원지원 신축	-	계속
수원법원 위탁개발	9,419	수원법원 위탁개발	12,800	계속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6,975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1,000	계속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5,440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19,009	계속
창원가정법원 신축	5,273	창원가정법원 신축	154	계속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4,237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3,815	계속
수원지법 성남지원 신축	2,595	수원지법 성남지원 신축	1	계속
		창원지법 통영지원 증축	296	신규
		법원공무원교육원 제3생활관 신축	390	신규

-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함. 다만,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대법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공용재산취득사업(대법원)’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음²⁾.

2) 「국회법」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①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II. 검토의견

1. 총 괄

(1) 본부 기본경비에 편성된 소속기관 기본경비 분리 편성 필요

- 본부기본경비(7011-250), 도서관기본경비(7018-271), 연수원기본경비(7018-281), 교육원기본경비(7018-291)의 4개 기본경비 사업과 본부 운영지원(7031-303), 도서관운영지원(7031-303), 연수원운영지원(7031-308), 교육원운영지원(7031-309)의 4개 운영지원 사업은 각각 본부(대법원 및 각급 법원 등),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통상적인 기관운동을 위한 경비를 반영한 사업임.

〈일반회계 기본경비 및 운영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결산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사법운영 기본경비	82,476	84,834	90,168	5,334	6.3
본부기본경비 (7011-250)	77,342	80,254	84,964	4,710	5.9
도서관기본경비(7018-271)	787	795	832	37	4.7
연수원기본경비(7018-281)	2,661	2,170	2,717	547	25.2
교육원기본경비(7018-291)	1,686	1,615	1,655	40	2.5
사법운영지원	115,244	123,963	129,199	5,236	4.2
본부운영지원(7031-303)	102,229	109,178	116,911	7,733	7.1
도서관운영지원(7031-307)	2,577	2,825	2,668	△157	△5.6
연수원운영지원(7031-308)	6,511	8,003	6,179	△1,824	△22.8
교육원운영지원(7031-309)	3,927	3,957	3,441	△516	△13.0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 그런데 대법원의 본부기본경비(7011-250)와 본부운영지원(7031-303)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본부(대법원 및 각급 법원 등)뿐만 아니라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도 예산의 일부를 직접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본부기본경비(7011-250)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법연수원은 2억 3,823만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은 8,332만원, 법원도서관은 6,955만원을 해당 사업 예산에서 직접 집행하였으며, 지출세목에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포상금 등이 포함됨.
- 2023년 본부운영지원(7031-303)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법연수원은 8,316만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은 6,186만원, 법원도서관은 1억 7,290만원을 해당 사업 예산에서 직접 집행하였으며, 지출세목에는 상용임금,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급식비,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배상금, 고용부담금,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됨.
- 각 기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를 본부,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기관별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은 각 기관의 기관운영 경비의 한도를 명확히 하고, 그 집행현황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있음.

<본부기본경비 사업 중 소속기관 직접 집행액 세부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소속 기관명	세목 (000-00)	소속기관 직접 집행액		
			2022년	2023년	2024년 (8.31.기준)
본부 기본경비 (7011-250)	사법 연수원	일반수용비(210-01)	25,737	26,140	726
		피복비(210-03)	-	4,270	-
		복리후생비(210-12)	6,424	2,790	8,336
		일반운영비(210-14)	3,870	9,662	-
		기타운영비(210-16)	5,850	4,400	3,600
		국내여비(220-01)	2,836	2,985	17,144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0,000	10,000
		특정업무경비(250-03)	229,085	177,684	179,991
		포상금(310-03)	-	300	-
		합계	273,802	238,231	219,797
	법원 공무원 교육원	일반수용비(210-01)	2,588	3,143	-
		피복비(210-03)	-	1,724	-
		복리후생비(210-12)	4,594	2,010	5,416
		일반운영비(210-14)	-	3,976	-
		기타운영비(210-16)	28,450	3,600	3,600
		국내여비(220-01)	3,040	4,074	2,799
		관서업무추진비(240-02)	4,220	4,435	4,449
		특정업무경비(250-03)	57,966	60,060	57,060
		포상금(310-03)	300	300	-
		합계	101,158	83,322	73,324
	법원 도서관	일반수용비(210-01)	6,793	8,028	1,186
		복리후생비(210-12)	2,904	2,820	8,004
		기타운영비(210-16)	10,100	8,200	8,600
		국내여비(220-01)	-	4,071	2,104
		특정업무경비(250-03)	52,981	39,733	39,735
		포상금(310-03)	7,000	6,700	6,400
		합계	79,778	69,552	66,029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본부운영지원 사업 중 소속기관 직접 집행액 세부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소속 기관명	세목 (000-00)	소속기관 직접 집행액		
			2022년	2023년	2024년 (8.31.기준)
본부 운영지원 (7031-303)	사법 연수원	상용임금(110-03)	54,428	61,624	41,185
		공공요금및제세(210-02)	48,000	3,000	-
		피복비(210-03)	394	606	202
		급식비(210-04)	10,951	9,674	5,187
		기타운영비(210-16)	3,150	4,200	3,150
		국내여비(220-01)	4,599	4,057	2,149
		자산취득비(430-01)	22,440	-	-
		합계	143,962	83,161	51,873
	법원 공무원 교육원	상용임금(110-03)	32,937	45,051	27,332
		피복비(210-03)	892	305	916
		급식비(210-04)	6,447	6,202	3,717
		기타운영비(210-16)	10,650	5,227	3,150
		국내여비(220-01)	2,656	2,435	1,552
		배상금(310-02)	608	-	-
		자산취득비(430-01)	3,818	2,641	-
		합계	58,008	61,861	36,667
	법원 도서관	상용임금(110-03)	113,099	143,191	120,785
		일반수용비(210-01)	-	1,660	-
		피복비(210-03)	1,542	356	1,424
		급식비(210-04)	7,952	10,507	6,146
		기타운영비(210-16)	3,150	4,200	3,150
		국내여비(220-01)	3,468	4,539	2,643
		고용부담금(320-09)	7,500	8,446	8,127
		합계	136,711	172,899	142,275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 각 소속기관은 소관 기본경비 및 운영지원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중에 불가피하게 예산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이나 전용 또는 내역변경 등 예산 변경의 절차를 거쳐 소관 기본경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을 증액한 후에 해당 예산현액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여야 함.
- 그런데 대법원의 각 소속기관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본부기본경비(7011-250) 및 본부운영지원(7031-303) 사업 예산의 일부를 소관 기관의 경비로 직접 지출하고 있음.

이러한 부적절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각 소속기관의 기본경비 및 운영지원 사업 예산에 필요한 경비가 충분한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일부가 매년 본부기본경비(7011-250) 및 본부운영지원(7031-303)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탓도 있다고 보임.

- 따라서 대법원은 소속기관의 기본경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2025년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다시 추계하여, 향후 본부기본경비(7011-250) 및 본부운영지원(7031-303)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각 소속기관의 기본경비 및 운영지원 사업 예산으로 미리 조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용도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비 예산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복리후생비(210-12목)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는 항목으로, 2025년도 대법원 소관 복리후생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6억 1,100만원이 증액된 217억 4,100만원으로 편성됨.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 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음.

〈복리후생비(210-12목)의 용도〉

목번호	목	세목(내역)
210	운영비	
		210-12 복리후생비 1. 기업특별회계 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3.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5.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그런데 대법원 소관 복리후생비 예산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복리후생비를 이와 같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복리후생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3		2024 예산액 (A)	2025 예산안 (B)	증감 (B-A)
		예산액	집행액			
일반회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371	369	5	5	-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1,269	1,266	1,269	2,736	1,467
	사법정책연구개선 (1143-405)	403	395	397	302	△95
	국선변호료지원 (1143-409)	76	72	76	76	-
	전문재판운영 (1144-407)	1,217	1,199	1,034	-	△1,034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1332-303)	5	1	5	2	△3
	본부 기본경비 (7011-250)	13,286	13,159	15,101	15,479	378
	도서관 기본경비 (7018-271)	78	83	78	78	-
	연수원 기본경비 (7018-281)	89	65	89	89	-
	교육원 기본경비 (7018-291)	44	43	44	44	-
	본부운영지원 (7031-303)	675	663	681	681	-
	연수원운영지원 (7031-308)	63	52	63	63	-
	교육원운영지원 (7031-309)	12	12	12	12	-
등기 특별회계	등특 기본경비 (7011-271)	1,803	1,774	1,992	1,992	-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75	75	76	76	-
사법 서비스 진흥기금	조정제도 지원 (1161-302)	14	13	14	14	-
	소년보호 등 지원 (1161-304)	29	29	29	21	△8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105	96	64	64	-
	사법서비스 향상 (1161-306)	101	100	101	7	△94
계(복리후생비)		19,715	19,466	21,130	21,741	611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의 복리후생비 예산 산출근거〉

(단위: 천원)

(일반회계) [1143-409] 국선변호료 지원		
2025년 예산안		
[210-12] 복리후생비		76,000
1. 국선변호사 세미나 및 간담회	76,000,000원=	76,000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국선변호료지원 사업 부분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의 복리후생비 예산 산출근거〉

(단위: 천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4] 소년보호 등 지원		
2025년 예산안		
[210-12] 복리후생비		21,000
1. 소년 등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21,000
가. 유관기관 간담회, 협의회, 워크숍 등 실시	21,000,000원=	21,000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 부분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복리후생비 예산 산출근거〉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6] 사법서비스 향상		
2025년 예산안		
[210-12] 복리후생비		7,000
1.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7,000
가. 가사민원상담관 도입		7,000
1)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7,000,000원=	7,000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부분

- 특히,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1143-409)의 ‘국선변호사 세미나 및 간담회’,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1161-304)의 ‘유관기관 간담회, 협의회, 워크숍 등 실시’ 또는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1161-306)의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와 같이, 복리후생비 예산을 세미나나 간담회, 워크숍 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정해 놓은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와 같이 복리후생비의 본래 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지적이 있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으로 하여금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복리후생비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복리후생비가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한 바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 법사위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복리후생비 예산의 용도에 맞는 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복리후생비	주의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210-12목)는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대법원은 이를 직원 워크숍, 세미나, 체육행사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른 기관의 경우 대개 기본경비 사업에 한정적으로 편성·집행되는 복리후생비 예산이 국선번호료 지원,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소년보호 등 지원 등과 같은 일반사업에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편성·집행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복리후생비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복리후생비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복리후생비가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자료: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3) 판결문 등 점역서비스 제공 사업의 집행을 제고 필요

- 판결문 등 점역서비스 제공 사업은 시각장애인 점자사용 권리 신장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의무 강화로 대법원이 발급하는 각종 서류에 대해 점자로 변환한 문서를 제공하는 사업임.
- 판결문 등의 증명서는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1136-351)’, 등기사항별 증명서는 ‘등기업무 운영지원(7032-311)’ 사업 예산으로 편성함. 2025년도 예산안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점역서비스와 점자판결문 제공 등 서비스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지만, 등기사항증명서 점역서비스는 집행 실적으로 고려하여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2025년도 각종 점역서비스 제공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점자판결문 제공 등 서비스	3.5	10	10	-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점역서비스	-	4	4	-	-
등기사항증명서 점역서비스	-	31	5	△26	△83.8

- 대법원 점역서비스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함.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점역서비스는 202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시행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역서비스 제공 건수가 각각 0건, 1건으로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판결문 등 재판 관련 서류의 점자서비스 제공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대법원 제공 점역서비스 사업의 예상 집행 건수 및 실제 집행 건수〉

(단위: 건)

	예상 집행 건수 (예산액 산정 근거)	2023년	2024년 (9월까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200	0	0
등기사항증명서	90	1	0
판결문 등	63	5	3

- 대법원은 점역서비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①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나 등기사항증명서의 용도가 대부분 관공서 및 금융기관 제출용이고 본인 확인 또는 보관용으로써 쓰임이 많지 않고, ② 점자해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비율 자체가 전체 시각장애인의 5%~10%로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홍보가 다소 미진하여 점역서비스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다수 있을 수 있음. 제도의 지속적 홍보 및 법원이나 시·읍·면 서류 발급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점역서비스 제도를 충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대법원 점역서비스 사업 홍보 내역〉

매체 종류	홍보(공문) 시점
법원 홈페이지 공지	2022. 8. 9.
보도자료 배포	2022. 8. 9.
시·읍·면 등록관서에 대한 공문	2022. 8. 9.
브레일타임즈(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월간 소식지) 게재	2024. 2. 10.
넓은마을(시각장애인 온라인 커뮤니티) 게재	2024. 8. 20.

- 또한, 점역서비스 신청은 직접 법원이나 시·읍·면 등록관서를 방문해야만 가능한데, 가족관계증명서나 등기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청 절차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각장애인 점역서비스는 「점자법」³⁾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사법 권리 신장을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이지만, 앞으로도 집행 실적이 지금과 같이 저조할 경우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예산 감액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시각장애인 점역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일반회계

《세 입》

(1) 징계부과금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징계부과금(56-564)은 법령에 따라 수납하여야 할 징계부가금⁴⁾ 등을 수납하는 수입항목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편성되어 있지 않음.

〈2025년도 징계부과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항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징계부과금 (56-564)	—	—	—	—	—

(나) 징계부과금 세입 예산안 편성 및 적극적인 수납 노력 필요

- 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함.
- 최근 5개년 징계부과금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매년 징계부과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매년 일정 규모의 징수결정액은

4)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등에서는 ‘징계부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등에 명시된 수입항목의 명칭은 ‘징계부과금’임.

발생하고 있음. 다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9년 8.4%, 2020년 0.6%, 2021년 0.9%, 2022년 4.4%로 매우 낮은 편이며, 2023년의 경우 징수결정액 10억 6,000만원 전액이 미수납되었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최근 5개년 징계부가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19	—	739	62	—	8.4	677	—
2020	—	2,375	15	—	0.6	2,361	—
2021	—	1,110	10	—	0.9	1,100	—
2022	—	1,109	49	—	4.4	1,060	—
2023	—	1,060	—	—	0.0	1,060	—

- 2023년도 징수결정액 10억 6,000만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징계부가금 부과결정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들로, 그 금액은 550만원에서 3억원 사이임.

<2023회계연도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 세부내역>

납부의무자	소속	직위	징계부가금 결정일	징수결정액 (원)	미수납액 (원)
김OO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원주사	2016.02.23.	7,000,000	7,000,000
김OO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원서기	2016.03.31.	39,749,800	39,749,800
윤OO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법원주사보	2016.06.01.	9,537,200	9,537,200
강OO	대구지방법원	행정주사보	2016.06.27.	18,000,000	18,000,000
강OO	법원행정처	전산서기관	2019.06.25.	283,190,000	283,190,000
손OO	법원행정처	전산서기관	2019.06.25.	297,580,000	297,580,000
이OO	법원행정처	전산주사	2019.06.25.	5,500,000	5,500,000
박OO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법원서기보	2020.02.26.	69,730,190	69,730,190
김OO	광주지방법원	법원서기	2020.08.11.	30,000,000	30,000,000
최OO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	2021.06.21.	300,000,000	300,000,000
합 계				1,060,287,190	1,060,287,190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은 납부의무자의 채력 부족 및 거소 불명으로 징수가 부진하였으며,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미수납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관할 세무서에 징수요청을 의뢰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나, 매년 징계부과금 세입 예산이 수납 예상액 규모 예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편성되고 있지 않아 적극적인 수납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징계부가금 제도는 금품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는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⁵⁾이므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징수를 철저히 하고, 장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은 단순히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체납관리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징계부가금 세입이 예산안 심사과정에도 보다 명확하게 인지 및 검토될 수 있도록 수납 목표액 또는 수납 예상액 등에 기초하여 일정 규모를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5) 인사혁신처, 「징계업무편람 2022」, 60p.

《세 출》

(2) 본부 기본경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본부 기본경비(7011-250) 사업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7억 1,000만원(5.9%)이 증액된 849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본부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부 기본경비 (7011-250)	77,342	80,254	84,964	4,710	5.9

(나) 법원사람들 문학상 포상금 예산 감액 검토 필요

- 포상금(310-03목)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을 말함⁶⁾.
- 대법원의 본부 기본경비(7011-250) 사업에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포상금(310-03) 예산은 총 9,400

6)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500만원(5.3%)이 증액되었음.

〈본부 기본경비 사업 중 포상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부 기본경비(7011-250)	77,342	80,254	84,964	4,710	5.9
포상금(310-03)	87	89	94	5	5.3

-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이는 일반 포상금 예산 9,010만원과 ‘법원사람들 문학상 입상자’를 위한 포상금 예산 340만원을 합한 것인데,

지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포상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 44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법령상 그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본부 기본경비를 통해 집행되는 ‘법원사람들 문예상 포상금’의 경우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포상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문예상 시상식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그 일환으로 2024년에는 시상식 행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별도로 이와 관련한 포상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음.

〈2025년도 본부 기본경비 중 포상금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2025년 예산안		
[310-03] 포상금		93,500
1. 포상		90,100
가. 우수제안자 포상	22,000,000원=	22,000
나. 재판사무처리 모범직원 포상	5,700,000원=	5,700
다. 감사우수직원 포상	3,600,000원=	3,600
라. 우수공무원 포상	30,300,000원=	30,300
마. 우수가족관계등록공무원 포상	6,000,000원=	6,000
바. 위조 가족관계등록사건 발견 공무원 포상	3,000,000원=	3,000
사. 부패방지시책 우수법원	6,000,000원=	6,000
아. 법원의날 포상	2,500,000원=	2,500
자.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등 우수 포상	6,000,000원=	6,000
차. 우수 공무원 포상	5,000,000원=	5,000
2. 법원사람들 문학상 입상자	3,400,000원=	3,400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본부 기본경비 부분

〈최근 3개년 법원사람들 문학상 포상금 집행내역〉

연도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22년	340만원	340만원	
2023년	350만원	350만원	
2024년	340만원	—	시상식 행사 미시행

자료: 대법원 제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9)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령 근거 마련 필요	○ [지적사항] 포상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따라 법령상 그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본부 기본경비를 통해 집행되는 ‘법원사람들	제도개선	○ 법원사람들 문예상을 주관하는 공보관실에 문의결과 국회지적사항과 같이 법원사람들 문예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2023년도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자에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문예상 포상금'의 경우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과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을 위한 법령상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		계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향후 법원사람들 문예상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사법부 포상 담당부서인 인사운영심의관실에 법령상 근거를 요청 후 그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함 ○ 이에 향후 공보관실에서 법원사람들 문예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자료가 올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내규」에 법원사람들 문예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조치예정일 : '23년 12월 31일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2022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이상에 비추어 보면,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포상금 예산 9,400만원 중 ‘법원사람들 문학상 입상자’ 포상을 위한 예산 340만원은 집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 및 지급인원 정보 예산 각목명세서 명시 필요

-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함⁷⁾.
- 대법원의 본부 기본경비(7011-250) 사업에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가 편성되어 있는데⁸⁾,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직책수행경비(250-02목) 예산은 총 293억 5,8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2억원(4.3%)이 증액되었음.

〈본부 기본경비 사업 중 직책수행경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부 기본경비(7011-250)	77,342	80,254	84,964	4,710	5.9
직책수행경비(250-02목)	27,451	28,158	29,358	1,200	4.3

-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이는 법관 지급분 270억 4,391만원, 일반직 지급분 1억 795만원, 법원사무직 지급분 21억 8,167만원과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지급분 2,456만원을 합한 것임.

7)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8) 참고로, 사법연수원 등 소속기관 소속 법원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는 각 소속기관 기본경비에 별도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직책수행경비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천원)

2025년 예산안		
[250-02] 직책수행경비		29,358,104
1. 직책수행경비		29,358,104
가. 기존분		29,333,537
1) 법관		27,043,912
가) 대법원장	76,930,000원=	76,930
나) 대법관	399,227,000원=	399,227
다) 법원장, 고법부장, 지법부장	26,567,755,000원=	26,567,755
2) 일반직		107,951
가) 2급보조기관(갑)	7,906,000원=	7,906
나) 2급보조기관(을)	7,267,000원=	7,267
다) 3급보조기관(갑)	7,906,000원=	7,906
라) 4급보조기관(갑)	8,139,000원=	8,139
마) 4급보조기관(을)	76,733,000원=	76,733
3) 법원사무직		2,181,674
가) 1급	9,243,000원=	9,243
나) 2급보조기관(갑)	86,965,000원=	86,965
다) 3급보조기관(갑)	195,643,000원=	195,643
라) 3급 복수직(갑)	127,889,000원=	127,889
마) 4급보조기관(갑)	1,761,934,000원=	1,761,934
나. 양형위원회		24,567
1) 양형위원장	16,130,000원=	16,130
2)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8,437,000원=	8,437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본부 기본경비 부분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예산안 편성지침”)」 III. 목별지침에 따르면 직책수행경비 예산은 동지침의 기준단가⁹⁾를 적용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국장급 이상의 경우 기준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¹⁰⁾.

9) 다만, 기획재정부는 차관급 이상의 직위 보유자나 검사, 경찰 등 일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의 기준단가는 위 지침에 기재하지 않고 각 부처 예산편성 실무자에게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10) 감사원 감사보고서(기관정기감사), 「대검찰청 등 2개 기관 정기감사」. 2021. 3., 53p.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2025년)〉

유형						월액	비고	
1급,	고공단	가등급	중앙기관장			750	※ 갑·을 구분 기준 · 갑 : 현원 6명이상 · 을 : 현원 5명이하	
1급,	고공단	가등급	보조기관			700		
2·3 급,	고공단	나등급	기관장			650		
2·3 급	고공단	나등급	보조기관“갑”			600		
2·3 급	고공단	나등급	보조기관“을”			550		
복	수	직	3	급	“갑”	500		
복	수	직	3	급	“을”	450		
4	급	기		관	장	400		
4	급	보	조	기	관	“갑”		350
4	급	보	조	기	관	“을”		300
4	급	복		수	직	150		
5	급	기		관	장	150		
5	급	보	조	기	관	80		
6·7 급	기		관		장	80		
6·7 급	보	조	기		관	50		

※ 국장급(월55만원 이상 수령자)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편성

※ 현원 산정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조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93

- 그런데 대법원은 법무부(검찰청 포함)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과 달리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직책수행경비의 지급 대상 유형별 총액만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산출근거, 다시 말해 직위별 지급인원 및 지급단가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직책수행경비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감사원의 다른 기관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직책수행경비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거나, 국장급 등 고위직에 대하여

직책수행경비를 예산안 편성지침 상의 기준단가보다 높게 설정·지급한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¹¹⁾되고 있음.

반면, 2020년의 경우 법원행정처는 신규 법관 증원, 10년 이상 경력 법관 증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해외연수 대상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지 못하고 재판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직책수행경비 지급 대상자가 예상보다 증가하자 연말 법관들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를 일부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공지를 하기도 하였음¹²⁾.

-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대법원과 각급 법원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예산의 지급단가가 예산안 편성지침의 기준단가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지급 대상인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책수행경비 예산의 지급대상별 지급단가와 지급인원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임.
- 따라서 대법원은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지급대상별 지급단가와 지급인원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11) 대검찰청 등 2개 기관 정기감사(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2019년), 기획재정부 기관운영감사(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2016년) 등

12) 법률신문, 「법관 직책수행경비 ‘삭감’...“액수보다 절차에 서운”」, 2020. 11. 12.

(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축소 노력 및 예산안 반영 필요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공무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2019~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년 이후: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국가 및 지자체의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 한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2019~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년 이후: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최근 5개년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21년 2억 2,900만원, 2024년 3억 8,500만원,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21년 13억 7,400만원, 2024년 24억 5,700만원으로 나타남.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합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4억 7,100만원,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31억 6,000만원을 합하여 총 36억 3,100만원을 공공요금및제세(220-02목) 예산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5개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연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비고
	비공무원	공무원	계	
2020	267,314,610원	—	267,314,610원	2019년도분
2021	229,438,710원	1,374,385,320원	1,603,824,030원	2020년도분
2022	155,993,460원	1,454,276,080원	1,610,269,540원	2021년도분
2023	264,634,000원	2,054,078,790원	2,318,712,790원	2022년도분
2024	384,721,590원	2,457,254,050원	2,841,975,640원	2023년도분
2025	471,682,120원	3,160,040,200원	3,631,722,320원	2024년도분 예상액

*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제도는 2020. 1. 1.부터 시행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 재정리

〈최근 5개년 장애인 비공무원 근로자 고용 현황〉

연도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 비공무원 근로자		
		의무고용인원(A)	채용인원(B)	고용률(B/A)
2019	—	31명	15명	48.4%
2020	—	58명	42명	72.4%
2021	—	57명	46명	80.7%
2022	—	62명	43명	69.4%
2023	—	63명	36명	57.1%
2024. 8.	1,812명	68명	35명	51.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채용인원 산정 시 2배수 적용
자료: 대법원 제출

〈최근 5개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연도	소속 공무원 정원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인원(A)	채용인원(B)	고용률(B/A)
2019	19,398명	660명	485(중증:56, 경증:373)명	73.5%
2020	17,498명	595명	480(중증:49, 경증:382)명	80.7%
2021	17,565명	598명	477(중증:51, 경증:375)명	79.8%
2022	17,674명	637명	474(중증:45, 경증:384)명	74.4%
2023	17,674명	637명	471(중증:46, 경증:379)명	73.9%
2024. 8.	17,702명	673명	472(중증:49, 경증:374)명	70.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채용인원 산정 시 2배수 적용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2024년 공무원 2.67%, 비공무원 1.93%)은 다른 중앙행정기관(2022년 공무원 3.66%, 비공무원 3.13%)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축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2.12월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 분			사업체수	상 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합 계			31,455	8,936,761	278,823	3.12
정부 부분	공 무 원	소계	317	954,759	27,998	2.93
		중앙행정기관	53	202,342	7,402	3.66
		헌법기관	4	24,988	719	2.88
		지방자치단체	243	309,179	11,858	3.84
		교육청	17	418,250	8,019	1.92
	비 공 무 원	소계	306	403,286	24,852	6.16
		중앙행정기관	42	72,905	2,281	3.13
		헌법기관	4	3,103	106	3.42
		지방자치단체	243	138,674	15,129	10.91
		교육청	17	188,604	7,336	3.89
공 공 기 관	소계	790	594,568	22,835	3.84	
	공기업	36	151,800	5,834	3.84	
	준정부기관	94	130,714	5,785	4.43	
	기타공공기관	208	176,586	6,183	3.5	
	지방공기업	152	81,159	3,256	4.01	
	출자·출연기관	300	54,309	1,777	3.27	
민 간 기 업	소계	30,042	6,984,148	203,138	2.91	
	100인 미만	16,054	1,114,072	25,518	2.29	
	100~299인	10,223	1,680,980	53,745	3.20	
	300~499인	1,758	667,817	21,713	3.25	
	500~999인	1,163	799,322	26,794	3.35	
	1,000인 이상	844	2,721,957	75,368	2.77	
	대기업집단	954	1,440,404	33,889	2.35	

자료: 고용노동부,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 2023. 5.

- 또한, 대법원은 매년 공공요금및제세(220-02목) 예산으로 20~30억 규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소요예산이 과소하게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회계연도 중 공공요금및제세(220-02목) 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이.전용 등을 유발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사법업무전산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사법업무전산화(1331-300) 사업은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업무를 전자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판사무시스템 및 사법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37억 6,000만원(48.5%) 증액¹³⁾된 72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대법원은 2025년 예산안에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법부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 과목 구조를 개편¹⁴⁾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도 사법업무전산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B-A)	(B-A)/A
사법업무전산화 (1331-300)	41,981	48,980	72,740	23,760	48.5

13) 증액분 237억 6,000만원 중 통합된 전자소송 사업 예산 87억 9,000만원을 제외하면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149억 7,000만원(25.9%)이 증액됨.

14) 세부사업인 전자소송(1331-302) 내역사업을 사법업무전산화(1331-300)에 통합하는 한편, 각 시스템 별로 분산 편성된 내역사업을 기능상 유사한 것끼리 통합함.
(예시)

과목 구조 개편 전		과목 구조 개편 후
재판사무시스템 유지관리	→	사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사법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전자소송시스템 유지관리		

(나) 신규 편성된 AI플랫폼 구축 사업의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 대법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사의 재판 업무를 돕는 AI플랫폼 개발하고자 ‘법원 AI 플랫폼 구축 및 법률자료 지능형 검색 모델 개발 사업(이하 ‘AI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 함)’을 신규 추진할 예정임. 동 사업에 대한 2025년 예산안은 47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AI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법업무전산화 (1331-300)	41,981	48,980	72,740	23,760	48.5
AI플랫폼 구축 사업	—	—	4,706	4,706	—

〈AI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산출 근거〉

4,706백만원 = 1,155백만원(SW개발) + 3,270백만원(장비도입) + 281백만원(감리)

- SW개발 : 1,155백만원 × 1식
- 장비도입: 3,270백만원 × 1식
- 감리 : 281백만원 × 1식

- AI플랫폼 구축 사업은 앞으로 4년간 약 190억원이 투입되는 다년도 사업으로, 2025년에는 생성형AI 기반 플랫폼 구축과 함께 초기 단계로 2개의 AI모델을 개발할 예정이고,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 동안 추가적인 목표모델을 개발하여 필요한 정보자원(서버, GPU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임.

〈AI플랫폼 구축 사업 총 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25	2026	2027	2028	합계
사업비	4,706	5,249	5,287	3,792	19,001
SW개발비	1,162	2,105	3,115	1,601	
장비비	3,270	2,875	1,910	1,972	
감리비	241	268	263	219	

- 대법원은 재정당국에 2025년 AI플랫폼 구축 사업의 예산으로 54억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장비도입 비용 중 7억원이 요구안보다 적게 받아들여져서 47억 600만원으로 편성함. 대법원은 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서는 당초 요구안인 54억 6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초기에 필수장비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예산의 추가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AI플랫폼 구축 사업 이행과제별 예산 요구안 및 조정안〉

(단위: 백만원)

이행과제	유형	1차년(2025년)	
		요구안	조정안
이행과제1. 법률자료 지능형 검색·리서치 서비스 구축	개발비	70	70
이행과제2. 재판업무지원 AI학습용데이터 구축	개발비	545	545
이행과제3. 재판업무지원 AI플랫폼 구축	개발비	540	540
	장비비	864	864
이행과제4. 재판업무지원 AI플랫폼 인프라 구축	장비비	<u>3,106</u>	<u>2,406</u>
재판업무지원 AI이행과제 감리대가 산정	감리비	281	281
합계		5,406	4,706

- 한편, 대법원은 2025년 AI플랫폼 구축 사업의 개발에 약 9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2024년 11월 말까지 제안요청서 작성 등 사업 준비를 완료하고, 3월 말까지 발주, 입찰, 계약 등 절차를 완료하여, 연내 예산을 전액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런데 최근 실시된 대법원 주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연도에 행정절차 및 입찰 과정에서 사업지연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당해연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였음.

〈주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시연도 예결산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집행액	이월액	사업추진 내역 (사업준비~계약체결)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020년)	13,130	8,935	3,882	2019. 10. 대기업 참여제한 심의결과 통보 2020. 1. 입찰 공고 2020. 3. 입찰 공고 취소 2020. 4.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2020. 4. 재입찰 공고 <u>2020. 7. 계약 체결</u>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2020년)	7,247	2,827	4,313	2019.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및 통과 2020. 5. 사업자 선정 의뢰 2020. 6. 조달청 공고(단일응찰로 유찰) 2020. 9. 조달청 공고 <u>2020. 9. 계약 체결</u>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2023년)	3,829	1,387	2,389	2022. 11.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2022. 12. 사업계획 보고, 사업자 선정의뢰 요청 2023. 1. 제1차 사업설명회, 일상감사 2023. 2. 제2차 사업설명회 2023. 3. 21. 1차 공고 마감 무응찰 유찰 2023. 5. 10. 2차 공고 마감 단일 응찰 2023. 5. 31. 단일 응찰에 따른 저격성 평가 2023. 6. ~ 7. 사업자 계약 여부 미결정 <u>2023. 7. 31. 계약 체결</u>

AI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에도 2025년 사업비 약 46억원, 총 사업비 약 1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준비 및 입찰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계약 체결이 3월 말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생성형AI는 아직 과도기적인 기술이므로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음. 예컨대, ① 오답변 발생 가능성 및 이에 근거한 재판시 책임 소재¹⁵⁾, ② 소송기록에 남지 않는 재판 참여자의 비언어적 행위는 인공지능 판단에 반영할 수 없는 점¹⁶⁾, ③ AI플랫폼에 대한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¹⁷⁾, ④ 생성형 AI의 도입의 법률적 문제¹⁸⁾ 등 재판업무에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지적들이 SW 개발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SW개발 기간이 당초 예상한 9개월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준비와 SW개발 기간의 지연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예산 이월 가능성, 대법원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25년 내 집행될 수 있는지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 대법원은 재판지연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AI플랫폼 구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연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 사법정책연구원,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p300, 2024

16) ‘AI와 양형’을 주제로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심포지엄. 2024년 6월 26일

17) 산업일보, “기업 해킹 열쇠 된 AI, LLM 취약점 인지 후 보안 대책 세워야”, <https://kidd.co.kr/news/238168>, 2024.9.

18) 김일우, 『재판업무 지원 AI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2024

(다) 신규·증액 편성된 정보보안 강화 관련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대법원은 2022년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¹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보보안 강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대법원 업무환경과 정보보안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차세대 지능형 보안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ISP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함.

〈사법부 보안역량 강화 관련 신규·증액 편성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법업무전산화	48,980	72,740	23,760	48.5
노후 보안장비/전산장비 교체	4,309	6,346	2,037	47.3
신규 보안장비/전산장비 확충	1,451	2,879	1,428	98.4
보안관제 운영 ²⁰⁾	1,482	1493	11	0.7
망분리 운영	167	419	252	150.8
정보보안 컨설팅	155	257	102	65.8
사법부 지능형 보안운영체계 구축 ISP	—	232	232	—

19)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는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하여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는 21. 1. 7. 이전부터 23. 2. 9.까지의 기간 동안 법원 전산망에 침입하여 국내외 서버로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하였고, 유출 자료 중 0.5%인 4.7GB의 자료(5,171개)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두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20) 2025년에 기존 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중지 및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개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양 사업에 각각 편성된 보안관제 운영 예산을 더하여 산정

- 해킹/디도스 등 외부 공격에 대비하여 민간의 전문 보안업체에 보안관제 운영을 위탁하는 '보안관제 운영 사업'은 사법부 보안관제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증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원이 보유한 자료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 상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대법원은 예산이 신규·증액 편성된 보안관제 관련 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라)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감액 검토 필요

-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 사업’은 2025년 준공되는 법원 신축 건물에 네트워크 및 전자법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법업무전산화	41,981	48,980	72,740	23,760	48.5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	505	481	908	427	88.7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 908백만원 = 425백만원 + 339백만원 + 101백만원 + 43백만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별관 신축: 425백만원

- 전자법정시스템 구축: 117백만원
- 네트워크 장비 도입: 23백만원
- 전자법정시스템 설치공사: 35백만원
- 네트워크 공사: 245백만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별관 신축: 339백만원

- 전자법정시스템 구축: 138백만원
- 네트워크 장비 도입: 20백만원
- 전자법정시스템 설치공사: 47백만원
- 네트워크 공사: 134백만원

울산지방법원 별관 신축: 101백만원

- 전자법정시스템 구축: 28백만원
- 네트워크 장비 도입: 10백만원
- 전자법정시스템 설치공사: 10백만원
- 네트워크 공사: 53백만원

제주지방법원 별관 신축: 43백만원

- 네트워크 장비 도입: 5백만원
- 네트워크 공사: 38백만원

- 전산망 구축 사업은 건물의 구성 부분에 대한 공사가 아니라, 완성된 건물에 추가 설비를 구축하는 공사이므로 보통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됨. 예컨대, 최근 실시된 속초지원과 광주지방법원 별관의 전자법정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내역을 보면, 사업이 주로 건물 준공에 임박한 시점이나 준공 이후에 완료되었음.

<속초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별관 전산망 구축 사업 추진 경과>

속초지원 신축	청사 준공일	22. 7. 15.
전자법정 구축	계약일 장비납품일	22. 6. 8. 22. 7. 29.
네트워크 장비 도입	계약일 장비설치일	22. 5. 23. 22. 8. 4.
전자법정 설치 공사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22. 6. 8. 22. 6. 13. 22. 8. 19.
네트워크 공사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22. 5. 30. 22. 6. 2. 22. 8. 29.
광주지방법원 별관 신축	청사 준공일	23. 10. 20.
전자법정 구축	계약일 장비납품일	23. 8. 7. 23. 10. 10.
네트워크 장비 도입	계약일 장비설치일	23. 7. 31. 23. 10. 22.
전자법정 설치 공사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23. 8. 21. 23. 9. 4. 23. 12. 2.
네트워크 공사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23. 9. 11. 23. 9. 21. 23. 12. 8.

공사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 검사·검수를 거쳐 대금청구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전산망 구축 예산의 집행은 전산망 구축 공사 완료 이후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5년 전산망 구축 대상인 각 청사별 준공 시점을 보면, 울산지방법원 별관의 경우 2025년 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별관은 2025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별관은 2025년 12월, 제주지방법원 별관은 2026년 3월에 준공 예정임.

즉 울산지방법원 별관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별관은 전산망 구축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별관과 제주지방법원 별관은 연내 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전산망 구축 대상 청사별 준공 예정일〉

구분	준공 예정일
울산지방법원 별관 신축	2025.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별관 신축	2025.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별관 신축	<u>2025. 12. 27.</u>
제주지방법원 별관 신축	<u>2026. 3. 19.</u>

- 따라서, 예산의 이월·불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 예산 중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은 필연적으로 신축법원의 준공 시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울산지방법원 별관과 제주지방법원 별관의 전산망 구축 사업의 경우, 신축공사 지연으로 인해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음.

〈별관 신축공사 사업기간 변경 내역〉

울산지방법원 별관 신축공사 기간	제주지방법원 별관 신축공사 기간
당초계획: 2021년~2023년 1차 변경: 2021년~ <u>2024년</u> 2차 변경: 2021년~ <u>2025년</u>	당초계획: 2020년~2022년 1차 변경: 2020년~ <u>2024년</u> 2차 변경: 2020년~ <u>2025년</u> 3차 변경: 2020년~ <u>2026년</u>

〈전산망 구축 예산 집행 여부〉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울산지방법원 별관 전산망 구축	편성	불용	편성	불용	편성
제주지방법원 별관 전산망 구축	—	—	편성	불용	편성

- 대법원은 소관부서²¹⁾가 긴밀히 소통하여 신축법원 공사의 진행 상황 및 준공일에 대한 예측이 예산 편성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 사업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21) 대법원 청사시설 취득 사업: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 사업: 사법정보화실 정보화심의관실

(4)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1333-304) 사업은 법원의 재판업무지원과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목표로 판례, 법령, 규칙, 예규, 선례 및 법률문헌 등의 원문 DB를 구축하고 디지털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9억 7,100만원(160%) 증액된 64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1333-304)	2,332	2,482	6,453	3,971	160

(나) 종합법률정보와 온라인 법고율의 통합 운영 필요성 검토 등

- 온라인 법고율 사업은, 법고율 LX²²⁾의 고유기능을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해 서비스하고자 온라인 법고율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2) 법고율 LX 사업은 1998년 시작되어 주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 판결 정보,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 및 논문 등 문헌 정보, 각종 법령정보를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로 제작해 CD, DVD 및 USB로 보급한 사업임.

[법고율 연혁]

1993: 강봉수 변호사(전 법원도서관장) 법고율 개발
1997~2003: 윈도우용 프로그램 개발/ 법고율LX CD사업
2004~2014: 법고율LX DVD사업/ 시각장애인용 TTS버전 제작
2015~2018: 법고율LX USB사업/ 특허법원 판결문 PDF제공
2024 현재: 온라인 법고율 개발

2024년 9월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음.

대법원은 온라인 법고을 개발을 위해 2억 5,200만원을 집행 또는 집행할 예정이고,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는 고도화가 완료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²³⁾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온라인 법고을 개발 비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2022	온라인 법고을 LX 제작	102,000
2024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	150,000
	합계	252,000

-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로 ‘종합법률정보’를 운영하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검색 기능을 통해 판례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이트들과 온라인 법고을 운영에 관련하여 다음의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종합법률정보와 법원도서관 및 온라인 법고을은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인지도 측면에서는 종합법률정보가 법원도서관이나 온라인 법고을보다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음. 2023년 기준으로 법원전자도서관 접속자는 약 111만명인데 반해,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접속자수는 약 3,860만명임(법원도서관이 전자도서관 이외 별도로 구축한 온라인 법고을은 2024년 9월 서비스 시작).

23) 대법원은 보통 시스템 구축 비용의 약 10%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함.

따라서, 온라인 법고을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하급심 판례나 특허법원 판례 등 판례정보는 이미 운용 중인 종합법률정보를 개선하는 방식이 법조인이나 일반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 측면에서 더 적절할 수 있음.

〈대법원 법률정보 검색 사이트 비교〉

	종합법률정보		법원전자도서관		온라인 법고을
운영 주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법률정보 DB 구축은 법원도서관이 담당)		법원도서관 (법률정보 DB 구축은 법원도서관이 담당)		법원도서관 (법률정보 DB 구축은 법원도서관이 담당)
운영 취지	법률 종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정보 온라인 무료 제공		법률 종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정보 온라인 무료 제공		법률 종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정보 온라인 무료 제공
2025년도 예산안 (*운영 비용)	2,620만원 사법업무전산화 └ 사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 사법행정시스템 유지관리 └ 종합법률정보 유지관리비		2,349만원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 위탁사업비 └ 법원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법원전자도서관 유지관리비		560만원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 위탁사업비 └ 법원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온라인 법고을 유지관리비
검색 자료	판례 법령 조약 규칙/예규/선례		판례 소장자료 법원간행물/컬렉션 사이트		판례(특허법원○, 하급심△ ²⁴⁾) 법령 문헌(저작권 회원만 이용 可 ²⁵⁾) 규칙/예규/선례
홈페이지 접속자수	2019년	27,651,738	2019년	1,135,158	2024년 9월 23일 서비스 시작으로 홈페이지 접속자 수 미파악
	2020년	25,505,931	2020년	1,157,794	
	2021년	28,569,276	2021년	1,130,587	
	2022년	48,319,879	2022년	1,135,124	
	2023년	38,601,234	2023년	1,116,462	

* 각 시스템 운영비용은 유지관리요율을 반영한 추정치

24)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을 통해 하급심 판례 검색 기능 추가 예정

25)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저작권 공개 동의 기능 추가 예정. 2024년 10월 현재,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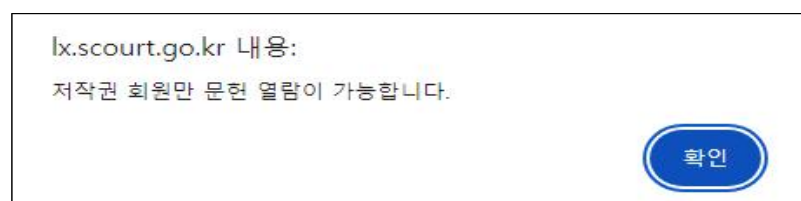
둘째, 온라인 법고율이 제공하는 ① 판례, ② 특허법원 판례, ③ 헌법재판소 판례, ④ 문헌, ⑤ 법령, ⑥ 규칙/예규/선례 등의 법률정보는 이미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상용화가 된 다른 기관의 법률정보 홈페이지²⁶⁾를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함.

셋째, 종합법률정보와 법원전자도서관 및 온라인 법고율이 보유한 법률정보가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병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중복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법률정보가 다수 홈페이지에 분산되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대법원은 종합법률정보 외에 온라인 법고율 등 법률정보제공 시스템을 별도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 재고하고, 향후 양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법률정보 DB 구축은 법원도서관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운영 주체도 정보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법원도서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법고율에서 저작권 회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문헌을 검색할 수 없음.



- 2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대법원 특허법원 홈페이지 : <https://patent.scourt.go.kr/main/new/Main.work>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홈페이지 : <https://isearch.ccourt.go.kr/main.do>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 <https://www.nanet.go.kr/main.do>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main.html>

- 한편, 법원도서관은 ‘2024년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으로 ①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할 수 없는 하급심 판례 자료 보장 및 ② 법률문헌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공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국민이 법률문헌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을 통해 온라인 법고을만의 고유한 강점을 추진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²⁷⁾.
- 다만, 오랜 기간 저작권 공개 동의를 통해 각종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²⁸⁾ 등 사이트에서도 여전히 많은 논문·문헌이 비공개인 점을 고려할 때, 얼마나 많은 저작권 공개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공개 동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작권자가 일반 대중에 대한 저작권 공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들 사이에만 문헌을 공유하게 되는데, 민간의 법률정보 검색 업체에서는 일반인과 유료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차등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법률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일반인과 회원(저작권 회원) 사이에 개방되는 법률정보에 차등을 두는 사례는 찾기 어려우므로, 문헌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7) 추가로 법원도서관은 온라인 법고올이 종합법률정보가 제공하지 않는 특허법원 판례를 제공하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특허법원 판례는 변호사, 법리사, 기업 등 특정 집단이 주로 이용하는 판례정보이므로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용성이 낮음.

28)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5)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사업은 사법부 구성원의 전문화 및 국제화, 외국과의 사법외교기능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700만원(1.4%) 증액된 76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1140-361)	7,626	7,586	7,693	107	1.4

(나) 일반수용비 증액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내역사업인 ‘장단기 해외연수’ 사업은 법관의 외국의 대학,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훈련²⁹⁾ 및 연구활동 참가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700만원(2%) 증액된 53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9) 연수기간은 6개월, 1년, 1년 6개월(기출국 해외연수법관 등에 대하여 연수성과에 따라 연수기간 6개월 연장)로 구분하여 시행됨.

〈2025년도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 기능별·세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142	7,934	7,626	—	308	7,586	7,693
장단기 해외연수	5,514	5,296	5,172	—	124	5,224	5,331
법원공무원 단기국외훈련	168	168	124	—	44	168	168
법관 단기국외훈련	209	209	154	—	55	209	208
연임법관 연수	1,406	1,406	1,406	—	—	1,200	1,200
국제회의 참가 등	438	438	394	—	44	438	438
개발도상국 사법역량 강화	200	209	168	—	41	155	155
외국사법부와의 정기교류	80	80	80	—	—	65	65
전문법률분야 국제 심포지엄 및 재외 한인법조인 초청	128	128	128	—	—	128	128
□ 비목별 분류(합계)	8,142	7,934	7,626	—	308	7,586	7,693
일반수용비(210-01)	1,984	1,767	1,612	—	155	1,634	1,744
임차료(210-07)	37	46	45	—	1	37	37
일반용역비(210-14)	30	30	30	—	—	30	30
국외업무여비(220-02)	943	943	804	—	139	943	940
국외교육여비(220-03)	5,139	5,139	5,126	—	14	4,933	4,933
관서업무추진비(240-02)	9	9	9	—	—	9	9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장단기 해외연수’ 사업은 크게 국외교육
여비(220-03)(37억 3,400만원)과 일반수용비(210-01)(15억 9,700만원)
등 두 비목으로 편성되었는데, 대법원에 따르면 국외교육여비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및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에 따라 항공료, 체재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자료수집비 등을 지급하고 있고,³⁰⁾ 일반수용비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8조제4항에 의한 학자금 지급에 사용된다고 설명함.

〈2025년도 ‘장단기 해외연수’ 사업 세부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	금액	비목	산출근거
장기해외연수	3,734	220-03	93명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및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라 산정
	1,597	210-01	
합계	5,331		

자료: 대법원 제출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별표 1]의 해외연수 비용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학자금(일반수용비)을 제외한 항공료³¹⁾, 체재비³²⁾, 생활준비금³³⁾, 귀국이전비³⁴⁾, 의료보험료(의료보조

30)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8조 (비용의 지급) ① 국비 해외연수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체재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가족항공료,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및 자료수집비는 연수의 종류, 연수기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 [항공료]

가. 본인 :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른 왕복항공료

나. 가족항공료(배우자 및 미혼의 자녀)

<가족항공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액
본인과 동시 출입국시	본인과 동일 등급 항공료
본인과 별도 출입국시	2등 정액(Economy Class)등급 항공료

32) [참고1] 국가별체재비단가표 참조

33) 500미합중국달러

34) 아시아주 300미합중국달러, 기타 지역 600미합중국달러

비)³⁵⁾ 등의 국외교육여비는 단가 및 지급기준이 명확하여 소요되는
예상 예산액의 산출이 용이한 반면,

‘학자금’은 ‘연수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용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연구자료수집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정의하고 있는데, 내규상
별도의 지급기준 또는 단가 등이 정해진 바가 없음.

- 국외교육여비는 단가 및 지급기준이 명확한 특성상 사업 수혜 대상
인원을 비교적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자금 또한 국외
교육여비에 비례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그러나 2025년도 동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국외교육여비
의 경우에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37억 3,400만원이 편성된 반면,
‘학자금’에 해당하는 일반수용비만 전년도 대비 1억 700만원(7.2%)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증액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됨.

〈2021~2025년도 ‘장단기 해외연수’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비목별 분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외훈련 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액	5,763	5,598 추경:5,268	5,514	5,224	5,331
	국외교육여비 (국제화여비)	3,920	3,404	3,734	3,734	3,734
	일반수용비 (학자금)	1,843	1,864	1,780	1,490	1,597

자료: 대법원 제출

35) [참고2] 의료보험료 국가별단가표 참조

- 위 연도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단가 및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 ‘국외교육여비(220-03)’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37억 3,400만원으로 동액 편성된 반면, ‘일반수용비(210-01)’는 각각 17억 8,000만원(2023년도), 14억 9000만원(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에는 15억 9,700만원으로 증감 추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법원은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재정당국에 학위과정 비중을 높이기 위한(5명 증원) 국외업무여비(국제화여비) 2억 5,600만원, 일반수용비(학자금) 3억 9,200만원 등 총 6억 4,800만원의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일반수용비(학자금) 1억 700만원만 반영되었다고 설명함.

국외교육여비의 단가 및 지급기준이 명확하고, 연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해당하는 여비가 전년도와 동액 편성되어 사실상 학위과정 5명 증원을 할 수 없음에도, 별도의 지급기준 또는 단가 등이 정해진 바가 없는 학자금만 증액 편성되는 경우, 학위과정 비중 확대라는 본래의 증액 요구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명확한 근거 없이 증액 편성된 학자금만 임의적·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사용될 여지가 있음.

실제로 동 사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동 사업 수혜 대상인 교육훈련자와 연구자 중 일부(총 14명)에게 어학연수를 명목

으로 총 14명에게 4,300만원 가량이 ‘학자금’으로 지출되었는데, 어학연수비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규칙 등에 교육훈련자 등에게 교육여비 이외에 어학연수비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연수 대상자들이 각각의 언어 숙련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택적·추가적으로 지출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³⁶⁾ 일반적으로 영미권 국가는 우수한 영어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기 때문에 어학연수 비용지급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음에도 임의적으로 지급된 문제가 있었음.³⁷⁾³⁸⁾

〈2023년도 결산 중 어학연수 지출 관련 세부 내역〉

연번	소 속	직위	연수국가/기관	어학연수 기관	과정	청구내역	원화환산액 (원)
1	대전지법	판사	미국 (골든게이트)	JC Education	방문	\$5,400	₩7,054,560
2	서울행정	판사	독일 (프라이부르크)	Fokus Sprachen Seminare (2023.9.19.~20 23.10.) Language Training for Global Communication (LTGC) (2023.11.~2024 .1.31.)	연구	€ 1,161	₩1,645,845
3	남양주지원	판사	미국 (UC데이비스)	인터네셔널 하우스 (I-HOUSE) 비영리단체	연구	\$120	₩156,768

36) 해당 어학연수는 각 대학에서 연수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한 프로그램이 아님.

37) 각 인원별로 균등한 금액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1인당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846만원에 이를 정도로 개인별 지원액 또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38)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어학연수비를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석하여 지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제417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4. 8. 26.) 회의록 p.93 이하 참조

연번	소 속	직위	연수국가/기관	어학연수 기관	과정	청구내역	원화환산액 (원)
4	의정부지법	판사	오스트리아 (빈)	ALEKSANDRA COSIC STUDY POINT	연구	€ 1,800	₩2,551,698
5	인천지법	판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Alliance français a strasbourg(6개 월 과정, 2023.10. ~ 2024.3.)	연구	€ 1,123.4	₩1,592,543
6	울산지법	판사	독일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대 학 WELCOME CENTRE Heidelberger Pädagogium	연구	€ 690	₩978,151
7	서울중앙	판사	독일 (베를린자유)	Sprachenfreund e	연구	€ 558	₩791,026
8	인천지법	판사	프랑스 (파리제2)	ACCORD ECOLEDE LANGUES · PAR IS	연구	€ 3,740	₩5,301,861
9	대구지법	판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UBC English Language Institute	연구	CAD 3,750	₩3,558,188
10	성남지원	판사	스페인 (마드리드국립)	Internacional de Lenguas de Madrid	연구	€ 5,970	₩8,463,132
11	서울남부	판사	독일 (뮌헨)	Carl Duisberg Centren	연구	€ 2,180	₩3,090,390
12	영덕지원	판사	스페인 (마드리드국립)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International House Madrid	연구	€ 4,200	₩5,953,962
13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	Dinamo Language School	연구	€ 850	₩1,204,969
14	광주고등	판사	일본 (동경대학)	유네스코 일본어 교실	연구	¥31,200	₩270,504
합계(원화추산액)							₩42,613,597

* 2023.11.16. 기준 환율(송금보낼 때): 1\$=1,306.40, 1¥=8.67, 1€=1,417.61, 1CAD=948.85

* 개인이 어학연수기관에 결제 후 영수증 첨부하여 어학연수비 신청. 개인통장으로 입금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에 따르면, 학자금은 대부분 외화(현지화: 달러, 유로화, 파운드, 엔화 등)로 지급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 및 학자금 인상율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영미권 연수기관(대학)의 경우 대학마다 학비가 상이하고, 입학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학자금의 경우에는 과거 예산 편성 내역 및 집행 결과(지역별·학교별 학자금 자료)를 활용하고, 그 밖에 예산 소요의 환경 변화(환율 변동 및 학자금 인상 등)나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산출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위 대법원의 설명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학위과정 5명 증원을 위한 증액 요구를 할 당시의 산출 근거로 보이고, 다른 기관들의 경우에도 학자금의 필요액보다 제한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외교육여비가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예산안에 반영된 1억 700만원의 학자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액 사유나 규모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 따라서, ‘장단기 해외연수’ 내역사업에 증액 편성된 1억 700만원에 대해서는 국외교육여비와 무관하게 학자금만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사유와 그 규모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별도의 지급기준 또는 단가 등이 정해진 바도 없는 학자금의 특성상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지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 증액분을 삭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1] 국가별체재비 단가표

구분	국가(화폐단위)	월지급액	
		갑종	을종
현지화 지급국	그리스(유로)	2,328	1,978
	네덜란드(유로)	2,421	2,057
	노르웨이(크로네)	23,330	19,830
	뉴질랜드(달러)	4,552	3,869
	대만(엔티달러)	89,582	76,144
	덴마크(크로네)	19,366	16,461
	독일(유로)	2,421	2,057
	루마니아(유로)	2,053	1,745
	벨기에(유로)	2,421	2,057
	불가리아(유로)	2,053	1,745
	스웨덴(크로나)	23,913	20,326
	스위스(프랑)	4,333	3,683
	스페인(유로)	2,328	1,978
	싱가폴(달러)	3,800	3,230
	아일랜드(유로)	2,421	2,057
현지화 지급국	영국(파운드)	1,712	1,455
	오스트레일리아(달러)	3,347	2,844
	오스트리아(유로)	2,421	2,057
	이탈리아(유로)	2,421	2,057
	일본(엔)	349,756	297,292
	중국[홍콩제외](위안)	17,099	14,534
	체코(유로)	2,053	1,745
	캐나다(달러)	3,140	2,669
	터키(유로)	2,375	2,018
	포르투갈(유로)	2,328	1,978
	폴란드(유로)	2,053	1,745

구분	국가(화폐단위)	월지급액	
		갑종	을종
	프랑스(유로)	2,421	2,057
	핀란드(유로)	2,513	2,136
	헝가리(유로)	2,053	1,745
미합중국 달러화 지급국	남아프리카공화국	2,149	1,826
	러시아	2,881	2,448
	말레이시아	2,030	1,725
	멕시코	2,244	1,907
	미국	2,479	2,107
	베트남	2,030	1,725
	브라질	2,479	2,107
	사우디아라비아	2,149	1,826
	아랍에미리트연합국	2,244	1,907
	아르헨티나	2,149	1,826
	우즈베키스탄	2,149	1,826
	이스라엘	2,479	2,107
	이집트	2,149	1,826
	인도	2,149	1,826
	인도네시아	2,149	1,826
	칠레	2,149	1,826
	코스타리카	2,030	1,725
	쿠웨이트	2,244	1,907
미합중국 달러화 지급국	태국	2,030	1,725
	필리핀	2,030	1,725
	중국[홍콩]	2,479	2,107

[참고 2] 의료보험료 국가별단가표

가. 의료보험료 : 의료보험제도 시행국가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

의료보험료 국가별단가표

국가명	화폐단위	월지급액	국가명	화폐단위	월지급액
뉴질랜드	NZ\$	77	오스트리아	EUR	103
덴마크	DKK	1,058	일본	¥	10,000
독일	EUR	184	칠레	US\$	170
미국	US\$	220	캐나다	C\$	61
벨기에	EUR	126	콜롬비아	US\$	40
스웨덴	SEK	294	프랑스	EUR	112
스위스	CHF	231	핀란드	EUR	58
스페인	EUR	43	호주	AUD	143
영국	£	45			

*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위 표에 열거된 국가의 의료보험제도에 가장 유사한 국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의료보조비 : 의료보험제도 미시행국가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

의료보조비 국가별단가표

국가명	화폐단위	월지급액	국가명	화폐단위	월지급액
대만	TWD	2,142	러시아	US\$	37
싱가폴	SGD	122	이탈리아	EUR	75
중국(홍콩)	US\$	57	터키	EUR	45
중국(홍콩제외)	CNY	400	헝가리	EUR	30
말레이시아	US\$	66	기타 구공산권국가	EUR	46
베트남	US\$	57	기타 유럽국가	EUR	74
태국	US\$	66	멕시코	US\$	126
필리핀	US\$	66	코스타리카	US\$	126
기타 동서남아국가	US\$	66	기타 중남미국가	US\$	126
네덜란드	EUR	67	기타국가	지역별 지급액에 준하여 지급	
노르웨이	NOK	585			

(6)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사업은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직원 역량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9억 4,800만원(18.1%) 증액된 126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11,617	10,736	12,684	1,948	18.1

- 내역사업인 ‘사무환경 개선’ 사업은 속기직렬에 대한 스마트속기기계 및 업무용 헤드셋 지원과 각급 법원 디지털복합기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억 3,200만원(995.9%) 증액된 2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 기능별·세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응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203	11,721	11,617	84	20	10,736	12,684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2,144	1,995	1,892	84	19	1,778	1,778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건강지원운영	958	896	895	—	1	958	908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 장보육시설 지원	7,600	8,366	8,366	—	—	7,600	7,700
	사무환경개선	215	215	215	—	—	194	2,126
	야간업무종사자 특수건강 검진	86	39	39	—	—	30	30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 유	200	210	210	—	—	176	142
□ 비목별 분류(합계)		11,203	11,721	11,617	84	20	10,736	12,684
	일반수용비(210-01)	2,442	2,293	2,192	84	17	2,362	2,278
	임차료(210-07)	98	2	2	—	—	98	1,660
	복리후생비(210-12)	371	370	369	—	2	5	5
	기타운영비(210-16)	—	1	1	—	—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23	123	123	—	—	123	123
	민간위탁사업비(320-02)	7,400	7,400	7,400	—	—	7,400	7,500
	공사비(420-03)	250	795	795	—	—	250	250
	감리비(420-04)	—	13	13	—	—	—	—
	시설부대비(420-05)	—	4	4	—	—	—	—
	자산취득비(430-01)	519	721	720	—	1	498	868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증액된 21억 2,600만원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속기직렬에 대한 스마트속기기계 및 업무용 헤드셋 지원을 위해 3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각급 법원에 내구연수가 도과되었거나 수리한계가 초과한 디지털 복합기 교체를 위해 15억 6,200만원이 순증되었음.

〈2025년도 ‘사무환경 개선’ 사업 증액 세부 내역〉

내역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증감	산출근거
스마트 속기기계	100	441	341	· 140대(연간 교체 계획)×315만원=4억 4,100만원
업무용 헤드셋	94	123	29	· 315명×39만원=1억 2,300만원
각급 법원 디지털 복합기 등 지원	—	1,562	1,562	· 법원 총 소요 1,760대, 74억 8,900만원 중 30%인 528대 렌탈 도입
합계	194	2,126	1,932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나) 스마트 속기기계 예산의 적정성

- 대법원은 현재 속기직렬 인원이 총 1,382명이나 이 중 예비용을 포함한 보유분은 1,129개로 부족분이 253개에 달한다고 하면서, 한국스마트 속기협회 공인기종인 SMART CAS PLUS(대당 315만원) 스마트 속기기계를 140대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그런데 대법원에서 제출한 각급 법원의 스마트 속기기계 보유 현황 및 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총 속기직렬 인원은 1,294명으로 대법원에서 설명한 1,382명과 인원수에도 차이가 있고, 예비용을 포함한 보유 개수 또한 총 인원수보다 많아 신규로 기기를 도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추가로 요청한 법원도 다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현황 파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법원 스마트 속기기계 보유 현황 및 요청 현황〉

법원	속기직렬 인원	운용(A)	예비용(B)	총 보유 (A+B)	요청
사법정책연구원	2	2	2	4	-
서울고등법원	54	49	14	63	49
대전고등법원	7	5	4	9	4
대구고등법원	6	5	2	7	-
부산고등법원	6	6	5	11	-
광주고등법원*	10	5	-	5	1
수원고등법원	16	11	4	15	3
특허법원	9	7	2	9	-
서울중앙지방법원*	168	126	-	126	19
서울가정법원	11	8	5	13	4
서울행정법원	19	19	-	19	2
서울회생법원	1	1	1	2	-
서울동부지법	34	32	2	34	2
서울남부지법	39	40	1	41	3
서울북부지법	30	29	3	32	4
서울서부지법	33	26	4	30	9
의정부지법*	35	20	6	26	-
고양지원*	17	12	1	13	2
남양주지원*	12	10	1	11	-
인천지방법원	56	42	13	55	5
부천지원	18	14	6	20	3
인천가정법원	2	1	2	3	1
수원지방법원	73	56	6	62	15
성남지원*	28	9	-	9	8
여주지원*	7	4	1	5	1
평택지원	8	8	1	9	3
안산지원*	26	14	5	19	1
안양지원	14	9	13	22	17
수원가정법원*	5	2	-	2	1
수원회생법원*	5	1	-	1	3
춘천지방법원	12	12	-	12	7
강릉지원*	8	4	1	5	2
원주지원	4	2	-	2	3
속초지원*	2	-	2	2	-
영월지원	5	5	4	9	-
대전지방법원	36	31	5	36	13
홍성지원*	8	3	2	5	-
공주지원	3	2	-	2	2
논산지원	4	2	2	4	2
서산지원	5	4	1	5	1
천안지원*	14	7		7	4
대전가정법원	2	1	1	2	1

법원	속기직렬 인원	운용(A)	예비용(B)	총 보유 (A+B)	요청
청주지방법원	19	19	-	19	6
충주지원	7	4	4	8	3
제천지원	2	2	-	2	1
영동지원	1	1	-	1	-
대구지방법원*	53	36	-	36	4
서부지원	16	10	9	19	5
안동지원	2	2	1	3	-
경주지원*	5	3	-	3	1
포항지원	5	4	1	5	-
김천지원*	5	4	-	4	-
상주지원	3	2	1	3	3
의성지원	4	2	1	3	1
영덕지원*	3	2	-	2	-
대구가정법원*	6	3	-	3	1
부산지방법원	40	37	-	37	3
동부지원	14	10	4	14	2
서부지원*	16	11	-	11	2
부산가정법원*	4	2	-	2	1
부산회생법원*	2	1	-	1	-
울산지방법원*	33	18	3	21	5
울산가정법원*	6	2	-	2	-
창원지방법원	30	20	-	20	11
마산지원	8	6	1	7	2
진주지원	2	2	-	2	-
통영지원	6	4	3	7	4
밀양지원	5	5	1	6	-
거창지원	3	5	-	5	-
광주지방법원*	50	29	10	39	6
목포지원	5	5	4	9	1
장흥지원*	5	-	2	2	-
순천지원*	17	10	-	10	5
해남지원	3	3	2	5	2
광주가정법원*	4	2	-	2	1
전주지방법원*	26	20	-	20	5
군산지원	9	4	2	6	4
정읍지원*	4	2	-	2	1
남원지원	2	2	1	3	-
제주지방법원	15	12	5	17	2
합계	1,294	952	177	1129	277

주1) 음영표시된 법원은 총 인원 이상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규로 요청한 법원임.

주2) *표시된 법원은 총 인원 이하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요청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요청한 법원임.

자료: 대법원 제출

또한, ① 서울고등법원 등 26개 법원은 총 속기직렬 인원을 상회하는 수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요청을 하였고, ② 의정부지법 등 30개 법원은 총 인원보다 보유 기기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기를 요청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각급 법원별 필요한 기기수에 대한 수요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신규 구입이 필요한 기기수가 정확히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속기기계는 대당 315만원³⁹⁾에 달하는 고가의 기기로서, 이와 같은 고가기기의 도입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예산의 과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의 편성에 앞서 필요한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더불어 ① 속기직렬인원을 하회하는 수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기기를 요청하지 않은 의정부지법 등 9개 법원, ② 속기직렬 인원보다 적은 수의 속기기계를 보유하면서도 인원수에 못미치는 필요량만 요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21개 법원, ③ 속기직렬 인원에 비해 총 보유 속기계계의 수가 많음에도 일부만 운용하는 서울고등법원 등 62개 법원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1인당 한 대의 기기를 보유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9) 대법원은 한국스마트속기협회의 견적가(모델명: smart cas plus)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당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 실제 구입대수를 고려한 견적가는 아님.

출처: <https://www.smartsteno.org/> (사단법인 한국카스속기협회)

따라서 대법원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확한 수요조사와 업무량 등을 기초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신규 구입이 필요한 기기 수를 파악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 업무용 헤드셋 예산의 적정성

- 업무용헤드셋 구입 예산은 2025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대비 2,900만원 (30.9%)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대법원은 업무용 헤드셋 구입은 속기직렬에 대한 청력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재판업무의 특성상 타 부처 속기(국회, 지방의회 등) 대비 업무 강도가 높고, 장시간 녹음청취로 청각기능 저하 및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녹취서·집중심리재판 제도 등의 도입으로 재판 속기 업무량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 대법원은 현재 속기직렬인원이 총 1,382명으로, 현재 업무용헤드셋 총 보유수는 1,214개이나 이 중 내용연수가 도과된 헤드셋이 총 758개로서 연차별로 교체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함.

〈각급 법원 업무용 헤드셋 보유 현황 및 요청 현황〉

법원	속기직렬 인원	보유	내용연수 도래	내용연수 미도래	요청
사법정책연구원	2	-	-	-	2
서울고등법원	54	44	38	6	35
대전고등법원	7	11	-	11	-
대구고등법원	6	5	5	-	5
부산고등법원	6	6	6	-	5
광주고등법원	10	3	3	-	5
수원고등법원	16	13	-	13	6
특허법원	9	1	-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168	153	69	84	69
서울가정법원	11	10	10	-	10
서울행정법원	19	25	10	15	4
서울회생법원	1	1	1	-	1
서울동부지법	34	34	-	34	-
서울남부지법	39	35	3	32	7

법원	속기직렬 인원	보유	내용연수 도래	내용연수 미도래	요청
서울북부지법	30	32	19	13	7
서울서부지법	33	25	15	10	15
의정부지법	35	25	9	16	5
고양지원	17	11	-	11	5
남양주지원	12	2	-	2	10
인천지방법원	56	40	22	18	5
부천지원	18	22	9	13	9
인천가정법원	2	2	-	2	-
수원지방법원	73	68	30	38	30
성남지원	28	12	-	12	5
여주지원	7	5	5		5
평택지원	8	8	6	2	7
안산지원	26	14	6	8	7
안양지원	14	18	18		-
수원가정법원	5	1	-	1	2
수원회생법원	5	-	-	-	4
춘천지방법원	12	12	-	12	-
강릉지원	8	12	6	6	-
원주지원	4	4	-	4	2
속초지원	2	2	1	1	1
영월지원	5	5	1	4	1
대전지방법원	36	72	33	39	10
홍성지원	8	6	3	3	3
공주지원	3	4	2	2	4
논산지원	4	2		2	2
서산지원	5	5		5	5
천안지원	14	9		9	-
대전가정법원	2	2	1	1	-
청주지방법원	19	19	1	18	-
충주지원	7	7	3	4	3
제천지원	2	2	-	2	-
영동지원	1	2	1	1	-
대구지방법원	53	31	-	31	-
서부지원	16	11	-	11	-
안동지원	2	3	-	3	-
경주지원	5	6	3	3	1
포항지원	5	7	4	3	1
김천지원	5	4	2	2	3
상주지원	3	4	2	2	1
의성지원	4	4	-	4	-
영덕지원	3	2	-	2	-
대구가정법원	6	5	2	3	-
부산지방법원	40	77	37	40	-
동부지원	14	25	4	21	-
서부지원	16	6	-	6	9

법원	속기직렬 인원	보유	내용연수 도래	내용연수 미도래	요청
부산가정법원	4	2	-	2	1
부산회생법원	2	-			1
울산지방법원	33	25	4	21	2
울산가정법원	6	1	-	1	1
창원지방법원	30	35	1	34	5
마산지원	8	7	-	7	-
진주지원	2	2		2	-
통영지원	6	10	4	6	3
밀양지원	5	10	5	5	-
거창지원	3	3	-	3	-
광주지방법원	50	61	23	38	15
목포지원	5	5	-	5	-
장흥지원	5	2	-	2	-
순천지원	17	11	11	-	5
해남지원	3	3	-	3	-
광주가정법원	4	2	1	1	1
전주지방법원	26	30	10	20	-
군산지원	9	5	2	3	2
정읍지원	4	5	3	2	-
남원지원	2	4	2	2	-
제주지방법원	15	15	-	15	-
합계	1,294	1,214	456	758	354

자료: 대법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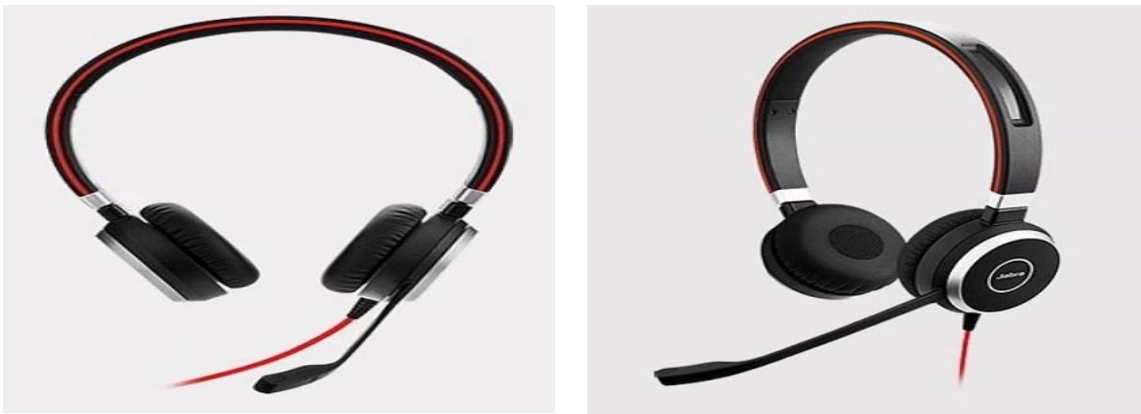
- 위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각급 법원 업무용 헤드셋 보유 현황 및 요청 현황을 파악하면서 내용연수가 도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분하였으나, 그러한 구분의 기준이 될 업무용 헤드셋의 모델명은 무엇인지, 내용연수는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업무용 헤드셋의 경우에는 속기기계와 달리 속기사들의 필수적 업무 기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각 모델별로 가격 및 품질에 따라 내용연수도 다를 수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예산안 편성 및 그

규모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기의 구체적 모델명과 해당 모델을 선정하게 된 객관적 근거 등이 충분히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억 2,300만원의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해 해당 단가를 39만원으로 책정하여 총 315대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헤드셋으로는 고가에 해당하는 39만원의 모델이 왜 필요한지와 해당 모델을 선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 이미지만을 제공하였음.

업무용 헤드셋 제품 이미지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에서 제공한 위 제품 이미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일본 Jabra 사의 Evolve 40이라는 모델로 확인되는데, 해당 모델⁴⁰⁾의 경우 가격이 15만 9,000원으로서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39만원 단가와는 큰 차이가 있고, 업무상 용도를 고려해보더라도 속기

40) <https://brand.naver.com/jabra/products/2141180075> 참조

직렬이 사용하는 기기로서 마이크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음.

- 또한,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총 인원 36명을 훨씬 상회하는 72개를 보유하고, 그 중 39개가 내용연수가 미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개를 추가로 신청한 반면,

인천지방법원(총 인원 56명, 보유분 40개 중 22대가 내용연수가 도과하였으나 신청대수는 5개에 불과), 안양지원(총 인원 14명, 보유분 18개 전체가 내용연수 도과하였으나 미신청) 등과 같이 신청분이 모두 반영되더라도 보유분이 총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전반적으로 교체 대상에 대한 파악이나 교체 기준의 수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법원은 업무용 헤드셋의 신규 구매 필요성, 단가 산정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 모델명 및 해당 모델 선정 경위 등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라) 디지털복합기 예산의 적정성

- 각급 법원에 디지털복합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025년도 예산안에 15억 6,200만원이 순증되었음.

동 사업은 각급 법원에 내용연수가 도과하였거나 수리한계가 초과한 디지털 복합기를 교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향후 3개년간 교체가 필요한 총 1,760대의 기기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그 중 30%인 528대의 디지털 복합기에 대해 렌탈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함.

〈대법원 보유 디지털 복합기 현황〉

법 원	현황		요청 수량		
	총 보유대수	내용연수 도과 (수리한계초과 포함)	흑백	컬러	합계
합계	2,738	1,760	1,465	295	1,760

자료: 대법원 제출

〈3년 연차별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입방식	흑백	컬러	합계
25년	렌탈	1,297,296천원 [468대×월 231천원×12월]	266,400천원 [(60대)×월 370천원×12월]	1,562,696
26년	자산취득	2,144,550천원 [493대×4,350천원]	817,950천원 [123대×6,650천원]	2,962,500
27년	자산취득	2,144,550천원 [493대×4,350천원]	817,950천원 [123대×6,650천원]	2,962,500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위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5년도에 흑백 468대, 컬러 60대 등 총 528대를 렌탈로 운용할 계획인 반면, 2026년도와 2027년도에는 각각 흑백 493대, 컬러 123대 등 총 616대를 자산취득할 예정인 것으로 보임.

대법원은 2025년에는 렌탈로, 2026·2027년에는 자산취득으로 각각 기기 교체 계획이 다른 이유에 대해, 2025년도에는 기본 출력매수 조절을 통해 렌탈료 단가를 낮추는 등으로 내용연수가 도과되었으나 수리한계 비용이 초과한 기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2026년도부터는 특이소요에 한하여 자산취득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2025년도 예산안에 한하여만 렌탈로 운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대법원에 따르면, 디지털 복합기는 내용연수가 6년인 기기로서, 렌탈로 기기를 운용할 경우 6년을 기준으로 흑백은 총 150만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컬러는 103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2025년도에는 열람·복사 사용량이 많고 시급한 종합민원실, 민사집행과, 총무과 등에 우선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1대당 자산취득 및 렌탈 소요액 비교>

- 기준 : 렌탈 6년, 월 1만매, 캐논 NPG83

구분	소요액		절감액	비고
	자산취득	렌탈		
흑백	취득	395만원	연240만원 150만원 (221만원)	렌탈은 유지보수 비용 일체 포함 금액임
	유지보수	연199만원		
	6년 합계 ⇨	1,590만원		
컬러	취득	600만원	연384만원 103만원 (211만원)	
	유지보수	연301만원		
	6년 합계 ⇨	2,407만원		
		⇨ 1,440만원		
		⇨ 2,304만원		

주1) 렌탈 월1만매와 무제한 요금제는 비용 동일함

주2) 괄호안 금액: 취득비용 대체로 연 금리 3%, 6년 운용 시 절감 기대비용 포함

주3) 토너 1개당 통상 4만 2천매 사용, 평균 수리비 포함

자료: 대법원 제출

○ 위 대법원의 설명대로라면, 내용연수(6년)를 기준으로 할 때 렌탈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데, 3개년 교체계획 중 2026년도와 2027년도에는 굳이 자산취득으로 계획하게 된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기기 특성상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하여 반드시 그 이후 바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기에 6년을 기준으로 한 발생비용의 비교는 합리적이지 않을 여지도 있음.

일례로, 서울고등법원의 디지털 복합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 60대의 기기 중 6년이상 경과한 기기는 25대에 해당하나 수리한계에 도달한 기기는 5대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 디지털 복합기 보유 현황〉

구입년도	복합기 보유 현황					6년 경과 (2018년기준)		수리한계 초과(c)	'24년도 희망대수 (a+b+c)
	출력량					일반 복합기(a)	컬러 복합기(b)		
	20 매	30 매	40 매	50 매 이상	계				
2017년 이전		2	19		21	21		2	23
2018년			5		5	4		1	5
2019년			4	1	5	0	0	2	2
2020년		1	7		8	0	0		0
2021년		1	12		13	0	0		0
2022년			4		4	0			0
2023년			4		4	0			0
소계	0	4	55	1	60	25	0	5	30

자료: 대법원 제출

- 아울러 대법원은 기기 교체를 위해 2025년도 예산안 15억 6,200만원을 순증 편성하면서도, 교체로 인해 2025년도부터 발생하지 않게 될 기존 528대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로 감액 고려하지 않았는데, 위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산취득한 기기의 연간 유지보수비용은 흑백 연 199만원 및 컬러 연 301만원으로⁴¹⁾, 흑백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⁴²⁾ 총 10억 5,000여만원(528대×199만원)에 달함.⁴³⁾
- 따라서 대법원은 디지털 복합기 교체를 위해 순증된 15억 6,200만원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연간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41) 자산취득한 기기를 기준으로 한 유지보수비용을 참조하였음.

42) 흑백만을 기준으로 한 최소치로, 컬러가 포함되면 해당 연 102만원이 증가함.

43) 렌탈 기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비용은 흑백 연 240만원, 컬러 연 384만원으로, 흑백을 기준으로 하면 528대의 연간 렌탈 비용은 **12억 6,720만원**에 달함.

(7) 재판일반경비지원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사업은 재판운영에 소요되는 간접경비의 지원과 법원 구성원이 일반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적 경비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5억 4,800만원(10.9%) 증액된 461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41,277	41,610	46,158	4,548	10.9

(나) 법정통역센터 운영비 증액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내역사업인 ‘법정통역센터 운영’ 사업은 상근 법정 통·번역 지원제도를 위한 법정통역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500만원(26.9%) 증액된 3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 기능별·세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376	41,554	41,277	86	191	41,610	46,158
통번역인 인증평가 및 교육 여비 등	138	242	153	73	16	138	372
감정료·통번역료 및 의료비	2,542	2542	2528	13	1	2,822	3,142
재판사무감사	91	91	91	—	—	91	91
재판업무지원비	9,989	9,989	9,978	—	11	9,989	11,609
재판활동지원비	14,796	14,796	14,784	—	11	15,128	14,772
민사집행 신원보증 보험료	168	173	173	—	—	168	168
민사 제1심 집중심리 및 형사공판중심주의 등 실무연구회 지원	1,224	1224	1224	—	—	1,224	—
야간업무귀가지원	300	300	300	—	—	300	300
핵심경력법관 역량강화	150	150	145	—	5	150	150
재판운영경비 지원	2,938	4,107	4082	—	26	3,389	3,389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40	40	38	—	2	40	40
무죄판결 신문공고료 등	400	343	330	—	13	400	50
일반재판업무지원	7,387	7343	7303	—	40	7,387	8,530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등	105	105	95	—	10	105	61
대법원장 퇴임식 및 취임식 행사	108	108	51	—	56	—	—
법정통역센터운영	—	—	—	—	—	279	354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	—	—	—	—	—	269
영상재판 활성화	—	—	—	—	—	—	170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법원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	—	—	—	—	—	2,691
□ 비목별 분류(합계)		40,376	41,554	41,277	86	191	41,610	46,158
	일반수용비(210-01)	9,135	9,108	9,069	13	25	9,501	10,760
	공공요금및제세(210-02)	3,106	4,278	4,252	—	26	3,557	3,557
	특근매식비(210-05)	891	839	802	—	36	877	877
	임차료(210-07)	—	—	—	—	—	—	—
	복리후생비(210-12)	1,269	1,268	1,266	—	2	1,269	2,736
	일반용역비(210-14)	115	199	110	73	16	394	947
	기타운영비(210-16)	267	271	266	—	5	267	267
	국내여비(220-01)	122	122	95	—	27	91	91
	사업추진비(240-01)	9,989	9,989	9,978	—	11	9,989	11,609
	관서업무추진비(240-02)	40	40	10	—	30	—	—
	특정업무경비(250-03)	14,796	14,796	14,784	—	11	15,128	14,772
	일반연구비(260-01)	—	—	—	—	—	—	5
	기타보전금(310-04)	—	—	—	—	—	7	7
	구호및교정비(320-06)	646	646	645	—	1	530	530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전년도 대비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대법원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수어 외에 법정통역인 지정건수가 많은 아랍어 등 법정통역센터의 통역 가능 언어를 추가하기 위하여 법정 통역센터 상근 통역인 인원을 현재 5명에서 2025년도에 6명으로 1명

증원하기 위한 제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런데 동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을 202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1인당 연봉은 4,600만원으로 같으나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관리비 1,700만원이 추가로 순증되었고, 그 밖에 위탁고용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600만원(26.1%), 700만원(28%) 증액 편성되었음.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안 비교〉

2024 예산	2025 예산안
○ 279백만원 - 위탁사업비 : 279백만원 · 연봉 : 230백만원(5명 × 46백만원) · 위탁고용 수수료 : <u>23백만원</u> · 부가가치세 : <u>25백만원</u>	○ 354백만원(+75) - 위탁사업비 : 354백만원(+75) · 연봉 : 276백만원 (6명 × 46백만원) (+46) · 일반관리비 : 17백만원(+17) · 위탁고용 수수료 : <u>29백만원(+6)</u> · 부가가치세 : <u>32백만원 (+7)</u>

자료: 대법원제출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 등의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210-14)목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며, 용역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⁴⁴⁾」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⁴⁵⁾

위 예규에 따르면, 용역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제4절(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및 제5절(기타용역의 원가계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⁴⁶⁾

44)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 2023. 6. 30. 시행)

45)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24. 5., 230~231면.

원가계산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공동 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않도록 하며,⁴⁷⁾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함.⁴⁸⁾

46)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의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에 의한다.

47)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 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48)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위 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여 보면, 법정통역센터 운영을 위한 상근 통번역인의 고용을 위한 용역의 경우에는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 규정을 준용하게 되면서 일반관리비 계상 대상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대법원은 2024년도에는 일반관리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5년도부터 일반관리비가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필요에 의해 편성되었다고 답변할 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 2025년도 예산안에 일반관리비가 신규 편성됨으로 인해 전체 용역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한 170여만원 추가로 편성되는 등 전체 제비용은 인건비 1명분(4,600만원)의 65.2%에 해당하는 3,000만원(일반관리비 1,700만원, 위탁고용 수수료 600만원, 부가가치세 700만원 증액)이 증액 편성되었음.
- 대법원은 2024년도까지 동 사업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편성하지 않다가 2025년도 예산안에 일반관리비를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 및 객관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반관리비(1,700만원) 및 그에 따라 함께 증액된 위탁고용 수수료(약 10%, 170만원) 및 부가가치세(10%, 170만원) 등 총 2,040만원에 대한 감액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8) 전문재판운영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전문재판운영(1144-407) 사업은 사실심의 종국적 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통한 심급구조 정상화 및 사실심 재판에 대한 신뢰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0억 1,300만원(30.6%) 감액된 22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전문재판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전문재판운영 (1144-407)	3,751	3,309	2,296	△1,013	△30.6

(나) WIPO 마스터 클래스 개최 사업 예산에 대한 면밀한 집행계획 마련

- 내역사업인 ‘특허재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허브코트 구축’ 사업은 특허법원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WIPO 마스터 클래스 개최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저널 발간, 특허소송 법정변론 경연 대회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00만원 증액된 5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내역사업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WIPO 마스터 클래스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1억 2,600만원이 순증되었고, 지식재산권

관련 저널 발간은 전년도대비 7,400만원(53.2%) 감액된 6,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전문재판운영 사업 기능별·세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84	3,854	3,751	22	80	3,309	2,296
특허재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P허브코트구축	604	578	529	22	27	525	546
선거재판부 역량강화	117	115	115	—	—	—	—
전문법률분야 실무연구회	1,205	1205	1194	—	11	1,034	—
재판전문성 강화	20	20	20	—	—	20	20
회생 및 파산재판 기본운영비	1,245	1,275	1,234	—	41	1,201	1,201
스마트워크센터 지원	201	168	167	—	1	201	201
전문재판역량강화	492	492	492	—	—	328	328
□ 비목별 분류(합계)	3,884	3,854	3,751	22	80	3,309	2,296
일반수용비(210-01)	1,870	1,804	1,770	—	35	1,588	1,572
특근매식비(210-05)	305	303	297	—	6	200	200
임차료(210-07)	44	43	43	—	—	39	39
복리후생비(210-12)	1,217	1,214	1,199	—	14	1,034	—
일반용역비(210-14)	27	27	27	—	—	27	138
국외업무여비(220-02)	113	113	99	—	14	113	113
사업추진비(240-01)	8	8	8	—	—	8	8
관서업무추진(240-02)	4	4	4	—	—	4	4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정책연구비(260-02)	74	116	84	22	10	74	-
	공사비(420-03)	58	58	58	-	-	58	58
	자산취득비(430-01)	164	164	163	-	1	164	164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WIPO(국제지식재산권기구)는 지식재산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세계 각국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루는 판사들의 교류 도모 및 전문성의 제고를 위한 마스터 클래스를 2018년부터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법관들에게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인 표준과 절차, 접근 방식에 대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WIPO 마스터 클래스 개최 배경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따르면, 2023. 11.에 WIPO 측에서 특허법원에 추후 마스터 클래스의 개최 가능성 여부를 문의해왔고, 특허법원에서는 예측 가능한 미래(가능하다면 2025년)에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당시에는 이집트에서 2025년도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2024. 1.경 WIPO 측에서 대한민국 특허법원에 2025년 마스터클래스 개최 가능성을 타진해왔고, 2024. 7.경 WIPO로부터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2025. 5.경으로 잠정적인 일정을 정하였고, WIPO 측에서 미국 순회항소법원의 법관, 유럽통합특허법원의 법관 등을 대상으로 연사 섭외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함.

- 대법원에서 받은 WIPO 측의 세부 제안서에 따르면, WIPO 측에서 초청한 법관 및 WIPO 직원 등 총 26명에 대한 여비 및 숙박비는 WIPO측에서 부담하고, 우리측에 마스터 클래스 개최를 위한 행정적 지원, 장소 제공 및 식비와 하루의 숙박이 포함된 문화시찰 등의 비용을 요청하였음.

1. WIPO's contribution:	WIPO will provide: 1. Travel (in economy), daily subsistence allowance (DSA; to cover accommodation costs) and terminal expenses (TE) of the 20 judges invited by WIPO; 2. Travel (in business if more than nine hours), DSA, TE and honoraria of the five international members of the Faculty; 3. Travel, DSA and TE of one WIPO staff
2. Host Institution's contribution:	The host institution will provide: 1. Arrangements for appropriate venue facilities, venue security and necessary local administrative and logistical support; 2. Administrative and logistical support for the Master Class; 3. Visa and entry permit support for international Faculty members and participants; 4. Travel, DSA and TEs of the 10 national participants (if applicable); 5. Hospitality including coffee breaks, meals and reception; 6. Local transportation between venues and from/to airport; 7. Social program (e.g. one night accommodation in Seoul and visit).

자료: 대법원 제출

- 그런데 2025년도 동 사업 예산안 1억 2,600만원의 세부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료집 발간 등을 위한 명목으로 1,500만원, 행사 진행 용역비로 1억 1,100만원을 산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행사 진행 용역비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 등에 세부 견적서를 의뢰한 바가 없고, 단가 산정

을 위한 인원 등에 있어서도 약 30명의 법관들이 참석하는 마스터 클래스⁴⁹⁾의 규모와 달리 60명을 기준으로 대강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해당 예산의 편성 및 그 규모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하게 예산 산정을 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행사진행 PCO 용역비(1억 1,100만원) 산출 내역〉

PCO 용역비	내역	금액 (백만원)
	PCO 인건비	17
	식음료	41 (오찬 : 60명 * 8만원 * 3일, 만찬 : 60명 * 10만원 * 3일, 커피 및 다과 : 60명 * 5만원 * 3일)
	문화시찰 등 비용	22 (문화시찰 : 3백만원, 식비 : 6백만원, 문화시찰로 인한 숙박 13백만원)
	해외연사 운송	9
	PCO 일반관리비·기업이윤·부 가세	22
	합계	111

자료: 대법원 제출

위와 같은 예산안 단가 산정은 특히 그간 집행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경우에 있어 발생하기 쉬운데, 산정 당시의 산식과는 달리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총액을 기준으로 용도별 구분 없이 사용되기 쉽고, 이에 방만한 예산 집행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

49) 대법원에 따르면, WIPO 마스터클래스는 세계 각국에서 약 30명의 법관들이 참석하여 지식재산권 법의 최신 동향과 도전 과제를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으로, 지식재산법의 적용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사건 처리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함.

에서 문제가 됨.⁵⁰⁾

위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CO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과 식음료비, 문화시찰 등의 여행경비는 행사를 진행하게 될 호텔 및 여행사 몇 곳에 구체적 인원과 함께 미리 견적서를 받아 이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대법원은 별도 견적을 의뢰하는 등의 객관적 단가 산정을 위한 절차 없이 단순히 편성된 총액을 적당히 배분하는 식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법원은 행사 진행에 앞서 각 업체에 정확한 행사 참석 인원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견적을 받아보고, 이를 근거로 각 항목별 소요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향후 행사 진행에 있어 방만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50) 이를테면 단가 산정시의 인원예 비해 실제 참석 인원이 현저히 적을 경우, 남은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식음료비 등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9) 법원시설관리 등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사업은 법원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법원활동의 수행기반을 구축하고, 보안 검색장비 등을 구비하여 청사 내 근무하는 법원구성원 및 출입일반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36억 8,300만원(27.1%) 증액된 641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법원시설관리 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38,905	50,479	64,162	13,683	27.1

(나) 판사실 설치 사업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예산안 편성 필요

- 법원시설관리 등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판사실 설치 사업’은 법관 현원 증가에 따라 판사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6억 7,1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지금까지는 판사실 추가 설치 소요가 발생한 경우 법원시설관리 등의 내역사업인 ‘각급법원 사무실 환경 효율화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재판시설확충 사업 중 하나로 독립하여 편성함.

〈2025년도 판사실 설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38,905	50,479	64,162	13,683	27.1
재판시설확충	3,342	4,143	5,543	1,400	33.7
판사실 설치	—	—	671	671	—

〈판사실 설치 사업 예산안(671백만원) 산출내역〉

- － 공사비(420-03) : 593백만원 (48실 × 12,408천원)
- － 자산취득비(430-01) : 81백만원 (48실 × 1,700천원)
- ＊ `24년 창원지법 판사실 설치 공사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

○ ① 신입 법관 임용, 복직 등으로 법관 현원의 지속적 증가, ② 독립제 기관으로서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특성상 독립된 사무실 필요, ③ 여성 법관의 증가 및 혼성 판사실 근무 어려움 해소 필요 등 판사실 설치 사업의 취지는 인정되나,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의 점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현재까지 판사 현원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은 맞지만, 향후 판사의 현원 증가 여부는 불확실함. 판사의 정원은 법정 사항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은 판사의 정원을 3,214명으로 정하고 있음⁵¹⁾.

51) 제21대 국회에서 판사의 정원을 늘리는 개정안(의안번호 제2119065호, 제2113144호)이 논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이에 따라 2023년 12월 기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현원은 3,192명이고, 신규 법관을 임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정된 판사 정원의 한계상 2023년 12월 현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육아휴직 등 휴직제도 활성화를 고려할 때, 실근무 판사 인원의 증가 여지도 크지 않음.

〈최근 5년간 판사 현원 변동 현황〉

연도	정원	휴직 포함 현원	휴직 제외 현원	휴직인원
2019	3,214	2,952	2,806	146
2020	3,214	3,036	2,911	125
2021	3,214	3,101	2,985	116
2022	3,214	3,151	3,006	145
2023	3,214	3,192	3,032	160
2024. 9.	3,214	3,096	2,938	158

* 각 연도말 기준(단, 2024년은 9월 1일 기준)

- 또한, 판사실의 신규 공급은 청사 신·증축과 관련된 법원의 다른 사업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어 반드시 판사실 설치 사업을 통해서만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예컨대, 법원시설관리 등 사업의 내역 사업인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별관 공간 재배치 사업’에 판사실 설치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1별관 공간을 재배치한 결과 판사실 8개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고, 그 외 각 법원 신축공사에서 많은 개수의 판사실이 추가로 설치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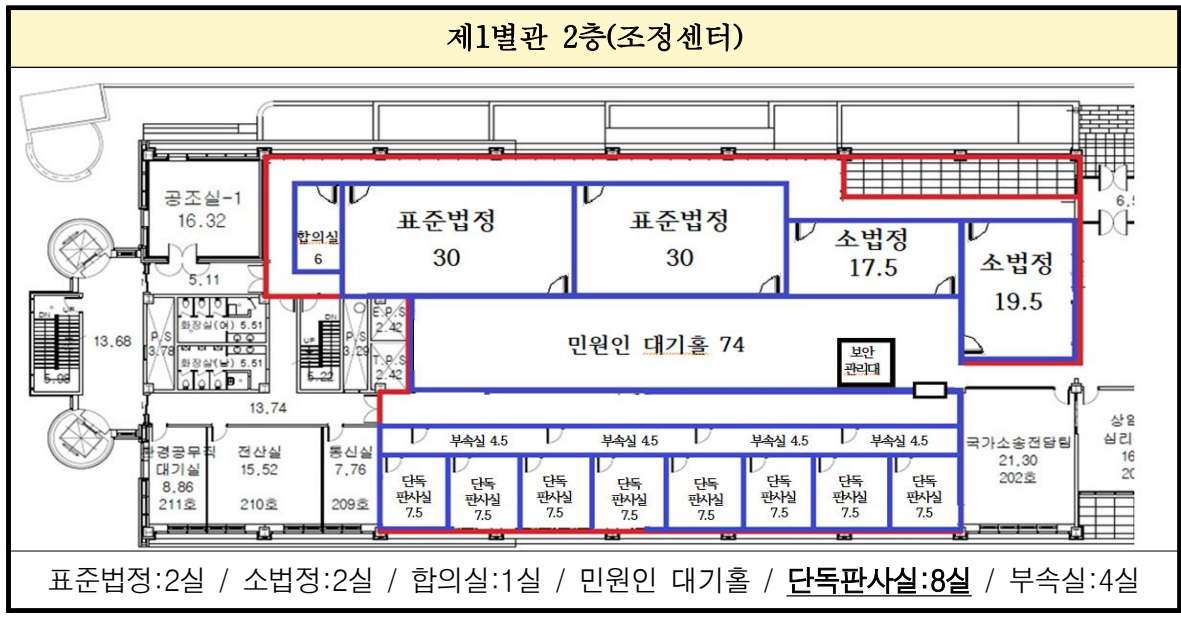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별관 공간 재배치 : 3,834백만원(순증)〉

□ 사업내용

- 서울법원종합청사 사무실 협소도 심화, 여유 공간의 부족 등 판사실, 재판연구원실·재판 공간의 확보를 위해 민사단독3과 분실 및 제1별관 조정센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임차, 이전하고 공간재배치를 추진

□ 산출 내역

- 공사비용 : 1,098백만원
- 이전비 및 비품구입 : 285백만원
- 임차료 : 1,500백만원
- 임차공간 리모델링 : 951백만원



자료 : 대법원 제출

〈현재 시공 중인 법원 신축 건물의 판사실 추가 예정 현황〉

법원 신축공사 사업명	판사실 설치 예정(개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축	35
제주지방법원 별관 증축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별관 증축	18
울산지방법원 별관 증축	6

- 다른 사업과 중복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판사 현원 증가 여부가 아니라, 각급 법원별 실제 판사실 설치 공사 계획과 이에 근거한 예산의 편성·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법원은 판사실 추가 설치 소요를 48개로 산정하면서도, 48개실이 필요한 근거 즉,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 몇 개를 설치할 계획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함⁵²⁾.
- 명확한 공사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예산의 계획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하거나 초과집행하기 쉽고, 특히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판사실 설치가 긴급하지 않은 법원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단가가 높은 비품을 사용하는 등으로 국가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판사실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원 청사 신·증축에 반영된 판사실 설치 규모와 판사 현원 변동 추이 및 각 법원별 실소요 등에 근거한 명확한 공사 계획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52) 다만, 대법원은 수요조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천지원, 성남지원, 안양지원, 대전지방법원, 안동지원, 부산동부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등 다수의 법원에서 판사실 사용 가능 인원에 비해 실제 사용 인원이 초과한 상태라고 설명함.

(다) 재판연구원실 설치 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

- 법원시설관리 등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재판연구원실 설치 사업’은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현원 증가에 따라 재판연구원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7억 2,9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지금까지는 재판연구실의 추가 설치 소요가 발생한 경우 법원시설관리 등의 내역사업인 ‘각급법원 사무실 환경 효율화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2025년 예산안부터는 재판시설확충 사업 중 하나로 독립하여 편성함.

〈2025년도 재판연구원실 설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38,905	50,479	64,162	13,683	27.1
재판시설확충	3,342	4,143	5,543	1,400	33.7
재판연구원실 설치	—	—	729	729	—

〈재판연구원실 설치 사업 예산안(729백만원) 산출내역〉

- 공사비(420-03) : 593백만원 [40실(2인1실) × 14,821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36백만원 (80명 × 1,700천원)
- * `20년 춘천지법 재판연구원실 구조개선 공사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

- 재판연구원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법관의 재판 업무를 돕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재판연구원규칙」으로 정하고 있음⁵³⁾. 재판지연 해소 및 재판

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판연구원 정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정원은 400명(현원 399명)이고, 2025년에도 정원을 80명 더 늘리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함.

〈「재판연구원규칙」 상 재판연구원 정원 변동 현황〉

연도	재판연구원 정원
2011년	200명
2019년	250명
2020년	300명
2023년	350명
2024년	400명
2025년	(480명 예정)

- 다만, 재판연구원 정원의 증가로 재판연구원실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 취지는 인정되더라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재판연구원실 신규 공급은 청사 신·증축과 관련된 법원의 다른 사업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어 반드시 재판연구원실 설치 사업을 통해서만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예컨대,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별관 공간 재배치 사업’에 재판연구원실 설치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1별관 공간을 재배치한 결과 재판연구원실 1개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고, 그 외 각 법원 신축공사를 통해 재판연구원실이 추가 설치되고 있음.

53) 「재판연구원규칙」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400명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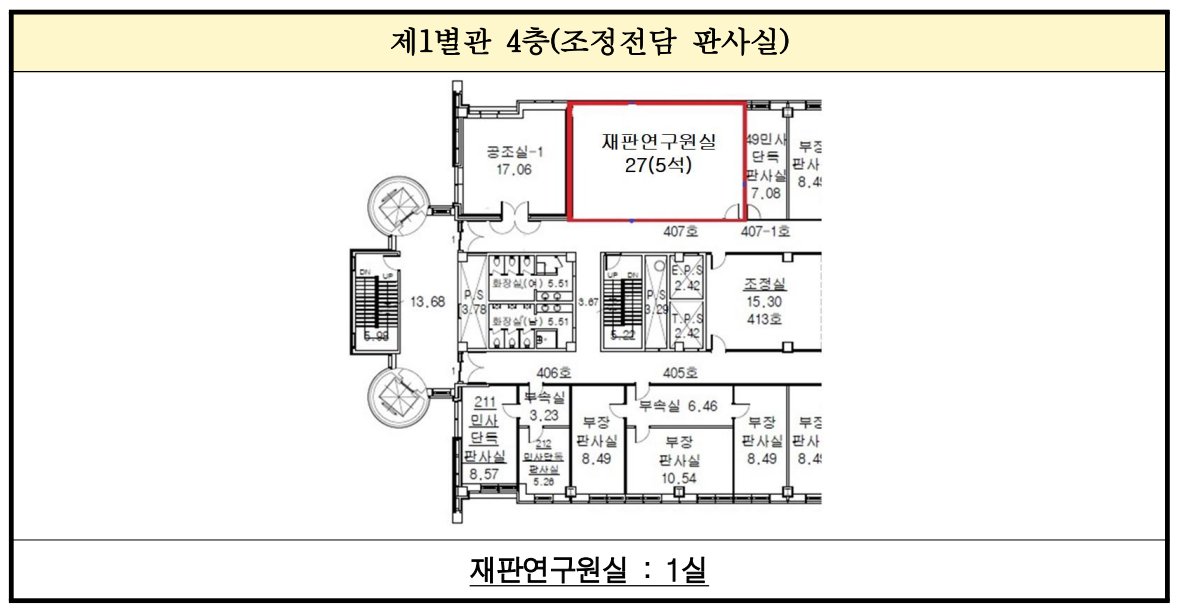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별관 공간 재배치 : 3,834백만원(순증)〉

□ 사업내용

- 서울법원종합청사 사무실 협소도 심화, 여유 공간의 부족 등 판사실, 재판연구원실·재판 공간의 확보를 위해 민사단독3과 분실 및 제1별관 조정센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임차, 이전하고 공간재배치를 추진

□ 산출 내역

- 공사비용 : 1,098백만원
- 이전비 및 비품구입 : 285백만원
- 임차료 : 1,500백만원
- 임차공간 리모델링 : 951백만원



자료 : 대법원 제출

〈현재 시공 중인 법원 신축 건물의 재판연구원실 추가 예정 현황〉

법원 신축공사 사업명	재판연구원실 설치 예정(개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축	2
울산지방법원 별관 증축	2

- 예산의 중복·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증원되는 인원이 아니라 각급 법원별 실제 재판연구원실 공사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대법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 몇 개의 재판연구원실이 설치될 것인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또한, 대법원은 80명의 재판연구원을 위해서 2인1실을 기준으로 40개의 재판연구원실을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재판연구원의 신분인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사무관(5급)에 준하여 대우하고 있으므로, 2인1실을 제공할 필요성은 다소 낮을 수 있음.

참고로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배정면적기준에 따르면, 사무관에게 배정되는 사무실 집무공간은 7㎡정도가 적절하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다른 기관들의 경우 서기관, 사무관 및 일반직원 등 다수 인원이 하나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일반적임.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전문임기제 나급 (5급 상당)	1명	채용일로부터 1년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 (세종특별자치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제2024-939호)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계 급 별	구 분	일반사무실 (제곱미터)	단독사무실 (제곱미터)	비 고
4 급	국장·과장 서기관 기관장실	17 7	33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부속실
5 급	과 장 <u>사무관</u> 기관장실	17 <u>7</u>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
6급 이하	과 장 일반직원 기관장	10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면적

- 더불어, 재판연구원의 정원이 400명이고 현재 각급 법원에 설치된 전체 재판연구원실이 총 100여개이므로 평균적으로 네 명당 한 개의 사무실이 배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인1실이 아니라 4인1실을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가 예산의 절감 및 공무원의 일반적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재판연구원실 개수를 40개가 아니라 20개로 산정하고, 법원 청사 신·증축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재판연구원실 설치 사업 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시) <재판연구원실 20개 설치 비용(433백만원) 산출내역>

- 공사비(420-03) : 297백만원 [20실(4인1실) × 14,821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36백만원 (80명 × 1,700천원)
- * 예산안 대비 296백만원 감액

2. 등기특별회계

《총 괄》

(1) 등기특별회계 유효기간 도래에 대응한 존치 여부 검토 필요

- 등기특별회계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열람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여 등기소 시설 확충과 등기사무의 전산화 등 등기업무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⁵⁴⁾으로 1994년 「등기특별회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설치되었음.
- 등기특별회계는 신설 당시 10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할 예정⁵⁵⁾이었으나, 2003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존속기간이 각각 7년씩 연장되었고, 2017년에는 존속기간이 10년 연장되어 2027년 유효기간이 도래할 예정임.
- 등기특별회계의 연장 사유는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서비스, 온라인 등기처리 완결시스템의 도입, 등기업무전산화에 따른 광역등기소의 설치 필요성, 노후화된 등기정보시스템 전면 재설계 등과 같이 사회·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음.
- 그러나, 대법원이 2017년 등기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 필요성의 주된 근거로 제시⁵⁶⁾한 미래형 등기전산화 사업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

54) 「등기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55) 신설 당시 상황에서는 등기업무 전산화와 노후등기소의 증·개축 및 등기소가 없는 지역 시·군·구에 등기소를 1개소씩 설치하는 데 약 10년간의 기간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제16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1993. 5. 17.)

56)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정부제출, 의안번호2005659)’, 2017. 8.

업'은 2025년 개발이 완료되어 유지보수 단계가 될 예정이며, 등기소 광역화 사업 실시 대상은 3개소⁵⁷⁾ 정도 밖에 남지 않게 된 상황임.

○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운영되는 회계⁵⁸⁾인데,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지난 10년간 세출 총액 평균액(257,771백만원) 중 주요사업비의 지출 평균액(75,211백만원)은 29.18%에 불과하고 인건비와 기본경비 지출 평균액(156,748백만원)이 60.80%를 차지해, 법무부 소관 교도작업특별회계⁵⁹⁾와 비교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다소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최근 몇 년간 등기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와 관련된 비용이 지출되어 감사원 감사⁶⁰⁾ 및 국회 결산심사⁶¹⁾ 등에서 다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는 등기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지출이 혼재되어 집행될 수 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법원의 조

5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역등기소(성남지원 등기과와 분당등기소 통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평택지원 등기과와 송탄등기소 통합)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광역등기소(동부지원 등기과와 남부산 등기소 통합)

58)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59) 2023년 결산 기준(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회수 및 이월금 제외) 총 세입(69,680백만원) 중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수입인 교도소 수입(67,602백만원)이 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세출(66,046 백만원) 중 교정활동 관련 주요사업비인 시설보완, 직업훈련, 교도작업 세부사업의 지출액 합계(65,512백만원)가 99.2%를 차지함.

60) '제목 : 등기특별회계 설치목적 외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대법원 재무감사 감사보고서', 감사원, 2019. 10., p.66.~73.

61) '등특 예산으로 법원사용자지원센터 등 공사비 집행 부적정',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결과', p.221., '등특 예산으로 사법역사문화교육관 공사비 집행 지양',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결과', p.222.

직구조 등의 특징 때문으로 보임.

- 등기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이나 소속기관 등 독립된 기관이 운영하거나 특정 실·국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주요사업비는 사법등기국이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등기업무 조직도 법원 내의 별도 독립조직인 소속기관이 아닌 법원 행정처·각급법원 조직 내의 국·과·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등기업무 부서 중 일부 부서는 별도의 건물이 아닌 지방법원 건물 내부에서 지방법원의 재판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근무하고 있음.

- 즉, 등기특별회계와 관련된 예산 관리 주체, 업무 인력, 근무 장소 등이 법원의 조직 내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집행되는 재판 지원 관련 부서 등과 별도로 분리되지 못한 상황이 등기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와 관련된 용도로 집행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임.
- 등기특별회계의 존치 여부는 향후 지출구조 측면에서 등기특별회계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의 논거가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이 존재하느냐, 등기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보다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집행할 수 있느냐라는 과제 등에 따라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인식 하에 최근 ‘제4차 등기특별회계(2018~2027)의 성과 및 향후 과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음⁶²⁾.

- 등기특별회계 존치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 시한은 2027년 예산안을 요구하는 2026년 5월까지인 만큼, 대법원은 2025년부터는 회계통합 등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가져오는 장점과 등기 관련 사업에 대한 적시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비교하여 향후 등기특별회계 미래에 대한 최적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최근 10년간 등기특별회계 세입·세출 추이(결산 기준)〉

(단위: 억 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입	281,031	325,106	282,057	283,199	284,349	287,343	318,867	353,446	317,306	301,102
수수료	239,593	278,736	248,256	240,935	243,137	241,730	262,761	262,652	230,725	222,011
이월금	34,447	39,216	23,411	28,112	25,877	42,283	40,666	77,897	73,685	68,050
기타	7,001	7,154	10,390	14,152	15,335	3,330	15,440	12,897	12,896	11,041
세출	241,815	301,695	253,945	257,322	242,065	246,676	240,970	279,761	249,256	264,203
주요사업비 ⁶³⁾	69,278	83,340	66,234	66,116	85,168	70,244	82,321	79,503	74,780	75,125
인건비	109,967	111,811	118,680	124,550	128,418	124,041	130,911	138,622	144,618	143,383
기본경비	27,569	28,034	29,030	26,985	28,479	27,806	27,738	32,455	29,858	34,520
전출금	35,000	78,510	40,000	39,671	—	24,586	—	29,181	—	11,176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62) 과거에도 대법원은 다양한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등기특별회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일반회계와의 통합, 사법서비스 진흥기금과의 통합(이원회,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사)재정성과연구원, 2021. 9., p.130.~140.), 등기특별회계 관리부서가 될 사법등기국의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장용근, ‘2차 등기특별회계(2011~2017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한국재정법학회, 2015. 11., p.49.) 등 여러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63) 등기소확충 단위사업(1252) 및 등기업무전산화(1334) 단위사업

《세 입》

(2) 토지대여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토지대여료(51-511)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로 인한 국가토지 임대료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토지대여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항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토지대여료 (51-511)	53	100	100	-	-

(나) 실제 수납액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 대법원은 등기소 부지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토지대여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토지대여료 수입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이하 ‘ATM 기기’) 및 전기차충전시설 등의 유상허가에 대한 사용료 수입과 유희등기소 부지와 건물 전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대하여 얻는 수입으로 최근 5년간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토지대여료 징수결정액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부 징수내역
2020	95	8	8	—	— ATM 기기 등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수납액 8)
2021	95	45	26	19	— ATM 기기 등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수납액 9) — 파주등기소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 36, 수납액 17, 미수납액 19)
2022	100	48	28	20	— ATM 기기 등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수납액 9) — 파주등기소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 39, 수납액 19, 미수납액 20)
2023	100	116	53	63	— ATM 기기 등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수납액 9) — 파주등기소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 39, 수납액 20, 미수납액 19) — 남대전등기소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 68, 수납액 24, 미수납액 44)
2024	100	50	50	—	— ATM 기기 등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수납액 8) — 파주등기소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수납액 19) — 남대전등기소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수납액 23)

자료 :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이 토지대여료 수입을 얻고 있는 구)파주등기소의 경우 유휴 등기소를 2020년 파주시에 매각하였으나, 구)파주등기소 부지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된 결과 대법원은 토지 지분 중 3841.8분의 304.3을 계속해서 보유⁶⁴⁾하게 되었고, 현재 파주시에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후 토지대여료를 매년 약 1,900여만원 징수하고 있음.

64) 원고 A의 상속인 중 7인이 국가를 상대로 구)파주등기소 부지 3,841.8㎡ 지분 476.63㎡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고, 국가가 패소하였으며 이들은 지분 전부를 취득한 후 파주시로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원고 A의 상속인 1인과, 소제기 가능성이 있는 B의 지분인 304.3㎡는 매각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보유하기로 함.

- 그러나, 남대전등기소의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가 임시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22일부터 1년간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대법원이 사인과의 국유재산 교환 계약을 통해 2024년 5월 남대전등기소의 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남대전등기소 사용허가는 2024년 5월 28일 자로 취소되었음.

즉, 2025년에는 남대전등기소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로 인한 토지대여료 수입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며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유희 등기소에 대한 신규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예정되어있는 곳은 없다고 함.

- 따라서, 2025년 토지대여료 수입은 ATM기기 등 사용허가에 따른 수입과 파주등기소 사용허가에 따른 수입만 예정되어있는 상황으로 실제 징수액은 2,7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므로, 2025년 토지대여료 수입은 실제 예측되는 징수액에 부합되게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면허료 및 수수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면허료 및 수수료(65-651)는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제증명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 등기업무 관련 수입금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640억 1,200만원(△20.8%) 감액된 2,439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항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51-511)	222,011	307,988	243,976	△64,012	△20.8

(나) 대법원이 산출한 기준으로 세입예산 조정 필요

- 대법원은 2019년도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등기특별회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허료 및 수수료의 과다 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⁶⁵⁾에 따라 세입 예산의 구체적 산출방식 도출을 위해 2021년 9월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⁶⁶⁾’라는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65) ‘등기특별회계 수입예산 과다계상 개선 필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p.268.

66) 이원희,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사)재정성과연구원, 2021. 9.

해당 연구용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결산액을 회귀분석하여 예산액과 결산액의 괴리액을 최소화하는 예산산출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당해연도 결산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경우 4년 가중평균의 방식을, 전년도 대비 10% 미만 증가할 경우 2년 가중평균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 산출 방식〉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산출방식
10% 이상	$4\text{년 가중평균} = \frac{4\text{년 전 결산액} + (3\text{년 전 결산액} \times 2) + (2\text{년 전 결산액} \times 3) + (1\text{년 전 결산액} \times 4)}{10}$
10% 미만	$2\text{년 가중평균} = \frac{2\text{년 전 결산액} + (1\text{년 전 결산액} \times 2)}{3}$

자료 : 대법원 제출

- 2023년 결산액(222,011백만원)이 2022년 결산액(230,725백만원) 보다 3.8% 감소되어, 결산액의 전년도 증감율이 10% 미만이므로 위 산출방식에 따라 대법원은 223,948백만원을 산출⁶⁷⁾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최근 2년간 수입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여 예·결산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2025년 예산안에서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을 20,028백만원 증액한(8.9%) 243,97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67) $[2022\text{년도 결산액}(230,725\text{백만원}) + (2023\text{년도 결산액}(222,011\text{백만원}) \times 2)] \div 3$

〈최근 5년간 면허료 및 수수료 대법원 요구액 및 기획재정부 조정액 등〉

(단위: 백만원)

연도	대법원요구액	기획재정부 조정액 (A)	결산액(B)	과리금액 (A-B)
2020	323,624	294,380	262,761	31,619
2021	313,874	313,874	262,652	51,222
2022	258,087	258,087	230,725	27,362
2023	257,309	352,003	222,011	129,992
2024	242,116	307,988	224,915(추정)	83,073

자료 : 대법원 제출

- 비록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액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동되는 경향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근거 없이 편성된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된 대법원의 최초 예산요구액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건물매각대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건물매각대(71-711)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한 등기소 건물 매각대금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억 5,200만원 (48.2%) 증액된 13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건물매각대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항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건물매각대 (71-711)	79	937	1,389	452	48.2

(나) 유희등기소 매각 수입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등기특별회계의 건물매각대는 광역등기소 신축 등으로 인한 등기소 통·폐합에 따라 용도폐지된 등기소 건물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며, 최근 5년간 수납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건물매각대 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세부내역
2020	1,323	1,523	1,523	- 구)동대구등기소 매각 : 311 - 구)부산강서등기소 매각 : 164 - 구)고흥등기소 매각 : 35 - 구)파주등기소 매각 : 1,013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세부내역
2021	1,323	175	175	- 구)은평등기소 매각 : 175
2022	1,389	64	64	- 구)광주등기소 매각 : 64
2023	1,389	79	79	- 구)포천등기소 매각 : 79
2024.7.	947	-	-	

자료 : 대법원 제출

-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대법원은 유휴등기소 중 구)전주등기소와 구)대덕등기소의 매각을 계획하며 예산액을 9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 7월 기준 두 등기소는 모두 매각되지 못한 상황이고 연내 매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2024년 4월 수원광역등기소가 개청됨에 따라 구)동수원등기소와 구)장안등기소가 유휴 되었고, 2025년 하반기 통합 여수등기소가 신축되면 구)여수등기소와 구)여천등기소도 유휴될 예정임.

- 2025년까지 유휴중이거나 유휴가 예상되는 등기소 중 대법원의 국유 재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2025년 매각대상인 등기소는 구)전주등기소, 구)대덕등기소, 구)장안등기소로 매각대상 등기소가 2024년 대비 한 곳 늘어남에 따라 대법원은 2025년 예산액을 13억 8,900만원으로 증액하였음.

〈유휴등기소 현황〉

(단위: 백만원)

등기소 명	건축 연도	건물면적(㎡)	건물 대장가액	유휴결정시점	향후계획
구)울산중부등기소	1995	634.40	286	2014.11.17. 신청사이전	활용계획 협의 중
구)전주등기소	1999	1,287.96	864	2019.12.2. 신청사이전	2024년 매각 또는 교환 추진 중
구)남양주등기소	2006	694.96	—	2022.1.1. 남양주지원 개원	법원기록관 신축 예정(설계중)
구)대덕등기소	1983	483.0	113	2022.10.4.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개원	2024년 매각 또는 교환 추진 중
구)동수원등기소	2000	2644.1	2,840	2024.4.1.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원	장래활용 대비 보유(2026년 이후 매각 등 예정)
구)장안등기소	2002	817.65	724	2024.4.1.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원	2025년 매각 또는 교환 추진 중
구)여수등기소	1975	490.8	273	2025.8. 여수등기소 신축 예정	장래활용 대비 보유(2028년 이후 매각 등 예정)
구)여천등기소	1988	905.5	305	2025.8. 여수등기소 신축 예정	장래활용 대비 보유(2028년 이후 매각 등 예정)

자료 : 대법원 제출

- 2025년 매각 예정 등기소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등기소는 구)전주등기소가 유일한 상황⁶⁸⁾인데, 대법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예산 문제로 2025년 매입 예산 편성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주시와 매각을 위한 협의가 계속 중이라고 함.

구)대덕등기소의 경우 대전지방법원이 대전시 대덕구청과 매각 또는

⁶⁸⁾ 전주시 측에서 ‘행정목적을 위한 시 현안 사업 부지로 구 전주등기소를 매입할 계획’임을 2024년 6월 공문으로 전주지방법원 측에 통보함.

교환을 협의 중에 있고, 구)장안등기소는 우선 장래 활용성을 검토해보고 매각 또는 교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2025년 세입예산안에 매각대상으로 예정된 등기소들의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은 아직 계획 중에 있지 않다고 함.

- 유희등기소의 향후 활용방안 관련 경쟁입찰 매각시 감정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우려 등의 이유로 장기간 보유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국회의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⁶⁹⁾이 있었는데, 울산지방법원에서 활용계획을 검토중인 구)울산중부등기소의 경우 10년이 지나도록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유희등기소를 조속히 매각·처분하여 건물매각대를 편성된 예산안대로 수납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2025년 매각을 계획 중인 유희등기소들의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69) ‘유희 등기소 활용 방안 적극 강구 : 유희 등기소인 구)전주등기소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약 5년이 경과하였고, 구)울산중부등기소의 경우 9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p.220.

《세 출》

(5) 등기소 신·증축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등기소 신·증축(1252-411) 사업은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노후·협소한 일반등기소를 신축 및 리모델링하고, 대도시 지역의 등기소를 통·폐합하여 통합등기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5억 1,700만원(△15.1%) 감액된 85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등기소 신·증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B-A)	(B-A)/A
등기소 신·증축 (1252-411)	15,227	10,035	8,518	△1,517	△15.1

(나) 노후등기소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비 조정 필요

-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예산비목 중 일반수용비는 2025년도 예산안에 노후등기소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비 용도로 4억원, 등기소 기록물 보존 및 관리 용도로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최근 4년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등기소 신증축 일반수용비 집행현황(2021년~2024년)〉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A)	집행액(B)	예산집행률(B/A)
2021	487	198	40.6
2022	487	250	51.3
2023	487	73	14.9
2024.7.	487	22	4.5

자료 : 대법원 제출

-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일반수용비의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등기소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비가 각 등기소 별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금액 수준으로 집행이 되고, 매년 리모델링 되는 노후 등기소는 5개 내외였으므로 실제 필요한 예산은 1억 5,000만원 수준이었는데 비해 예산액이 매년 4억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임.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이전비 집행 현황(2021년~2023년)〉

(단위: 원)

연도	구분	예산편성 당시 입주 예정 등기소	실제입주 등기소	입주일	이전비 및 이전 관련 일반수용비 집행액
2021	신축	부산통합등기소	부산통합등기소	2021. 3. 14.	141,116,240
	리모델링	진천등기소	진천등기소	2022. 1. 23.	8,900,000
		영암등기소	영암등기소	2021. 12. 26.	28,739,000
		동수원등기소	동수원등기소	2021. 3. 1.	26,250,000
		하남등기소	하남등기소	2022. 2.28.	-70)

70) 등기소 내부 공사시 주말 이용 등의 사유로 이전비 미발생

71) 2022년 신축 및 리모델링 이외 등기소 기록물 보존 관리 용도로 21,478,000원 집행

72) 2023년 신축 및 리모델링 이외 등기소 기록물 보존 관리 용도로 20,250,000원 집행

연도	구분	예산편성 당시 입주 예정 등기소	실제입주 등기소	입주일	이전비 및 이전 관련 일반수용비 집행액
2022 71)	신축	대전통합등기소	대전통합등기소	2022. 10. 3.	149,138,000
	리모델링	보은등기소	보은등기소	2022. 11. 27.	24,750,000
		장수등기소	장수등기소	2022. 12. 10.	26,428,000
		인제등기소	인제등기소	2023. 1. 7.	21,960,000
2023 72)	리모델링	문경등기소	문경등기소	2023. 12. 16.	23,723,500
		화천 또는 남해등기소	남해등기소	2023. 12. 2.	28,937,000

자료 :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아울러, 대법원이 제출한 등기소 이전비 관련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통합등기소의 이전비도 동 세부사업에서 집행했는데, 이러한 통합등기소의 이전비는 통합등기소가 완공될 때 등기업무운영지원 세부사업(7032-311)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⁷³⁾이므로 이를 동 세부사업에서 집행한 것은 동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매년 노후등기소 리모델링 수요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전비 예산 4억원은 2025년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는 5개 등기소(순창, 예산, 영주, 연천, 산청 등기소)의 소요에 실제 사용될 비용인 약 1억 5,000만원(1개 등기소당 소요비용 3,000만원 × 5개소)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73) 등기업무 운영지원(7032-311)사업에서 여수등기소 이전비, 이전행사 지원비(2025년 예산안) : 38백만원, 수원통합등기소 이전비, 이전행사 지원비(2024년 예산) : 86백만원, 대전통합등기소 이전비, 이전비(2022년 예산) : 41백만원 편성

(6) 등기업무 전산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등기업무전산화(1334-305) 사업은 등기업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81억 4,400만원(△19.6%) 감액된 333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등기업무전산화 (1334-305)	40,407	41,532	33,388	△8,144	△19.6

(나) 등기정보시스템 감리비 예산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 등기정보시스템은 등기소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등기업무시스템, 등기 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 등을 위한 인터넷등기소,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등기정보광장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 및 제도 개선과 정보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지속적인 변경 및 유지관리를 필요로 함.
- 2025년 4월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현행 등기정보 시스템 중 등기업무전산화 세부사업과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세부 사업에 편성된 유지보수비 중 일부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으로 이전됨.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이전되는 등기정보시스템 현황>

연번	시스템 명칭	미래등기시스템 이전 여부	현재 유지보수비 지급 세부사업
1	부동산등기시스템	○	등기업무전산화(1334-305)
2	법인등기시스템	○	
3	등기내부포털시스템	○	
4	디지털등기소시스템	○	
5	통합전자등기시스템	○	
6	부동산등기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	
7	기타등기인터넷시스템	○	
8	법인등기전자표준양식	○	
9	법인등기전자신청시스템	○	
10	법인등기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	
11	동산·채권담보등기전자표준양식	○	
12	동산·채권담보등기전자신청시스템	○	
13	동산·채권담보등기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	
14	전자확정일자전자신청시스템	○	
15	전자확정일자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	
16	등기외부포털시스템	○	
17	전자납부시스템	○	
18	재판사무전자촉탁시스템	○	
19	표시변경전자촉탁시스템	○	
20	압류와압류말소전자촉탁시스템	○	
21	공동고유번호시스템	○	
22	국민주택채권시스템	○	
23	소유권변동및코드통지시스템	○	
24	법인유관기관연계시스템	○	
25	전자확정일자연계시스템	○	
26	첨부서면연계시스템	○	
27	전자수입인지연계시스템	○	
28	등기수수료은행연계시스템	○	
29	사법부무상열람시스템	○	
30	등록면허세취득세통지시스템	○	
31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유/무상열람시스템	○	
32	통계시스템	○	
33	사용자지원시스템	○	
34	부동산전환시스템	×	
35	기타등기시스템	×	
36	동산·채권담보등기시스템	×	
37	전자확정일자시스템	×	
38	집행관통합시스템	×	
39	집행관관리감독시스템	×	
40	통합이미지전환시스템	×	
41	재외국민등록번호관리시스템	×	
42	법무사명부관리시스템	×	
43	사용자등록시스템	×	

연번	시스템 명칭	미래등기시스템 이전 여부	현재 유지보수비 지급 세부사업
44	등기소출입증관리시스템	×	등기업무전산화(1334-305)
45	등기소환급시스템	×	
46	수입징수관환급시스템	×	
47	이미지음영화시스템	×	
48	등기소출입증신청/등기이용지원시스템	×	
49	메일고지시스템	×	
50	이러닝시스템	×	
51	SLM시스템	×	
52	무인발급기서비스지원시스템	×	
53	전자문서관리시스템	×	
54	등기정보광장시스템	○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1334-306)
55	등기빅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	○	
56	등기빅데이터시스템	×	

자료 : 대법원 제출

○ 개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소관 세부사업 이동에 따른
각 세부사업별 2025년도 예산요구액은 다음과 같으며,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등기업무전산화 세부사업내의 등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6억 9,800만원(△
39.1%)이 감액된 120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액〉

(단위: 백만원)

연도	등기업무전산화 (1334-305)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1334-306)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1334-307)
2024	16,716 (53개 시스템)	868 (3개 시스템)	—
2025	12,018 [(53개시스템 × 3개월 : 4,005백만원) + (33개시스템 × 9개월 : 7,466백만원)]	873 [(3개시스템 × 3개월 : 302백만원) + (1개시스템 × 9개월 : 571백만원)]	7,821

자료 : 대법원 제출

그런데,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규모가 전년대비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감리비용은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이 편성되었음.

- 대법원은 2024년 이전까지 감리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포함한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사용⁷⁴⁾하여 감리비 예산을 집행해 왔으나, 2024년 감리비 1억원을 예산안에 별도로 반영했고 2025년 예산안에서는 낙찰차액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감리비 예산액을 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함.

〈최근 5년간 감리비 세부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산 ⁷⁵⁾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금액(B)	낙찰차액 (A-B)	감리용역 예산현액	감리용역 집행액
	등기업무 전산화	등기 빅데이터	합계(A)				
2020	15,500	867	16,367	15,544	823	—	262
2021	15,500	867	16,367	15,810	557	—	277
2022	17,315	867	18,182	17,641	541	—	285
2023	16,585	824	17,409	17,028	381	—	167
2024.7.	16,716	868	17,584	17,176	408	100	284 (계약체결액)

자료 :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74)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86.

75) 대법원은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등기업무 전산화(1334-305) 세부사업 예산과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1334-306) 세부사업 예산을 합쳐서 발주하고 있음.

- 그러나,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만으로도 최근 5년간 평균 5억 4,2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예산액이 전년대비 39.1% 줄어들어도 낙찰차액은 일정 부분 여전히 발생할 것이고 감리비가 부족할 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규모 축소에 따라 감리용역 사업 규모도 유사 규모로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지난 5년간 감리용역 평균 집행액 2억 5,500만원에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예산 감액 비율인 39.1%를 제외하면 약 1억 5,500만원의 금액이 산출됨.

참고로, 2023년 대법원이 실시한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감리용역의 경우 대상인 동 사업의 계약금액이 122억 1,000만원으로 2025년도 등기업무전산화 사업의 예산편성액과 유사한 규모인데 감리용역 예산을 1억 6,000만원으로 입찰공고하여 1억 5,800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음.

-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낙찰차액, 감리용역 규모 축소 필요성 및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2025년에 편성된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감리비 2억원은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해 보다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1334-306) 사업은 사용자맞춤형 등기정보를 제공하는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억 6,600만원(△26.6%) 감액된 12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1334-306)	1,913	1,752	1,286	△466	△26.6

(나) 세부사업(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존치에 대한 검토 필요

-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사업은 방대하고 다양한 등기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재하여 다차원적 활용을 하고자 하는 등기빅데이터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등 연계기관에 정보를 전달하는 등기빅데이터연계 관리시스템, 일반인들이 등기통계정보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등기정보광장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등기정보광장시스템 3개로 운영됨.
- 위 3개의 시스템 중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을 제외한 등기빅데이터연계

관리시스템과 등기정보광장시스템은 2025년 4월 미래등기시스템이 구축되면 미래등기구축시스템으로 9개월분의 유지보수비가 이관되어 해당 세부사업에서 수행될 예정임.

-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의 주된 하위 사업은 ①데이터센터 운영('24예산 202백만원 → '25예산 53백만원), ②시스템 유지관리('24예산 868백만원 → '25예산 873백만원), ③데이터센터의 전산장비 유지보수('24예산 301백만원 → '25예산 360백만원)인데, 2025년 예산안상 ①의 9개월분 예산 등이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그 후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의 하위사업은 ② 중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유지관리와 ③만 남게 됨.
- 그런데, 등기업무 전산화 세부사업의 등기정보시스템도 위 하위사업 (①, ②, ③)과 동일하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 위의 세 하위사업 모두 등기업무전산화의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해왔기 때문에,

〈2024 등기정보시스템 데이터센터 운영 등 발주·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예산총액	발주금액	계약금액
2024년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 운영	등기업무 전산화	4,223	11,098 ⁷⁶⁾	11,098	10,987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202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예산총액	발주금액	계약금액
2024년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기업무 전산화	16,716	17,584	17,350	17,176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868			
2024년도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상장비 유지보수	등기업무전산화	1,537	13,572 ⁷⁷⁾	13,572	13,438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301			

자료 : 대법원 제출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의 하위 사업 모두 등기업무 전산화 세부사업과 동일한 계약상대방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여러 등기정보시스템 간 유기적으로 혼합되어 정확히 분리할 수 없는 특정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집행금액을 다른 정보시스템과 분리하여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어느 세부사업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배분할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을 등기업무 전산화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관리·운영 관점

76) 등기특별회계 예산 이외에도 일반회계의 사법업무전산화(1331-300) 1,390백만원, 전자소송(1331-302) 1,277백만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구축(1331-303) 3,546백만원,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1333-304) 72백만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영(1335-307) 388백만원의 예산을 통합하여 발주함.

77) 등기특별회계 예산 이외에도 일반회계의 사법업무전산화(1331-300) 5,062백만원, 전자소송(1331-302) 1,445백만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구축(1331-303) 2,495백만원, 가족등록업무전산화(1332-303) 1,937백만원,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1333-304) 220백만원, 연수원 운영지원(7031-308) 15백만원, 교육원 운영지원(7031-309) 25백만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영(1335-307) 388백만원의 예산을 통합하여 발주함.

에서 비효율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사업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미흡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사업의 일부가 미래등기시스템 사업으로 이관되어 세부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점,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는 사업내용과 운영상 비효율,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2025년도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동 세부사업(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을 유사한 등기업무 전산화 세부사업과 통폐합해 사업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1334-307) 사업은 노후화된 등기정보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여 미래등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억 9,300만원(△2.3%) 감액된 210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1334-307)	17,578	21,535	21,042	△493	△2.3

(나) 미래등기추진단 운영예산 절감 노력 필요

- 미래등기시스템은 기존 종이기반의 등기 업무프로세스 및 노후화된 등기시스템의 전면 재설계를 통해 등기 전단계에서 부실등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시스템 구축비 805억 4,300만원이 투입되고 2030년까지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2,223억 6,400만원인 정보화사업임.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대법원은 직원 19명으로 구성된

미래등기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계약업체측 직원 75명과 함께 근무할 사무공간을 외부에 마련⁷⁸⁾하여 사업시작 연도인 2020년 7월 10일부터 사무실 임차료 예산을 매월 약 6,000만원씩 집행하여 2025년 4월까지 4년 10개월간 34억 1,100만원을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집행하게 되며, 최초 서울시 사당동에 있는 임차사무실에 입주하면서 가벽설치와 칸막이 및 네트워크 케이블 공사 비용 등으로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1월말 현재 임차하고 있는 서초동의 사무용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2025년 예산안에 임차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비⁷⁹⁾ 5,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한편, 대법원이 2020년 이후 실시한 대규모 정보화사업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⁸⁰⁾’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⁸¹⁾’ 모두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였으나,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추진단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무실 임차 등으로 인한 운영비가 별도로 소요되지 않았음.

78) 대법원은 사업이 시작되던 2020년 당시 서울 시내 유희등기소는 등기기록 정비사업소 및 콜센터 용도로 모두 사용중인 상황이었어서, 대규모 정보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미래등기추진단 및 외부사업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임차사무실에 입주하였다고 함.

79) 대법원은 사당동 사무실의 소유주가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주의 재건축 계획에 따라 임차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시설 철거 등 원상회복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함. 이전한 서초동 사무실은 최초 입주시 임대인이 시설 보수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계약개시일 당시의 조건과 상태로 임대목적물을 원상복구하고 부속물 매수청구권,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상복구 공사비가 발생함.

80) 총사업비 213,089백만원(구축비 103,882백만원, 운영·유지보수비 109,207백만원), 사업기간 2020년~2029년(구축 2020년~2024년, 운영·유지보수 2024년~2029년), 추진단 인원 중 대법원전산정보센터 근무 인원 41명

81) 총 구축비 23,612백만원, 사업기간 2023년~2030년(구축 2023년~2025년, 유지보수 2026년~2030년) 추진단 인원 중 대법원전산정보센터 근무 인원 22명

- 즉, 법원의 내부 유희시설 등을 활용할 경우 추진단 운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2022년 임차사무실 이전 당시 유희시설 활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2022년 3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개원으로 대법원과 차량거리 24km의 구)구리등기소(현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 2024년 3월 개소) 및 차량거리 26km의 구)남양주등기소(법원기록관 설립 추진 중, 2025년 6월 착공 예정)가 유희되었으므로 이 공간들을 활용했다면 사무실 임차료, 내부 공사비 등의 미래등기추진단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
- 따라서, 향후 대법원은 대규모 정보화사업에 수반되는 추진단을 구성할 경우 추진단의 사무실을 법원 보유시설 내부에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래등기추진단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비의 경우 공사 규모 및 계약업체와의 비용 분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총괄》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현황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법률 제13565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2015. 12. 15. 시행)에 따라 설치된 사업성 기금으로, 과거 국가재정으로 편입되지 않고 운영되던 법원의 공탁출연금을 기금화한 것임.

국회에서는, 공탁출연금 운용 사업은 재정사업에 해당함에도 국가재정에 편입되지 않아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므로 시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며,⁸²⁾ 이러한 지적 등에 따라 동 기금이 설치되었음.

- 본 기금은 「공탁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금(민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이 주된 재원이며(동법 제29조제1항),⁸³⁾

공탁 제도 개선, 국선번호인·소송구조·조정 제도 운용 및 기타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공익사업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결공익사업)의 수행에 활용됨(동법 제31조).⁸⁴⁾

8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1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12), 424.

83) [공탁법] 제29조(기금의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84) [공탁법] 제31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번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과 용도(「공탁법」) 〉

재원(제29조제1항)	용도(제31조)
◦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1) ◦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 ◦ 기타 출연금·기부금(3) ◦ 기금 운용 수익금(4) ◦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5)	◦ 공탁 제도 개선, 공탁전산시스템 개발·운용(1) ◦ 국선번호인 및 소송구조 제도 운용(2) ◦ 조정 제도 운용(3) ◦ 법률구조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 사업 지원(4) ◦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5)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가 의결한 공익사업(6)

주: 괄호 안은 대상 조문 해당 호의 번호

○ 본 기금의 규모는 공탁금 운용 수익의 누적 등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액은 3,902억 6,600만원 수준임.

- 결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6회계연도에는 538억 1,800만원이었으나 연평균 14.3%씩 증가하면서 2023회계연도에는 1,368억 8,900만원에 이르렀음.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규모(2016-2025)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 감
계획액	51,590	74,567	115,742	145,315	182,595	199,285	231,369	390,266	25.2
지출액	53,818	94,569	135,870	123,597	133,284	136,889	—	—	14.3

주: 연평균 증감의 경우 계획액은 2016 - 2025년 기준, 지출액은 2016-2023년 기준

○ 기금 수입은 민간출연금, 예치금·예탁금 등 회수, 기타 변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전체 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통상 민간출연금 (59-594)으로, 2025년도 수입계획안 3,902억 6,600만원 중 58.9% 정도인 2,299억 4,200만원이 민간출연금에 해당함.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2019-2025)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 입	94,569	135,870	123,597	133,284	136,889	231,369	390,266
민간출연금	84,111	91,499	83,970	75,530	100,894	105,636	229,942
	(88.9)	(67.3)	(67.9)	(56.7)	(73.7)	(45.7)	(58.9)
예치금·예탁금 등 회수	9,744	43,343	39,048	57,035	35,156	124,281	158,470
	(10.3)	(31.9)	(31.6)	(42.8)	(25.7)	(53.7)	(40.6)
기 타	714	1,028	579	719	839	1,452	1,854
	(0.8)	(0.8)	(0.5)	(0.5)	(0.6)	(0.6)	(0.5)

주: 1. 괄호 안은 전체 수입 대비 비중
2. 2019-2023년: 지출액 기준
3. 2024-2025년: 계획액 기준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사업은 기본적으로 「공탁법」 제31조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음.

기금 신설 당시 기존 공탁출연금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사업을 구성한 이후 일반회계로부터의 사업 이관, 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2025년도에는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지원 사업인 국선변호료 지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새롭게 이관되어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었음.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사업구조(2025) 〉

프로그램	세부사업	내역사업 및 내내역사업	「공탁법」
공탁업무전산화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 공탁시스템 운용 및 유지	§ 31 i
		◦ 공탁시스템 UHD 사업	
사법시스템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소송구조 지원	◦ 일반 소송구조 지원	§ 31 ii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조정제도 지원	◦ 조정제도 운영 － 조정위원 수당 등 － 각급법원 조정센터 운영 － 조정위원 교육 등 － 조정전담변호사 운영	§ 31 iii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 31 iv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지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업지원	
	소년보호 등 지원	◦ 소년보호재판지원 － 소년보호시설 등에 대한 비용지원 － 소년보호사건 부가처분 등에 대한 비용지원 － 전문가 진단, 상담 및 화해권고위원 수당지원 － 소년보호재판 등 활성화	§ 31 vi
		◦ 아동보호절차 등 지원 － 아동보호·가정보호 사건 절차 비용 지원 －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 비용 지원 － 특례법 시행에 따른 간담회 및 매뉴얼 등 제작 등 비용 － 피해자보호명령사건 국선보조인 선임비용 지원	§ 31 vi
		◦ 소년 등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 31 vi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 31 vi
	민원서비스 개선	◦ 사법민원서비스 운영 － 실시간 빠른 통합민원상담창구 － 사건기록 전자화 및 판결서 공개 －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 운영 －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 － 민원접견실 설치 － 법원도서관 대국민 민원서비스 강화	§ 31 vi
		◦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	§ 31 vi

프로그램	세부사업	내역사업 및 내내역사업	「공탁법」
	사법서비스 향상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 -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 성년후견 등 가사비송 절차구조 활성화 - 이혼 전 상담위원 운영 - 가사재판 안내를 위한 책자 발간 등 지원 - 성년후견제도 지원 - 치유적 사법제도(힐링코트) 지원 - 가사·소년 법관 및 조사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지원 - 가사민원상담관 도입 - 면접교섭관련 절차비용 지원 - 친권자지정 관련 전문가 자문비용	§ 31 vi
		◦ 사법교육 및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지원	§ 31 vi
		◦ 법조윤리회 및 한국법학원 지원	§ 31 vi
		◦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절차 지원 강화 - 개인도산 상담센터 운영 - 개인파산사건 저소득층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지원	§ 31 ii § 31 vi
		◦ 인신보호제도 운영 등	§ 31 vi
		◦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 31 vi
		◦ 절차보장을 통한 난민재판 지원	§ 31 ii
		◦ 전문심리위원 및 상임전문심리위원 운영 - 상임전문심리위원 운영 - 전문심리위원 운영 - 감정관리절차 지원	§ 31 vi
		◦ 치료명령대상자 및 친권자지정관련 등 진단 비용	§ 31 vi
	국선변호료지원	◦ 국선변호 보수 등(국선전담)	§ 31 ii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 31 v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 기금 지출은 「공탁법」에 따른 지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주요사업비와 기금운영비, 그 밖에 여유자금운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출액을 기준으로 본 2023회계연도의 주요사업비 비중은 50% 수준이며, 2024년도 및 2025년도 계획액을 기준으로 하면 그 비중이 더 낮아져 각각 31.5%, 26.8% 수준임.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2019-2025)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 입	94,569	135,870	123,597	133,284	136,889	231,369	390,266
주요사업비	48,483	53,116	67,139	71,864	70,173	72,838	104,520
	(51.3)	(39.1)	(54.3)	(53.9)	(51.3)	(31.5)	(26.8)
기금운영비	68	44	35	31	27	61	51
	(0.1)	(0.0)	(0.0)	(0.0)	(0.0)	(0.0)	(0.0)
여유자금운용 등	46,018	82,710	56,423	61,389	66,689	158,470	285,695
	(48.7)	(60.9)	(45.7)	(46.1)	(48.7)	(68.5)	(73.2)

주: 1. 괄호 안은 전체 수입 대비 비중
 2. 2019-2023년: 지출액 기준
 3. 2024-2025년: 계획액 기준

(2)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개선필요사항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과거 재정의 외로 운영되던 공탁출연금 운용 사업을 재정에 포함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업성 기금으로, 「공탁법」 제31조에 따른 각 사업의 수행을 내용으로 함.

기금 설치의 취지에 비추어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금의 경우 일반·특별회계의 예산 이·전용에 비하여 계획 변경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에서(「국가재정법」 제70조),⁸⁵⁾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충실한 계획안 작성 및 사업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85)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소관 중앙관서의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④ ~ ⑦ (생략)

- 또한, 「공탁법」 제31조제6호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결공익사업도 기금 사업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위에서 본 기금은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의결공익사업의 과도한 확대는 유사 사업의 중복 등을 통하여 재정지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업 운용에 필요한 절차를 우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기금에 편성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함.

- 이러한 점에서 「공탁법」 제31조제6호의 의결공익사업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법서비스를 개선·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본 기금의 수입은 가변적 성격의 민간출연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기금 사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적 수입 관리와 불필요한 지출 조정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4년 현재 계획액을 기준으로 할 때 주요사업비는 전체 지출 중 31.5% 수준이므로 추가 지출의 여력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으나, 기금 수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민간출연금이나 예치금·예탁금 등 회수액은 가변적인 공탁금 잔고, 금리 등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함.

(가) 지출구조 체계화 필요

- 재정 외로 운용되던 공탁출연금 사업을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받는 기금 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국가재정법」 제1조 참조).⁸⁶⁾

따라서 기금의 지출사업은 그 내용과 성과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상과 목적, 내용, 방법 등이 유사한 사업은 함께 묶어 구조화하여야 하고, 지출 규모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사업은 독립 편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 그런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법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출임에도 상이한 세부사업에 각기 편성하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여러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함께 편성하여 사법서비스의 성과 관리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예를 들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와 절차구조는 소송구조 지원(1161-301) 및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등 사업에 나누어 편성되어 있고, 민원인 편의를 위한 민원상담위원 운용 역시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등 사업에 분리 편성되어 있음.

86)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금운용계획안 중 유사 사업 분리 편성 주요 사례 〉

구 분	세부사업	내 용
소송구조 및 절차구조	소송구조 지원(1161-301)	민사, 가사, 행정, 파산·회생 사건 등 소송비용 지원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난민사건 소송비용 지원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가사비송사건 절차비용 지원
민원상담위원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일반 및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운영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가사 민원상담위원 운영

반면,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등은 민원 상담, 사건기록 전자화 및 판결서 공개, 공탁금 국고귀속 안내, 인신보호 제도 운영,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상이한 내용을 담은 여러 사업을 포괄하고 있음.

본 기금 출범 당시 「공탁법」 제31조제6호에 해당하는 의결공익사업은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2022년 지출구조 체계화를 통하여 소년보호 등 지원, 민원서비스 개선 및 사법서비스 향상으로 분리된 것임. 그러나 민원서비스 개선과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에는 성격이 다른 의결공익사업이 여전히 다수 포함되어 있음.

(나) 사업관리역량 강화 필요

- 기금상 지출사업의 적정한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는 세부사업, 내역사업 등 하나의 사업단위 내에서도 내내역사업, 비목 등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항목별 계획과 지출 간의 불일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본 기금의 지출사업은 각급 법원 등 법원 소속 기관의 수요를 받아 법원 행정처가 재원을 배분하고 해당 기관이 비용을 지출하는 식으로 수행되는데, 법원의 경우 소속 기관의 숫자가 많고 일부 사업은 지나치게 광범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법원행정처가 각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 및 집행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법원행정처에서는 사법서비스 향상(1161-307) 등 일부 사업의 현황 관련 자료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이는 기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함.

〈 법원행정처 자료 미보유 주요 항목 〉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 용	2025년 계획액 (백만원)
사법서비스 향상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2025년 가사재판 안내를 위한 책자의 발간일정 등 사업계획	94
	인신보호제도 운영 등	2016~2024년 등 기존 인신보호 관련 국내조사비 집행내역	41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2016~2024년 등 기존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수당 지급 내역	852
국선변호료 지원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지원	2016~2024년 국선변호인 중 국선전담변호사 대상 비용 지출 내역	24,598

- 법원행정처는 기금 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하여 지출구조 체계화와 병행하여 각 소속 기관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충실한 수입 관리 및 지출 구조조정 필요

- 기존 집행 내역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수입 관리 및 지출 조정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먼저, 수입의 경우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및 변상금(57-571) 수입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각각 2023년도, 2025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금수입계획안에 편성되는 등 주요 수입을 제외한 기타 수입의 경우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 변상금 수입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처음 편성되었으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을 고려하여 수입액을 추정·계상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근년도 결산액을 그대로 수입계획안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함.⁸⁷⁾
- 주요 수입인 민간출연금 수입의 경우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 출연금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이 민간출연금 수입액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해당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하지 못하고 있음.⁸⁸⁾
- 지출의 경우 연례적인 집행 장애에도 불구하고 지출액 구조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⁸⁹⁾ 지출할 수 없거나 지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계획안에 편성되어 방만한 기금 운용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음.⁹⁰⁾

87) 변상금(57-571) 수입 부분 참조.

88) 민간출연금(59-594) 수입 부분 참조.

89)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사업 부분 참조.

《수 입》

(3) 변상금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본 기금상의 변상금(57-571) 수입은 주로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송비용 면제, 납입유예 등의 소송구조를 실시하였다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송구조 대상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구조금액을 납입받는 것임.⁹¹⁾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소송구조 관련 변상금 징수결정은 ① 소송구조를 받은 자의 승계인에게 자금능력이 있는 경우, ②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거나 있게 된 경우, ③ 납입을 유예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의 재판이 있는 경우 등에 이루어짐.⁹²⁾

- 변상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처음 계상되었고, 규모는 3억원임. 동 기금 설치 후 매년 변상금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징수 결정 및 수납 여부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다가 반복되는 수입에 대한 계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⁹³⁾ 이를 수용한 것임.

90)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사업 부분 참조.

91) 예산과목으로서의 변상금이란, 법령과 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하는 금액으로, 동 기금의 변상금은 주로 소송구조에 관한 것이나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촉탁비용 등에도 변상금 징수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92)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 예규) 제17조.

9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111-112.

〈 2025년도 변상금 수입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항 목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변상금(57-571)	-	-	300	300	순증

(나) 소송구조 사업 규모 확대를 고려한 적극적인 수입 편성 필요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설치 당시부터 소송구조 사업에 활용되었고, 매년 변상금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도까지 변상금 수입이 수입계획안에 계상되지 않았을 만큼 인식이 부족하고 그 편성방안이 정립되지 않았음.
- 현재는 본 기금을 통한 소송구조 지원(1161-301) 등 사업의 지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징수결정액의 미수납액도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⁹⁴⁾ 정교한 변상금 수입 추계 방법을 마련하고 변상금 채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소송구조 지원 사업의 지출액 규모는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 중임.

〈 소송구조 지원 지출액(2019-2024)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현재액 ¹⁾	추정액 ²⁾
계획액	6,249	5,337	5,933	6,027	5,930	6,857	6,857
지출액	4,279	4,903	5,534	5,874	5,905	4,497	5,996

주: 1) 2024. 9. 30. 현재

2) 2024. 9. 30. 현재 기준액 × 4/3

94) 이는 차년도 징수결정액이 전년도 미수납액을 포함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음.

- 2025년도 변상금 수입계획액은 3억원인데, 이는 결산이 이루어진 2023 회계연도의 변상금 수납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변상금 수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목표 수납율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님.

2019년 이래 징수결정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수납액은 등락하고 있으며, 2024년 9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징수결정액은 19억 8,1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억 4,600만원임.

- 법원행정처는 수납액의 경우 일정한 추세 없이 등락하고 있어 정교한 수입계획액 산정이 어렵다는 입장임.
- 현재액을 기준으로 2024년말까지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선형추계하면(9월말 기준액 × 4/3), 징수결정액 21억 1,300만원, 수납액 3억 2,800만원이 도출됨.

〈 변상금 징수결정 및 수납(2016-2024)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현재액 ¹⁾	추정액 ²⁾
징수결정액(A)	1,037	1,398	1,458	1,653	1,890	1,981	2,113
전년 미수납	660	845	1,031	1,189	1,395	1,585	1,585
신규 결정	377	553	427	464	495	396	528
수납액(B)	191	366	269	258	300	246	328
수납율(B/A)	18.4	26.2	18.4	15.6	15.9	12.4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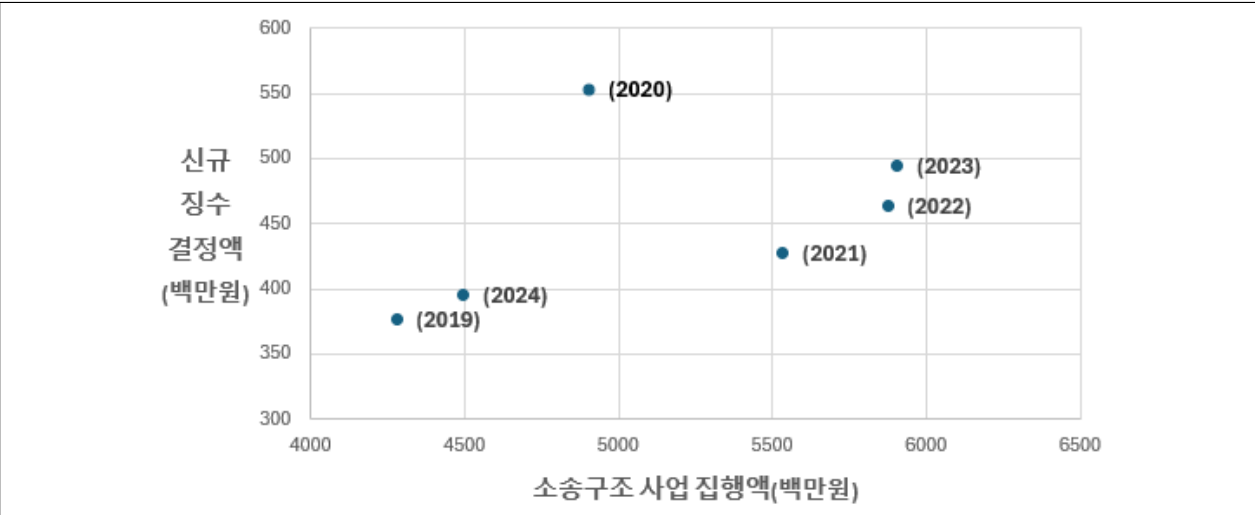
주: 1) 2024. 9. 30. 현재

2) 2024. 9. 30. 현재 기준액 × 4/3

○ 그런데 그간의 결산 내역에 비추어 보면, 변상금 수납액은 당해 연도 신규 징수결정액, 소송구조 지출규모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소송구조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송구조 지원(1161-301) 사업 집행액은 2024년 9월말 현재 44억 9,700만원이며, 2024년도 현재액을 포함하여 살펴보면 연도별 소송구조 사업 집행액과 변상금 신규 징수 결정액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⁹⁵⁾

〈 소송구조 사업 집행액과 변상금 신규 징수결정액(2019-2024) 〉



주: 1. 괄호 안은 해당 연도
2. 2024년의 경우 2024. 9. 30. 기준

95) 2019-2024년 동안 소송구조 지원 집행액 대비 신규 징수결정액 비율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평균값은 8.8%임.

〈 소송구조 지원 집행 및 변상금 신규 징수결정(2016-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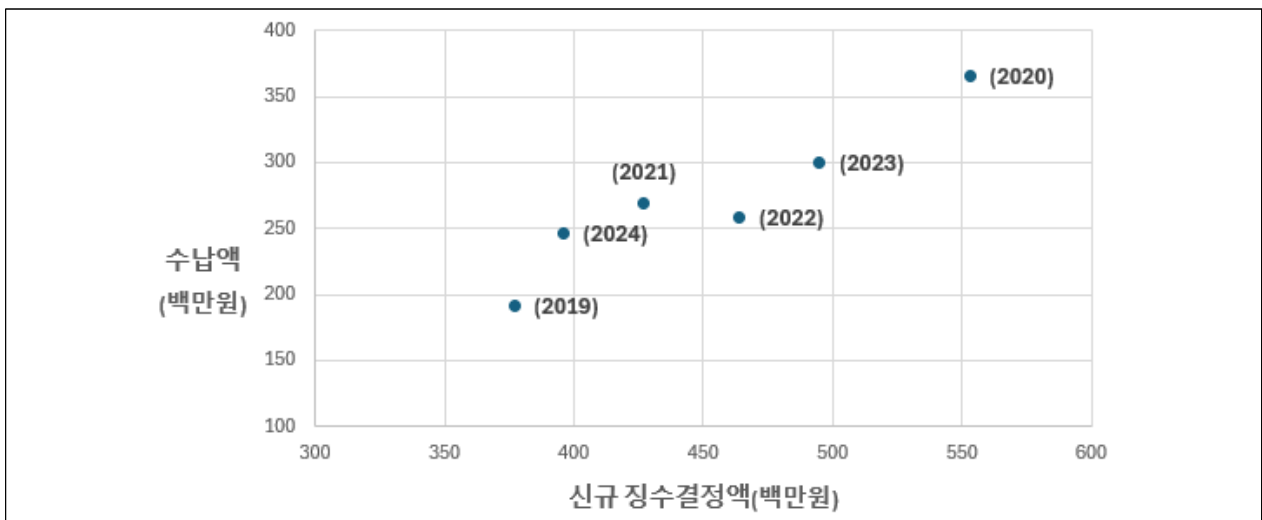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³⁾
						현재액 ¹⁾	추정액 ²⁾	
계획액	6,249	5,337	5,933	6,027	5,930	6,857	6,857	6,056
집행액(A)	4,279	4,903	5,534	5,874	5,905	4,497	5,996	5,415
신규 결정(B)	377	553	427	464	495	396	528	474
대 비(B/A)	8.8	11.3	7.7	7.9	8.4	8.8	8.8	8.8

주: 1) 2024. 9. 30. 현재
2) 2024. 9. 30. 현재 기준액 × 4/3
3) 평균 계산에는 2024년도 추정액 반영

또한, 2024년도 현재액을 포함하여 연도별 신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는 형태의 산점도가 나타남.⁹⁶⁾

〈 신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2019-2024) 〉



주: 1. 괄호 안은 해당 연도
2. 2024년의 경우 2024. 9. 30. 기준

- 소송구조 지원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에 상응하여 변상금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되며, 신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간의 선형적인 관계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96) 2019-2024년 중 신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크나 전반적으로는 60% 내외 수준에 있으며, 그 평균값은 60.2%임.

〈 신규 징수결정 및 수납(2016-2024)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³⁾
						현재액 ¹⁾	추정액 ²⁾	
신규 결정(A)	377	553	427	464	495	396	528	474
수납액(B)	191	366	269	258	300	246	328	285
수납율(B/A)	50.7	66.2	63.0	55.6	60.6	62.1	62.1	60.2

주: 1) 2024. 9. 30. 현재
2) 2024. 9. 30. 현재 기준액 × 4/3
3) 평균 계산에는 2024년도 추정액 반영

○ 최근 소송구조 지원 규모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소송구조 지원 규모의 증가는 변상금 징수결정액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법원도 2023년 7월 개인파산·회생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여,⁹⁷⁾ 소송구조의 문턱을 낮춘 바 있음.

○ 따라서 기금의 관리주체로서 기금의 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법원으로서는 단순히 기존 결산 결과에 따른 평균적 수납금액을 수입계획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향후 변상금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적정 수준의 목표 수납율을 설정하여 변상금 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등 적극적인 수입 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음.

변상금 징수결정의 바탕이 되는 소송구조 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기존 결산 결과 내지 그 평균액을 수입계획안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수입 관리 목표를 하향 조정하여 기금 수입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방기하는 것이 될 수 있음.

97)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자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변경하였음.

(4) 민간출연금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민간출연금 수입(59-594)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은 공탁금 운용수익금 중 일부에서 공탁금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자금으로,
- 2025년도 수입계획안은 2024년 계획액 1,056억 3,600만원에 비하여 117.7% 증가한 2,299억 4,200만원임.

〈 2025년도 민간출연금 수입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항 목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민간출연금(57-571)	105,636	105,636	229,942	124,306	117.7

(나) 충분한 출연금 수입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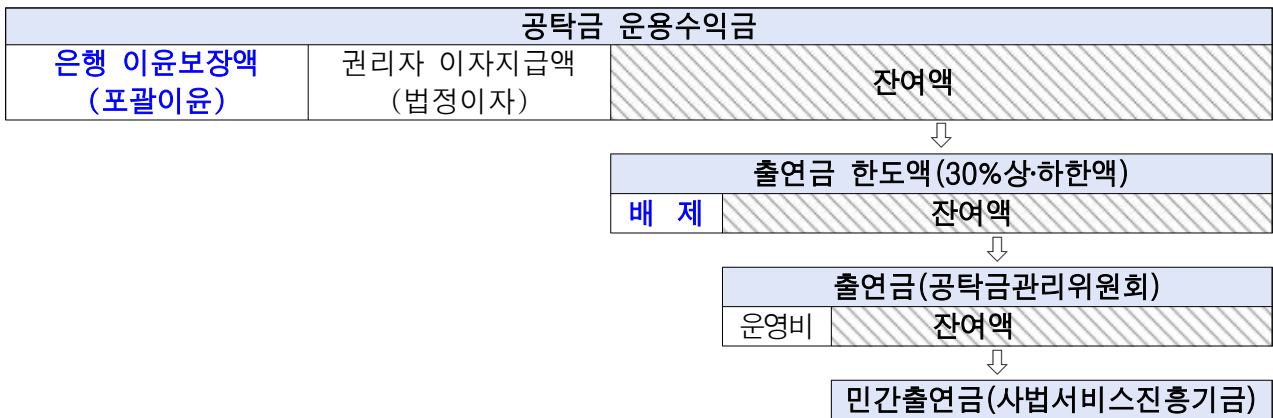
- 법원은 시중은행을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하여 공탁금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관은행이 공탁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수익금 중 일부는 다시 기금으로 출연됨.

민간출연금은, 「공탁법」 제19조 등에 따라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의 전년도 공탁금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결정하고 보관은행에서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금을 납부하면, 동 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수납되고 있음.

-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은행에 귀속할 포괄이윤과 공탁금출급청구권자에게 귀속할 법정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금 관리위원회에 출연하는데(「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제1항 본문),⁹⁸⁾

위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은행의 출연액에는 전년도 출연금의 130%를 상한으로 하는 한도액 제한이 적용되므로, 그 한도액 초과 부분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됨.

< 민간출연금 규모 확정 과정(「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주: 푸른 글씨는 주요 미출연금

98)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② 법원 신설의 사유로 보관은행 신규 지정이 있거나 보관은행 지정 취소 또는 공개경쟁방식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관은행 지정이 있는 경우 각 법원의 보관은행별로 출연금액을 산정하고, 위와 같이 지정이 있는 날부터 당해 연도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에는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위원회는 자금운용수익률, 순이자마진율을 금융감독원 등이 공시한 각 보관은행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에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민간출연금 산정방식은 2020. 3. 4.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⁹⁹⁾ 공탁금의 보관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은행의 자금운용 관련 발생원가, 공탁금 취급 관련 업무원가 및 최소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임.¹⁰⁰⁾

○ 그런데 현행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 민간출연금 산정방식으로 인하여 출연금 수입 확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0년 이후 공탁금 운용수익금과 민간출연금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보관은행의 포괄이윤액이 민간출연금 수입액보다 많으며, 공탁금 평균 잔액 대비 민간출연금의 비율은 매년 1% 남짓한 수준에 불과함.

< 공탁금 운용수익금 및 민간출연금(2020-2024)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평균 잔액(A)		8,727,643	9,198,169	10,520,245	11,125,709	10,918,539
운용수익금		271,860	241,840	248,206	353,123	490,732
이자비용		30,547	20,263	10,521	18,168	38,210
포괄이윤(B)		142,841	136,928	161,729	196,230	192,179
출연금 한도 초과(C)		7,023	647	426	37,831	118,793
출연금(위원회)		91,449	84,002	75,530	100,894	141,550
민간출연금(D)		91,499	84,002	75,530	100,894	141,550
포괄이윤 등(E=C+D)		149,864	137,575	162,155	234,061	310,972
대 비	E/D	163.9	163.8	214.7	232.0	219.7
	D/A	1.0	0.9	0.7	0.9	1.3

주: 민간출연금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6월 10일까지 기금에 출연되므로, 2024년도 민간출연금은 이미 수납되었음.

99) 기존 민간출연금 산정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2019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공탁금 관리위원회 규칙」에 반영한 것임. 다만, 출연금의 상한을 정한 동 규칙 제19조 단서 부분은 규칙 개정 과정에서 추가된 것임.

1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발전방안 연구 (2019), 55..

- 이러한 문제는 ① 법원이 정해진 이율 상당의 출연금을 먼저 확보하거나 보관은행에 제한된 정률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보관은행별 순이자마진을 직접 반영한 포괄이윤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는 점, ② 보관은행의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감사원도 공탁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보관하는 현금 등을 취급하는 은행과 비교할 때 공탁금 보관은행의 평균 운영잔액 대비 출연액의 비율이 낮다고 지적한 바 있음.¹⁰¹⁾

- 따라서 법원은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충분한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관은행에는 적정한 이윤만이 지불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주요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01) 감사원, 감사보고서 -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관리 실태 (2022), 19-24.

《지 출》

(5) 민원서비스 개선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은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 및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지출 계획액은 전년 246억 7,000만원 대비 30.7% 증가한 322억 3,700만원임.

〈 2025년도 민원서비스 개선 지출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24,670	24,670	32,237	7,567	30.7

(나) 구체적인 수요 조사와 사업계획 없는 지출계획안 편성 부적절

- 동 사업은 민원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위원 운영, 노약자·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사법접근센터 마련 등을 수행함.

민원상담위원 제도는 법무사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선지원 창구 등에서 법원을 방문한 사법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법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임.

2024년 9월말 현재 민원상담위원은 일반 민원상담위원(72명), 우선지원 창구·사법접근센터 소속 민원상담위원(69명) 및 가사 민원상담위원(9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총 현원은 150명임.

〈 민원상담위원 유형(2024) 〉

(단위: 명)

구 분	업 무	정원	현원
일반 민원상담위원	법원 방문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안내 및 법률상담	72	72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우선지원창구 등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안내 및 법률상담	74	69
가사 민원상담위원	가정법원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안내 및 법률상담	9	9
계		155	150

법원은 민원상담위원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퇴직 법원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하여 그 경험과 지식을 민원서비스의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 유형별 민원상담위원 위촉(2016-2024) 〉

(단위: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 체	65	71	92	101	110	122	129	140	150
일 반	53	52	59	59	64	64	64	64	72
우선지원창구 등	7	10	24	33	37	49	56	67	69
가 사	5	9	9	9	9	9	9	9	9
前 법원공무원	63	69	89	98	107	119	126	135	144

주: 현원 기준

○ 우선지원창구와 사법접근센터는 기존 민원시설 내에 별도의 전담 창구(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사무실(사법접근센터)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서비스를 제공함.

- 우선지원창구와 사법접근센터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 1심 법원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 9월말 현재 우선지원창구는 34개, 사법접근센터는 9개의 법원 및 지원에서 운영 중임.

〈 우선지원창구 및 사법접근센터 설치 현황(2024) 〉

고등법원	우선지원센터 설치 법원	사법접근센터 설치 법원
서울(15)	서울중앙, 서울가정·행정(종합청사), 서울회생,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방법, 인천지방법, 인천가정, 의정부지방법 고양, 의정부지방법 남양주, 인천지방법 부천, 춘천지방법 원주, 춘천지방법 속초	서울동부, 서울남부
대전(5)	대전가정, 대전지방법 홍성, 대전지방법 천안	대전지방법, 청주지방법
대구(5)	대구가정, 대구지방법 서부, 대구지방법 포항, 대구지방법 김천	대구지방법
부산(5)	부산지방법, 창원지방법, 부산지방법 서부, 창원지방법 진주	울산지방법
광주(6)	광주가정, 제주지방법, 광주지방법 순천, 전주지방법 군산	광주지방법, 전주지방법
수원(7)	수원가정, 수원회생, 수원지방법 성남, 수원지방법 여주, 수원지방법 평택, 수원지방법 안산	수원지방법(종합청사)

주: 괄호 안은 해당 고등법원 관내 설치 법원 수

-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에는 2~3개 법원에 우선지원창구를 신설하고, 기존 우선지원창구 8명, 신설 우선지원창구 4명 등 총 12명의 민원상담위원을 추가 배치할 예정임.
- 우선지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 2억 5,900만원,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수당 9억 5,600만원 등 총 1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우선지원창구 관련 지출계획액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계획액		
		2024년	2025년	증감
우선지원창구 설치 및 운영	우선지원창구 설치공사비	232	160	△72
	우선지원창구 비품구입비	72	72	—
	우선지원창구 운영비	27	27	—
	소 계	331	259	—
민원상담 등 서비스 제공 (우선지원창구 관련)	민원상담위원 수당	956	956	—
	소송당사자 조력자 수당	36	36	—
	통역 자원봉사자 등 지원	310	310	—
	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구 제작	60	60	—
	소 계	1,362	1,362	—

- 우선지원창구와 민원상담위원을 확대·운용하는 것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등의 취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음.
- 그러나 우선지원창구 및 민원상담위원 확대 등에 대하여 국회가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심사하려면 수요 조사를 거쳐 대상 법원, 확대·운용의 필요성 및 사업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의 우선지원창구 및 민원상담위원 확대는 이러한 충분한 사업구상과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것임.
- 법원에 따르면, 우선지원창구 신설 대상 법원은 202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어느 법원에 어느 규모로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음.

또한, 민원상담위원 추가 위촉 역시 민원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법원별 민원 수요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우선지원창구가 신설될 법원이 정해지지 않은 까닭에 민원상담위원이 추가 위촉될 법원도 전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충분한 사업계획을 갖추지 않고서 우선 지출계획안을 편성하는 것은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 등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사법서비스 향상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은 사법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기타 기금사업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법조윤리회 및 한국법학원 지원, 인신보호제도 운영, 국민참여재판 운영, 난민 재판 지원 등 서로 다른 성격의 다양한 내역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사법서비스 향상의 2025년도 지출계획액은 전년도 지출계획액 134억 6,900만원 대비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138억 9,400만원이고, 내역사업인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에는 15억 5,800만원이,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운영에는 46억 2,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사법서비스 향상 지출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13,469	13,469	13,894	425	3.2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2,077	2,077	1,558	△519	△25.0
상임전문심리위원 등 운영	1,662	1,662	4,625	2,963	178.3

(나)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연구비 예산의 조정 필요

-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운영과 그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와 배심원 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자료수집비 및 조사연구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2025년도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계획액		
		2024년	2025년	증감
기본운영비	배심원 회의 운영, 담당재판부 회의 운영 등	674	373	△301
배심원 수당	배심원후보자 및 배심원의 일당, 여비 등	1070	852	△218
교육 홍보	대국민 홍보물 배부, TV 홍보 실시 등	186	186	—
사법참여기획단 운영	실무자 교육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위촉위원 회의	70	70	—
해외자료수집	각국 국민참여형 재판 제도 조사·수집	52	52	—
조사연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25	25	—

- 동 사업의 조사연구비는 각국의 국민참여형 재판 제도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나, 협소한 주제와 제한된 비용으로 인하여 매년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조사연구비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 처음 설치된 이래 매년 동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회계연도 내에 계약 체결과 비용 지출을 마무리한 사례는 전무하고, 연구용역계약조차 매 연도말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 조사연구 결과(2016-2024) >

(단위: 천원)

구 분	주 제	계약일	지 출	
			연내	이월
2016년	피고인 신청률 제고 등을 통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2016.10.28.	-	50,000
2017년	국민참여재판 항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7.11.13.	-	29,200
2018년	미 실시		-	
2019년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2019.12.24.	-	29,300
2020년	전염병 상황에서의 국민참여재판 운영 방안	2020.12.23.	-	29,400
2021년	평결 및 양형이견과 판결 및 법관양형이 불일치한 사례 분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방안 모색	2021.12.30.	-	29,000
2022년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및 이를 채택한 1심 판단의 존중 방안 연구	2022.08.23	-	24,000
2023년	국민참여재판 연일 개정 활성화 방안의 연구	2023.12.28.	-	24,000
2024년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연구	미체결	-	-

○ 동 사업의 조사연구가 매년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출을 차년도에 이월하고 있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한된 주제와 부족한 계획액으로 인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여는 연구수행자를 찾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됨.

- 이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출금액 이월을 「국가재정법」 제72조에 따른 사고이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법원은 현실적으로 수행이 곤란한 국민참여재판의 조사연구를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일반회계 정책연구용역비 등과 통합하여 적시성 있는 주제에 충분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다) 감정관리위원의 위촉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지출계획 조정 필요

-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지원하는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전문심리위원은 의료, 건설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에서 분쟁해결에 필요한 경우 소송절차의 심리에 참여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등),¹⁰²⁾

특정 사건에 대하여 지정을 받아 심리에 참여하는 일반 전문심리위원과 일정한 기간 동안 위촉되어 법원이 요구하는 심리에 참여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구분됨(「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2 참조).¹⁰³⁾

- 2024년 9월 현재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14명이 위촉되어 있음.

10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03)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2(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법원은 기존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감정 등 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전문심리위원을 겸하는 감정관리위원직을 신설·운영할 예정임.

- 감정관리위원은 소송절차에서 감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정인과 접촉하여 감정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이에 상임전문심리위원 등 운영 사업에 관한 2025년도 지출계획안에는 상임전문심리위원 보수, 전문심리위원 수당과 새롭게 도입되는 감정관리위원의 보수와 그 사무실 설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25년도 상임전문심리위원 등 운영 사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계획액		
		2024년	2025년	증감
상임전문심리위원 운영	상임전문심리위원 보수	1,482	1,482	-
전문심리위원 운영	전문심리위원 수당	180	180	-
감정관리절차 지원	신규 위촉 감정관리위원(19명) 보수	-	2,052	순증
	감정관리사무실 설치 등	-	899	순증
	감정관리사무실 운영비	-	12	순증

○ 감정관리위원도 「민사소송법」 상의 전문심리위원에 해당하지만, 감정 절차의 관리를 주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임전문심리위원과는 업무수행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감정관리위원의 근거를 두는 규칙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임.

법원에 따르면, 감정관리위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규칙 개정안은 금년 말 처리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감정관리위원 관련 규칙 개정안 추진 일정 >

내부 검토	입법예고	대법관회의	시행
10월 초순	10월 초 ~ 10월 말	11월 중순	2025년 1월 1일

감정관리위원의 근거가 마련되면 기존 상임전문심리위원 16명을 감정관리위원으로 겸임 위촉하는 한편, 17명의 감정관리위원을 신규 위촉할 예정임.

- 법원의 상임전문심리위원 위촉절차는 통상 2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감정관리위원의 위촉절차도 연초부터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감정관리위원 보수가 12월분으로 계상되어 있음.

법원에서는 재판지연 방지를 위하여 감정관리위원직을 신설한 것이니만큼 그 최초 위촉은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1월 말까지는 위촉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으므로, 감정관리위원 보수 중 2월분은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감정관리위원의 보수는 월 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17명에 대한 2월분 보수액은 3억 600만원임.

(7) 국선변호료지원(국선전담변호사)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선변호료지원(1161-307)은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인신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국선변호인 관련 비용 중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까지 국선변호인 관련 비용은 전부 일반회계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었으나 그중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부분은 2025년도부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의 2025년도 지출계획액은 245억 9,800만원인데, 이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2024년도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226억 3,100만원과 비교할 때 19억 6,700만원 증가한 것임.

< 2025년도 국선변호료지원 지출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국선변호료지원(1161-307)	-	-	24,598	24,598	순증

(나)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은 「공탁법」 제31조제2호에 따라 본 기금의 용도에 포함되는 사업임.

○ 국선변호인 지원 규모가 상당하므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4년까지는 일반회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2025년도부터 국선변호인 지원 중 국선전담변호사 비용 부분만 본 기금으로 이관되었음.

- 현재 국선변호인은 특정한 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선정되는 일반 국선변호인과 일정한 기간 동안 법원에 위촉되어 위촉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선변호사건을 수행하는 국선전담변호사로 구분되고 있음.

「공탁법」 제31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선변호 제도 운영에 관한 사업이 본 기금에 편성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국선전담변호사 부분의 기금 이관은 법률의 취지를 실현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국선전담변호사는 일반 국선변호인보다 국선변호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용이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국선전담변호사는 개별적으로 수임한 다른 사건도 수행할 수 있는 일반 국선변호인과 달리 위촉기간 동안 국선변호사건만 수행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국선전담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2004년 시범사업에서 11명을 처음 위촉한 이래 국선전담변호사 수는 꾸준히 늘어나 2024년 현재는 234명이 위촉되어 있음.¹⁰⁴⁾

104)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2004년, 2005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06년부터 정식 실시되었음.

〈 국선전담변호사 정원 및 처리 사건(2016-2024) 〉

(단위: 명, 건)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현재 ¹⁾	추정 ²⁾
국선전담변호사	222	226	230	233	234	234	234	234	234	234
처리 사건 ³⁾	50,728	50,762	46,511	46,715	46,469	42,418	43,208	44,086	32,039	48,059

주: 1) 2024. 8. 31. 현재

2) 2024. 8. 31. 현재 선정사건 × 3/2

3) 형사공판사건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국선전담변호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현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그런데 최근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 위촉과 관련하여 선발예정인원 대비 접수인원이 감소하는 등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하락한 것으로 보임. 2016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대상자 선발 당시 경쟁률은 15.2 : 1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3.9 : 1에 불과하였음.

〈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예정인원 대비 접수인원(2016-2024) 〉

(단위: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선발예정인원(A)	19	36	42	41	47	37	52	32	29
접수인원(B)	288	294	299	194	273	211	226	169	112
대비(B/A)	15.2	8.2	7.1	4.7	5.8	5.7	4.3	5.3	3.9

주: 1. 각 연도는 위촉연도

2. 선발 절차는 전년도 12월에 시작되며, 위촉기간은 위촉연도 3월 1일부터 2년임.

- 국선전담변호사의 선호도 하락에는 2006년 이래 월 600~80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보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¹⁰⁵⁾

국선전담변호사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보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¹⁰⁶⁾

법원은 2022년 연구용역을 거쳐 「효율적이고 충실한 국선변호를 위한 국선 변호인 보수 지급체계 개선방안」(2022)을 발간하고 그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당시 일반 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인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일반 국선변호인의 보수 인상만 일부 반영되었음.

〈 유형별 국선변호 보수(2019-2024)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요 구 ¹⁾	확 정 ²⁾
일반 국선	사건당 보수(만원/건)	40	40	40	45	50	60	55
국선 전담	보수(인건비)(만원/월)	600~800	600~800	600~800	600~800	600~800	700~900	600~800
	사무실 운영비(만원/월)	50	60	60	60	60	60	60

주: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당시 법원의견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105) 보수기준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 1인의 월 보수액은 최하 600만원, 최고 800만원임.

〈 국선전담변호사 보수기준(2015. 3. 1. 이후 위촉 시) 〉

구 분	위 촉	보 수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 미보유	최초 위촉	월 600만원
	1회 재위촉	월 700만원
	2회 재위촉	월 800만원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 보유	경력 2~4년	월 700만원
	경력 4년 이상	월 800만원

106)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액은 제도 도입 당시 800만원을 한도로 정해진 후 증액된 적이 없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것이므로, 인건비 월 100만원, 사무실 운영비 월 30만원씩을 각각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하여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우수 인력을 국선 전담변호사로 유치하고 국선변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의 확대 및 충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¹⁰⁷⁾

- 한편, 2016년 이래 감소 추세에 있던 국선전담변호사 선정사건의 수가 2021년 이후 소폭 반등하여 금년에는 48,059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향후에도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같은 수준의 선정이 이루어진다면 위촉인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선변호인보다 사건당 보수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형사공판사건 1건당 사건 처리 비용(2019-2025) >

(단위: 건, 명, 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³⁾
							현재 ¹⁾	추정 ²⁾	
국선 전담	처리 사건(A) ⁴⁾	46,715	46,469	42,418	43,208	44,086	32,039	48,059	48,059
	위촉 인원(B)	233	234	234	234	234	234	234	249
	기준 인건비(C)*	710	710	710	710	710	710	710	710
	기준 운영비(D)	50	60	60	60	60	60	60	60
	총 보수 (E=B*(C+D)*12)	2,124,960	2,162,160	2,162,160	2,162,160	2,162,160	1,441,440	2,162,160	2,300,760
	사건당 보수(E/A)	45.5	46.5	51.0	50.0	49.0	45.0	45.0	47.9
일반	처리 사건 ⁴⁾	78,331	78,423	75,553	78,986	91,510	71,830	107,745	107,745
국선	사건당 보수	40	40	40	45	50	55	55	55

* 2019~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인건비 평균액

주: 1) 2024. 8. 31. 현재

2) 2024. 8. 31. 현재 선정사건 × 3/2

3) 2024년도 추정치와 동일한 처리 사건 수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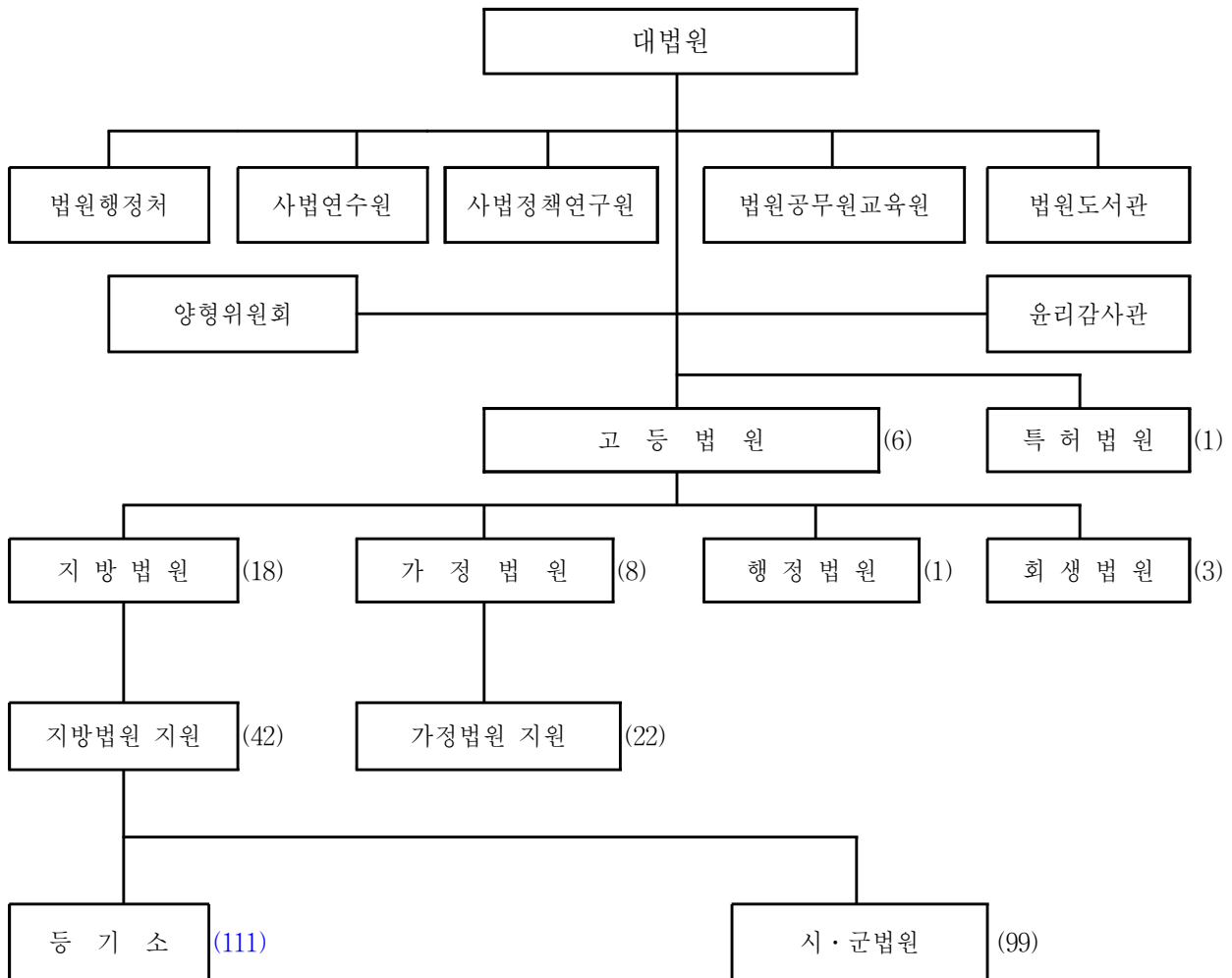
4) 형사공판사건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107) 법원에서 요구하는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등의 증액도 개선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법원은 인건비 월 100만원, 사무실 운영비 월 30만원씩을 각각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 고 자 료

1. 법원 조직도

(2024. 9. 10. 기준)



※ 각급 법원 현황

1. 총 법원 수 : 102 [대법원, 고등법원 6, 특허법원 1, 지방법원 18, 가정법원 8, 행정법원 1, 회생법원 3, 지법지원 42, 가정지원 22]
2. 기관 : 7 [법원행정처1, 사법연수원1, 사법정책연구원1, 법원공무원교육원1, 법원도서관1, 양형위원회1, 윤리감사관1]
3. 시·군법원수 : 99
4. 등기소: 111 [등기국 11개(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각급 법원 등기과(계) 46개 포함시 총 168개]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정원

가. 법 관

(2024. 10. 23. 기준)

구 분 직 위		정 원	현 원	정원대비 현원	정 원 외 법 관
대 법 원	대법원장	1	1		
	대 법 관	13	13		
	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관	2	2		
	재판연구관	100	99	-1	
고 등 법 원	원 장	7	7		사법연수원장: 1
	부장판사	72	65	-7	사법연수원 교수: 1
	고법판사	298	229	-8	사법연수원 교수: 1
	판 사		61		사법연수원 교수: 16
지 방 법 원	원 장	30	30		법원행정처 차장 : 1
	지 원 장	42	42		
	부장판사	1,267	1,221	-46	사법연수원 교수 : 10
	판 사	1,396	1,338	-58	
미보임 신입판사			112 ¹⁰⁸⁾	+112	
합 계		3,228	3,220	-8	정원 외 법관(30명)을 포함한 법관총원: 3,250명

※ 2024년도 임용 법관

- 전담법관 : 3명(위 표상 인원수 반영)

- 일반법조 : 111명(2024. 10. 4.자 신규임용으로 위 표상 인원수 반영)

※ 2024년도 퇴직 법관 : 99명

- 대법관 5명, 고법부장 7명, 지법부장 57명, 고법판사 15명, 판사 15명

108) 24년도 신입법관 111명 및 23년도 신입법관 중 휴직인원 1명

나. 법원공무원

(2024. 9. 30.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정원대비현원
경력직	일반직		13,966	14,413	447
특 수 경력직	정무직		3	2	-1
	별정직	사법연수생	2	0	-2
		비서(관)	34	28	-6
		법원보안관리대원	-	4	4
일반직 또는 별정직			469	441	-28
임기제		일반임기제	-	359	359
		전문임기제	728	802	74
합 계			15,202	16,049	847

※ 정무직은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윤리감사관임

※ 청원경찰 : 정원 68명, 현원 42명

※ 일반직의 경우, 별도정원(파견, 육아휴직, 교육훈련 등)이 현원에 포함되어 있어, 정원과 현원의 차이 발생

※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운영

3. 전국법원 사건통계

(2022년 1월~2024년 9월, (단위: 형사(명), 그 외 사건(건)))

구 분	연도	2024년 9월(9.30.기준)			2023년			2022년		
	심급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민 사 (본안)	접수	603,130	42,564	12,200 (9,377)	780,071	58,703	12,152 (12,150)	744,123	57,490	28,284 (11,667)
	처리	573,770	43,238	19,666 (9,484)	768,886	58,382	14,588 (12,381)	767,899	58,877	23,924 (12,008)
	미 제	390,250	52,199	10,819 (4,168)	360,890	52,873	18,285 (4,275)	349,705	52,552	20,721 (4,506)
	상소	37,819	8,185	-	53,070	11,033	-	51,859	10,383	-
형 사 (공판)	접수	171,837	57,993	17,529	236,981	79,453	21,102	219,908	71,167	19,179
	처리	166,447	58,280	17,421	230,927	74,489	20,419	223,504	70,036	19,432
	미 제	125,638	47,621	4,769	120,248	47,908	4,661	114,194	42,944	3,978
	상소	75,069	18,019	-	104,099	22,301	-	92,602	20,048	-
가 사 (본안)	접수	29,858	3,163	538	40,002	3,972	701	41,966	4,239	705
	처리	28,608	3,150	517	40,517	4,240	701	42,326	3,907	706
	미 제	26,293	2,671	204	25,043	2,658	183	25,558	2,926	183
	상소	2,298	403	-	2,887	549	-	3,112	548	-
행 정 (본안)	접수	15,841	5,133	2,774	21,953	7,184	3,526	21,906	7,226	4,126
	처리	16,097	4,996	2,656	21,295	6,874	3,677	22,020	7,559	4,172
	미 제	17,458	5,636	1,421	17,714	5,499	1,303	17,056	5,189	1,454
	상소	4,912	2,473	-	6,959	3,383	-	6,822	3,978	-

주 : ()내의 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사건을 제외한 수치임

4. 성과지표 현황

가.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격				정량지표수 (비중)
			투입	과정	산출	결과	
2개	2개	2개	-	-	1개	1개	1개 (50.0%)
		100%	-	-	50.0%	50.0%	

(2) 세부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 분야		정량/ 정성	성격	
전략목표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							
프로그램목표Ⅰ-1.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재판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재판활동지원	①전체 사건처리율	1.0	일반재 정	96.2(%)	정량	산출	
전략목표Ⅱ. 사법정보화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 운영							
프로그램목표Ⅱ-1. 사법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사법정보화운영	①사법정보화 운영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수)	1.0	정보화	82.1(%)	정성	결과	